



무공자르 06-020

#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산업자원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머리말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對 중국 투자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1992년의 수교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기업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국내의 급격한 제조원가 상승 압력을 피하기 위해 대체 생산기지를 찾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부상했었다면, 200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잠재력을 가진 내수시장으로서의 매력에 이끌려 기업들의 대중 투자 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준으로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 중국 투자 누계는 13,026건에 128억 2천8백만달러로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각각 48.4%, 22.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매년 1천건이 넘는 대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진출 기업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안정한 투자환경, 우리기업의 역량 미흡 및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중국내 토지 문제, 인력난 문제, 세수 문제, 전력난 문제 등 각종 여건의 악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정부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이른바 ‘묻지마 식’ 투자유치 정책을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고기술, 고액’의 이른바 삼고투자(三高投資) 유치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기존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기업들이 부딪치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신규 진출기업들에게 올바른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기 진출기업의 현지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와 KOTRA는 베이징('04.9), 상하이 및 칭다오('05.2), 광저우('06.5) 등 4개 거점도시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각 지역별로 법률, 세무 회계, 통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컨설턴트로 위촉하고, 우리기업의 문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전문가들이 지난 일년 반 동안 우리기업들과 현장상담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원격지 상담을 하면서 지원했던 생생한 정보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질의응답(Q & A)식으로 정리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상담활동 결과가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증보판으로 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중국내 각 투자기업지원센터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원고 정리 및 감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옥 변호사님, 최상훈 회계사님, 변재서 관세사님과 칭다오무역관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  
정보조사본부장  
한 준 우

**목 차**

**01 법인설립(절차) · 운영**

1.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 13
2. 중국에서 법인설립 수속 중 지역이동이 가능한지요? / 16
3. 공장입지를 어디에 잡아야 하나요? / 18
4.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내역은? / 20
5. 법인설립전 소요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 22
6. 외식경영연구소 설립 절차는? / 22
7.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 23
8. 투자금액을 100%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 25
9. 도소매업 법인 설립절차는? / 26
10.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 29
11. 포장전문 회사의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30
12. 독자기업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1
13. 합자회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6
14. 외자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도 외자법인인가요? / 39
15. 지사(分公司)의 성격은 무엇인지요? / 40
16. 지사(分公司)와 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41
17.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 설립이 가능한지요? / 42
18. 광고회사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44
19. 일반 무역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46
20. 경호사업에 투자가 가능한지요? / 48
21. 컨설팅 회사 설립은 가능한지요? / 49

22. 피혁가공업 투자가 궁금합니다. / 51
23. 지주회사 설립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 52
24. 합자파트너가 설비를 입찰로 구매하여야 한데 맞는지요? / 57

## 02 자본금납입 · 증자 · 감자 · 지분참여

1. 현지법인 자본금 납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 59
2. 판매법인을 위한 합작법인 최소 자본금과 설립기간은? / 60
3. 감자를 해야 하는데요? / 61
4. 등록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63
5. 등록자본금 불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 65
6. 최소자본금 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67
7. 증자절차를 알려주세요. / 68
8. 지분을 중국측에 넘길 때, 관련 세금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71

## 03 연락사무소(대표처)

1.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 시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 73
2.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과 관련 특별한 등록조건이 있는지요? / 74
3. 운송업체가 연락사무소를 세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 75
4.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 77

- 5. 연락사무소 수석대표의 개인소득세는? / 79
- 6. 사회보험 일부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80
- 7. 본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전액 한국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지요? / 81

#### 04 가공무역(래료·진료가공)

- 1. 진료가공시 중국내 구매 원자재 대금을 한국본사가 결제할 수 있는지요? / 82
- 2. 중국에서 다품종 소량 주문 시 임가공 관리는 어떻게? / 85
- 3. 임가공비 실사대조 후 말소(核銷)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88
- 4. 전창(轉廠)제도를 아시나요? / 91
- 5. 임가공 투자기업, 채권 채무상의 차액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93
- 6. 가공무역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관세, 증치세를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 98

#### 05 회계·세무

- 1. 투자 예정기업의 세제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99
- 2. 초기 중국 투자기업이 자주 겪는 세무 의문점 / 104
- 3. 중국, 일반납세인 승인 전의 매입증치세도 환급이 되나요? / 108
- 4. 중국회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 109
- 5. 인지세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 111

6. 중국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경우 기존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112
7. 회계감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113
8. 중국파견 한국직원의 개인소득세는? / 114
9. 이윤분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116
10. 법인세(기업소득세)율은 ? / 117
11. 이익 발생시점은 어떻게 기산하는지요? / 119
12. 지주회사도 세제 혜택이 있는지요? / 120
13. 지주회사가 중국 내에서 투자 시, 투자된 회사의 세제혜택은? / 121
14. 이윤 재투자 시 기납부 소득세 환급 여부는? / 122
15.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의 소득세 관련 규정 내용은? / 124
16. 중국에서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 127
17. 자체 사용설비의 면세 한도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 129
18.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수입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 131
19. 합자회사 및 기술지원 계약 추진에 따른 조세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132
20. 중국에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34

## 06 증치세(부가가치세)

1. 중국 투자기업의 증치세 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 136
2. 중국내 자체 수급한 제품의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138
3. 증치세 환급의 과표는 어떻게 되는지요? / 139

4. 중국 투자기업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44
5. 서비스업 중국 진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꼭 체크해야 / 151
6. 고정자산에도 증치세가 적용되는지? / 154
7. 원자재 수입통관 시 증치세는? / 156
8. 물품 국외 반송시 기납부 증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157
9. 증치세(부가가치세) 최종 납부액은? / 158
10.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급자격은? / 159
11. 중국산 설비 구매시 증치세 환급은? / 160
12. 자동차 부품의 증치세 환급율은? / 162
13. 중국에서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요? / 163

## 07 직원 채용 및 관리 · 사회보험

1. 중국에서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166
2. 중국 투자기업의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관련 법적근거는? / 169
3. 직원들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172
4. 임금에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지? / 173
5. 중국에서 직원 해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 175
6.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 177
7. 공장 노무자를 위한 산재보험은? / 179

**08 수출입**

1. 중국에서 물품거래와 현금흐름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요? / 181
2. 중국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 / 183
3. 생산형 외자기업의 무역업 영위 범위는? / 185
4. 제조업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의 수출입을 할 수 있는지요? / 187
5. 귀금속을 수출방식으로 중국내 창고로 보낸 후 필요시마다 출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190
6. 대중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반드시 소독 처리해야 하는지? / 192
7. 원단 제작과 의류가공을 중국에서 하는 경우 보세구역을 거쳐야 하는지? / 195
8. 중국에 제품을 보내 포장한 후 제3국 수출시 문제가 없는지요? / 197
9. 홍삼제품 중국 수출시 현지 절차는? / 199
10. 모든 수출입거래에 CCC인증이 필요한가요? / 201
11. 물품대금 해외송금시 유로화(Euro)가 가능한지요? / 202
12. 비데 관련 수입세는? / 203
13. 임대설비 수출시 중국 통관절차는? / 204
14. 중고설비 수입절차는? / 205
15.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증치세 부과 방식은? / 207
16. 지사도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 209
17. 보세구내 무역법인의 중국기업들과의 수출입업무는? / 210

**09 중국내 거래 · 내수**

1. 최소한의 설비만 갖추고 위탁가공한 제품의 내수판매 영업집조가 가능한지? / 213
2. 중국내 Local L/C가 가능한가요? / 216
3. 중국에서 로컬수출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 217
4.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 내수 판매하는 경우는? / 220
5. 진료가공 시 중국내 내수가 가능한지? / 222
6. 수입한 원자재를 현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 224
7. 본사제품의 중국 현지법인 명의로의 판매는? / 227
8. 보세구내 교역시장이 무엇인지요? / 228
9. 중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있는지요? / 229
10. 투자기업의 타사제품 취급 관련 문의입니다. / 230

**10 설비통관 · 임대**

1. 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중국으로 이관 시 통관문제는? / 233
2. 임가공 계약시, 무상제공 설비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235
3. 중국내 설비 무상임대 방법은? / 238
4. 면세설비 이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242
5. 가공무역 무상설비 제공 절차는? / 243
6. 투자총액 한도내 자용설비 면세 여부는? / 244
7. 수입설비 면세수속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245

## 11 토지 · 건축 · 임대

1. 중국에서 개발중지 상태인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 / 246
2. 토지계약시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 250
3. 중국 현지법으로 용적율을 높여 건축할 수 있는지요? / 252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무용 오피스와 직원 주거용 주택 매입시 대출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253
5. 상업용 부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 254
6. 토지구입시 혜택은? / 255
7. 토지사용권 구매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요? / 257
8. 토지사용기한 만료시 반환해야 합니까? / 259
9.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데 회사설립이 필요한가요? / 260

## 12 기업 외채관리

1. 외채관리 강화조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262

## 13 과실송금 · 외환송금

1. 투자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 268
2. 보세구내 기업의 배당금 송금이 가능한지요? / 270
3. 상표 사용료 송금이 가능한지요? / 271

**14    기업청산**

1. 중국에서 투자기업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73
2.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76
3. 현지 청산기업의 설비 구매는 어떻게? / 279
4. 청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요? / 282
5. 합자법인 청산 후 신규 설립법인에서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284
6. 보세구내 무역법인 청산절차는? 매각이 가능한지? / 286
7. 법인의 소재지 이전 관련 문의입니다. / 288
8.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이 가능한지요? / 289
9. 지분양도와 청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 290
10. 기 투자된 여러 법인을 합병하려는데... / 295
11.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지분양도는 어떻게? / 300
12. 외국투자기업 지분 인수시 투자처 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 303

**15    기 타**

1. 외자기업 보유 통장 활용 범위 및 용도 / 306
2. 상표 검색 / 308
3. 생가죽 가공무역 금지 관련 / 309

4. 독자 형태 도소매 기업이 칭다오시에 몇 개나 있는지? / 313
5. 한국 원화의 인민폐 환전이 가능한지요? / 314
6. 기술지도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 315
7. 효율적인 채권 관리 방법은? / 316
8. 중국인이 한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투자하자고 합니다. / 318

**부록**

1. 주식양도계약서 서식(중국어) / 319
2. 토지출양계약서 서식(한국어) / 331

# 1 법인설립(절차) · 운영

## 1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저희 회사의 투자총액은 120만 달러이고 등록자본금은 84만 달러입니다. 등록자본금의 출자는 이미 완료되었고 공장도 정상 가동 중 입니다. 등록자본금을 현지 자금으로 증자할지 아니면 한국내 본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증자할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 1) 만약 등록자본이 증자되어(36만 달러) 등록자본금이 120만 달러가 되었을 경우, 투자총액도 같이 증자되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등록자본금의 금액이 총투자액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투자금액이 171만4천 달러가 되어야 합니까?
- 2) 총 투자금액은 회사설립 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저는 3년 내로 알고 있는데... 개발구마다 다른가요?)
- 3)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36만 달러)만큼 차입할 경우 독자 회사의 정관에는 경외대출에 의한 차입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외를 통한 차입만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한국 본사를 통한 차입 시 중국의 외국환관리규정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또한 현재의 정관을 수정하면 중국 내 은행을 통하여 기업 운영 목적으로의 자금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까?

- 4) 상기 1번과 2번 질문에 관련된 중국의 법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떠한 문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외자기업법에도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군요)

### 답변

- 1)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액과 투자총액의 비례에 관한 잠정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총액이 300만불 이하일 경우에 등록자본금이 투자총액의 70%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증자액도 동 비례에 부합되어야 하고 증자후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도 위의 비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2) 등록자본금 납부기한에 대한 <외자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설립일(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90일내에 등록자본금의 15%를 납입해야 하고, 잔액은 필히 3년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3년은 등록자본금 납입 관련 최장 기한으로, 투자금액의 다소에 따라 정부에서 허가해 주는 납입기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 투자총액에 대한 납입기한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총액은 회사의 투자규모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 3) 차입을 통한 운영자금 마련은 중국내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 정관에 경외대출만 된다고 하니 중국 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정관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차입할 경우에는 차입에 관한 절차는 한국의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차입한 돈을 중국내로 송금한 후 중국 외환관리국에 등기를 하셔야 나중에 대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중국내 대출은 중국은

행, 한국계은행 모두 가능하며, 한국계은행의 경우 달러 대출은 원자재수입 결제자금만 가능(위엔화 환전 불가)하며, 위엔화 대출 이율은 5.3% 정도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칭다오대표처 대표 박진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 2 중국에서 법인설립 수속 중 지역이동이 가능한지요?

###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A 시내 현급시인 B 시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다른 곳(역시 A 시내 현급시인 C 시)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A 시에서의 절차는 영업집조까지 나온 상태이고 재무등기(세무국)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관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상태로 B 시의 법인설립을 정지시키고, C 시에서 새롭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 B 시에서 법인설립을 중지할 경우 영업집조 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 B 시에서 토지임대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 답변

<중국 기업 등기 관리조례>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은 곧 영업집조 발급일입니다. C 시에 새로운 회사설립 신청을 하여 영업집조를 발급받으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됩니다.

단 이는 기존의 회사와는 별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를 정지한다 하더라도 C 시에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영업집조 등록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기존 회사 설립시 영업집조 등록비는 환급받을 수 없을 뿐더러 회사 등기 말소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기업명칭 등기관리 실시방법> 제 31조 제 4항에 의하면 말소기한이 3년 미만인 회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법정 등기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법>과 <기업등기 관리 조례>에 의하면 회사설립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 필히 새로운 장소에 입주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주소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주소 변경 시 영업집조 등기비용은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공상행정관국리에 서류작성 비용 120위안을 지불하면 됩니다.

아울러 법정주소를 변경하려면 우선 귀사가 외국투자업체이기에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주소 변경에 따른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서 수취하는 비용은 지방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반드시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계약과 관련해서는 귀사의 계약해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투자시 약속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인지, 혹은 임대인이 계약서상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사가 계약 위반의 원인 제공자일 경우에는 위약행위에 대한 책임조항을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근거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변호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공장입지를 어디에 잡아야 하나요?

####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회사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현재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대기업인 A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품을 현재 A사가 있는 B시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A사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시장에 파는지, 제3국으로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 1) 중국내 제조법인 설립 시 최소 투자금액이 7만 달러 이상이라고 코트라에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7만 달러를 100%까지 현물출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2) 지금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공장입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최소자본금의 전액 현물출자는 투자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립비용과 설립초기의 운영자금 등 최소한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회사법 제 27조 제 3항에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금액이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투자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70%를 현물출자의 최대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물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당연히 납품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공장입지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치세의 환급(퇴세)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우선 납품처가 생산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을 때 고려할 사안입니다.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할 수 있다면 홍콩에 법인설립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A사가 귀사의 제품을 재가공(조립가공) 후 내수판매를 하는지 전량수출을 하는 지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형태, 무역형태나 입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둘째, B사가 전량 수출을 하고 귀사가 중국 내수구매 및 한국자재를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귀사는 외국인투자투자기업, 진료가공기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하되, 관세 증치세(VAT)는 면세를 받고 사후 가공무역수책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단 중국 국내에서 내수 구매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 증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완제품을 공급한 뒤 환급을 받게 됩니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매입증치세는 17%이고, 수출 후 13%의 환급을 받게 되는데, 수출개시 후 12개월까지는 유보되었다가 13개월째부터 환급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후 환급까지는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각 성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Tax Free Zone(면세지역)이란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물류보세원구, 수출가공구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이며, B시에도 역시 이들 지역이 있으니 여러 조건을 조사 비교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관세사 변재서

#### 4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내역은?

##### 질의

저희 업체가 이번에 A시 산하 현급도시인 B시에 사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중국 개인과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측으로부터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내역을 통보받았는데, 그중에 영업허가 및 기술감독국, 건설위원회 허가증이라는 내역의 금액이 100,000 위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허가증들을 발급받는데 100,000 위안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이러한 허가증을 직접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에 따르는 세무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답변

법인 설립에 관한 정부 행정수수료는 귀하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록자본금 규모 및 법인 소재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행정수수료는 공상관리등기부서의 영업집조 발급의 경우 귀사의 등록자본금이 1,000만 위안 이하면 8/1,000 이상, 1,000만 이상 1억 위안 이하면 8/1,000 이하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받는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1,500 위안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할 부서는 경제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무역합작국, 공상관리국, 세무국(국가 및 지방), 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외환관리국, 세관 등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합작회사의 합작계약서, 정관,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합작쌍방의 잔고증명서, 사업자등록본, 이사회 명단 및 신분증 사본 등 입니다. 중외합작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투자

회사와 같은 세제혜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소득세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이윤발생년도부터 2년 면세 3년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품목이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권장항목에 속할 시 자체 사용 설비는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도시 보수 건설세가 면제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 5 법인설립전 소요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위해시에 법인설립(독자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설립 전에 쓴 비용을 중국법인 설립 후 현지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전 발행된 영수증으로 법인설립 후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6 외식경영연구소 설립 절차는?

**질의**

한국인이 중국 상하이에서 외식 경영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답변**

외식경영 연구소의 경우 중국의 투자 장려 업종에 속합니다. 설립절차는 일반법인 설립절차와 같습니다. 연구소의 경우 등록 자본금이 200만 달러이고, 법인 설립 후 직원 채용에 있어 총직원중 80% 이상의 직원이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R&D 업무를 해야 합니다.

## 7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 질의

상하이에 식당을 개업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요식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명의를 빌려서 개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식당을 개업할 수 있습니까?

### 답변

요식업은 외국인투자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2006년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저 등록자본금은 3만위안이면 됩니다. 단 현실적으로 장소 임대료, 인테리어, 설비 등의 비용 지출 요인으로 정부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 대체적으로 최저 10만달러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설립절차는 우선 장소를 임대하고, 위생국에서 위생허가를 신청합니다. 그 후에는 일반 법인 설립절차에 따라 상해 대외무역경제위원회에서 법인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생허가가 좀 까다롭고, 처리시간도 상대적으로 깁니다. 때문에 임대장소는 되도록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한 편이 좋으며, 주위환경, 주민생활 오염 침해 정도 등 각종 위생, 환경과 관련한 것들을 잘 고려하여 임대하시는 것이 허가취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술,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허가증(酒類銷售許可証)>과 <연초판매허가증(烟草銷售許可証)>을 신청해야 하고, 공안국에 <치안허가증(治安許可証)>, <소방허가증(消防許可証)>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순서

- 1) 공상국에 기업명칭 신청
- 2) 영업장소 임대
- 3) 주위 환경심사 신청
- 4) 위생허가 신청
- 5) 외경무위에 기업설립허가 신청
- 6) 공상등기(영업집조 신청)
- 7) 기업코드(代碼)증 신청
- 8) 외환등기
- 9) 은행에 계좌 개설
- 10) 등록자본금 불입 및 검사(驗資)
- 11) 세무등기
- 12) 위생허가증
- 13) 주류판매허가증(酒類銷售許可証)
- 14) 연초판매허가증(烟草銷售許可証)
- 15) 치안허가증(治安許可証)
- 16) 소방허가증(消防許可証)

**8 투자금액 100%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질의** 중국 법인 설립 시 최소 투자금액이 14만 달러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14만 달러를 100%까지 현물출자 할 수 있습니까?

**답변** 2006년 <회사법> 제 26조 제 2항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소금액은 3만위안이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보다 높은 규정을 하였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회사법> 제27조 제3조항에 의하면 전체 주주의 화폐 출자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액은 7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가격평가를 해야 합니다. 현물에 대한 가격평가는 반드시 국가에서 심사하여 등기한 자산평가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 9 도소매업 법인 설립절차는?

## 질의

소매 또는 도매업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대행업체 추천, 설립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유통업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유통법인 설립 허가법규를 2004년 12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부분적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권/중국국내 도소매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부부의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외자상업기업(도소매업)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 상무 부문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외자상업기업 설립신청의 심사기간은 1개월 전후로 단축되었습니다.

도매법인의 설립 대행 비용은 15,000 달러 정도 되는데, 법률사무소 별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구에서 직접 대행하여 주기도 합니다.

## ➡ 설립요건

- 제한품목 :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막, 화학비료(2006년 12월11일전)
- 금지품목 : 소금, 연초(도매기업), 연초(소매기업)

➔ 필요서류

- 1) 신청서
- 2) 사업 타당성 보고서
- 3) 정관
- 4) 투자기업의 은행신용증명, 사업자 등록증, 법인대표의 여권, 투자인이 개인일 경우 여권 제공
- 5) 개설하게 될 매장 소재지 관할 상무주관부문에서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되는 설명서류
- 6) 중국투자인이 중외합자, 합작상업기업에 투입하게 될 국유재산평가보고서
- 7) 신설 외국법인의 수출입 상품리스트
- 8) 신설 외국법인의 이사회성원 명단 및 투자인의 이사위임서
- 9)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제출한 기업명칭 사전동의통지서
- 10) 개설하게 될 매장의 토지사용권증명서(사본) 및 건물임대 계약서(사본). 개설하는 매장면적이 3000m<sup>2</sup>이하일 경우 제외

**유통법인 관련 보충 사항**

- 관련 법규 :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2004년 6월 1일 시행)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2006년3월1일 시행)
- 투자방식 : 합자, 합작, 독자

- 지역제한 : 지역제한 없음
- 상업경영 유형 : 1) Commission Agency, 2) 도매, 3) 소매, 4) 프랜차이즈
- 설립조건
  - 최저 등록자본금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회사법 규정 :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 3만위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및 투자총액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70% 이상 등)
  - 경영기한 30년, 중서부지역 40년
- 점포개설 조건
  - 상업기업 설립신청 동시에 점포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 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제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도검사에 참가하고 또한 연도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전액 불입해야 함.
- 업무경영범위
  - 소매업무 : 상품의 소매, 자체경영 상품의 수입,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기타 관련 부대업무
  - 도매업무 : 상품의 도매, commission agency(경매 제외), 상품의 수출입, 기타 관련 부대업무.

10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질의** 본인이 40만 위안을 투자하고, 중국 사람이 20만 위안을 투자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40만 위안 투자하는 본인 앞으로 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사람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인과 중국인이 공동출자하여 투자할 경우는 중외합자 또는 합작회사가 됩니다. 중외합자 또는 합작회사 설립시 중국투자자와 귀하는 모두 투자자로서 영업집조에 투자자로 명시될 것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투자자측에서 파견하거나, 중외투자자가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제3자(자연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명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 11 포장전문 회사의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질의

포장전문회사는 중국에서 제조업에 해당되니까? 아니면 서비스업에 해당되니까? 이 경우 외국인투자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독자법인 설립 가능 시 세제 혜택이나 창고 건립 시 부지임대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현재 위와 같은 업체로 진출한 한국 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전시관련 업체로 진출한 한국 업체 리스트를 어떻게 알아 봐야 합니까?

## 답변

포장전문회사는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외국인투자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회사법>에 근거하여 최소 등록자본금은 3만위안입니다. 단 현실상 장소임대, 현지직원 채용, 기타 운용비용 등의 비용 지출요인으로 정부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 대체적으로 최저 10만달러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서비스업종의 외자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지진출 업체 리스트는 kotra에서 2005년 9월에 발간한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下)” 중국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경우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무역자료실 ⇒ 간행판매품 ⇒ 일반 간행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2 독자기업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 독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조건과 설립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법인 허가 조건

-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금지목록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모두 독자, 합자,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무역투자정보 ⇒ 해외투자정보 ⇒ 국가별 투자정보 ⇒ 중국 ⇒ 외국인 투자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최소 등록 자본금 : 3만위안(회사법의 규정)

회사법에서 최소 등록자본금을 3만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각 연해지역에서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7만불을 요구하며 상해는 14만불을 요구합니다.

#### ➔ 설립절차

- 1) 외국인 투자자 혹은 대리인 현지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
- 2) 기업명칭의 심사, 인가

- 3) 외국인기업설립신청서 및 정과, 사업계획서 등 서류의 제출, 심사
- 4) 정관의 제출, 심사
- 5) 비준증서 수령
- 6) 사업자 등록
- 7) 회사 법인도장 제작 신청
- 8) 회사코드증 신청
- 9) 외화등기 은행통장 설치
- 10) 세무등기
- 11) 세관등기
- 12) 은행계좌 개설
- 13) 공장신축 및 생산

➡ 필요 서류

- 1) 프로젝트 심사비준표
- 2) 기업정관
- 3) 이사 위임 파견서
- 4) 총경리, 부총경리 임명서
- 5) 이사회 멤버, 총경리와 부총경리의 신분증명서, 사진, 이력서
- 6) 은행자금 신용증명서
- 7) 투자측 법률증명문서
- 8) 영업장소의 사용증명(혹은 기획용지 비준증서)
- 9) 환경보호 심사비준서

- 10) 안전평가 심사비준서
- 11) 기타 요구하는 관련 서류

☞ 소요기간 : 생산성 기업 설립 소요기간은 대략 1~3개월 정도 소요

**[참고자료]**

**〈투자 방식별 장단점 비교 (三資企業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시행규칙	외자법과 실시세칙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투자업종 제한 범위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큼
기업부채 책임 범위	지분을 비례 출자액 한도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 연합경영체는 공동 책임	출자액 한도
이윤분배 기준	지분을	계약내용	독점
법인세 기준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최고의사 결정 조직	동사회 (이사회)	- 동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임의

경영관리 방식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투자자 독자경영
토지사용권 획득방식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자기업의 명의로 토지 사용권유상양수 혹은 입차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작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 양수 혹은 입차	- 외자기업 명의로 토지 사용권 유상 양수 - 중국정부측 외자기업의 토지임차 사용제한
출자자원	현금과 현물 및 지적 재산권 가능	현금과 현물 및 지적 재산권 가능. 이에 더하여 용역출자도 가능	국제적으로 태환이 가능한 외화현금이나 현물과 지적재산권 출자 가능. 단 토지 출자 불가
출자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계약내용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설립절차 흐름도〉



### 13 합자회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중국의 한 업체와 합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중국의 한 업체와 합자회사를 만드는데 그 업체에서 말하길 외국인이 같이 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회사는 안된다고 중국 공장부문 쪽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합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 그 업체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업체와 우리 업체가 서로 50%씩 자본금을 내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전담 변호사를 통해 합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50% 등록 자본의 비율을 따져볼 때 중국은 공장부지를 대고 저희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데 몇 %로 하느냐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업체에서 또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건 우선 자기네가 회사를 설립한 후 우리 측에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고 저희 사장님을 총경리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중국회사로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의 결과에 대한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중국과의 합작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참고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중국업체의 지분을 사는 것은 기업의 성질, 절차, 소요시간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두 가지 경우 모두 외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지분 인수하는 것)의 경우 시간을 어느 정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의 경우 기 설립된 중국기업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에서 몰래 기업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기업과 상업적 이익이 걸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나중에 지분을 인수한 후에 손실을 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귀사의 경우에는 합자회사를 새로 설립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 합자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일차적으로 각종 자료를 통해 합자 파트너의 신용상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필히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 실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기업 규모를 평가할 때 종종 고용인원수와 고정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인원중 상당수의 퇴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형태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비근무자들이 있으며 고정자산 역시 50년대, 60년대의 노후 설비가 장부가액으로 고평가 계상되어 있는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장부지나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측에 평가자료를 제출하기도 해 반드시 현지 실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법규에 의해 법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나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자(합작)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파트너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소재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등록 내용(영업집조)
- 2) 소재지 관할 세무국에 제출한 연도별 자산부채표, 손익계산서, 납세 및 이윤 납부액, 이윤 분배 방안 등의 재무제표 내용
- 3) 소재지 관할 국유재산관리국이나 토지계획국(土地計劃局)의 토지 사용권 등기 등록내용(토지를 투자금으로 출자시)
- 4) 소재지 관할 주요 관련 주무부서에 제출한 연도 생산계획표 내용

**14** **외자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도 외자법인인가요?**

**질의**

중국회사 A가 51%, 일본회사 B가 49%를 투자하여 C라는 합작/합병회사를 설립하고, C가 100% 출자로 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 D는 로컬회사와 외자회사중 어느쪽이 되는지요? 아니면 D는 자본금의 투입정도에 따라 외자회사일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업종은 도매업입니다.

**답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주식유한공사가 본 회사의 명의로 출자하여 중국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타 기업의 투자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투자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투자는 중국의 국가법률,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영역에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소재지 성급 심사허가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 15 지사(分公司)의 성격은 무엇인지요?

### 질의

상해에 직접 법인을 설립할 때와 당사의 청도법인이 상해에 지사를 설치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상 및 권리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 답변

지사는 본사(總公司) 산하기구로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하지만 기업 법인자격이 없고, 독립적인 법률지위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사의 특징

- 자산이 없으며 실제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본사(總公司)의 일부분입니다.
-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사는 회사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등기와 영업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 지사는 자체정관이 없고, 의사회 등과 같은 업무집행기관이 없습니다.
- 지사 이름은 본사(總公司) 회사명 뒤에 지사(分公司)를 달기만 하면 됩니다.

## 16 지사(分公司)와 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의**

지사와 자회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사와 자회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선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체로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사는 본사(總公司) 산하기구로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하지만 기업 법인자격이 없고, 독립적인 법률지위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지사 설립절차는 간단한 등기와 영업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경우 지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만 필요하게 됩니다.

자회사의 설립절차는(자회사가 독립법인이므로) 법인 설립절차와 같습니다. 자회사 설립시 등록자본금은 새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와 같습니다. 허기는 처음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허가기간도 적게 소요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회사를 설립하시려면 재투자할 하려는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반드시 전부 불입되어야 하고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 17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 설립이 가능한지요?

## 질의

상하이에서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포워딩)의 외국인투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의 내자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기간과 관련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답변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 설립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했습니다.<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관리방법> (상무부령 2005년 제19호)

## ➡ 설립요건

- 최소 등록자본금 : USD 100만
- 비준기관 : 상무부 및 위임기관
- 국제화물운송 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업무인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업무인원을 최소 5명 이상 보유
- 고정된 영업장소
- 필요한 통신, 운송, 하역, 포장 등 영업시설 보유
- 경영기한 : 20년 초과할 수 없음

내자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기업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즉 내자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이는 지분양도 등의 절차도 한번 더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번거롭다고

생각됩니다. 내자법인의 지분을 매입(합자, 독자에 상관없이)하신다 하더라도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의 조건에 맞게 등록자본금이 최소 USD 100만에 달해야 합니다.

## 18 광고회사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질의

상하이 지역에 광고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독자가 가능한지요? 즉, 광고업체가 중국에 독자 투자할 수 있습니까?

## 답변

<외상투자 광고회사 관리규정> (이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제 8호),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자질표준 및 광고경영범위 용어 관련 규범> (국가공상총국[1995-06-26])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 1) "규정" 제 23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0일부터 외국인 독자투자 광고회사의 설립이 허용됨.
- 2) 외국인독자투자 광고회사 설립조건

## &lt;종합성 광고회사&gt;

- ① 광고경영범위와 상응하는 경영관리 인력, 기획설계 인력, 제작 인력, 시장조사 인력(상기 인력은 모두 광고전문기술 직책 자격 증서를 구비해야 함), 재무인력 등을 구비해야 하며, 그중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의 수가 전체 종업원 수의 2/3보다 많아야 함.
- ② 광고의 설계, 제작, 대리업무에 필요한 자금, 설비 및 경영장소가 있어야 하며 자본금이 50만 위엔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장소가 100m<sup>2</sup> 이상이어야 함.

- ③ 광고경영범위와 상응한 경영기구 및 광고경영 관리제도가 있어야 함.
- ④ 광고심사 전임인력이 있어야 함.

<광고설계, 제작회사>

- ① 광고 경영범위와 상응하는 경영관리 인력, 기획설계 인력, 제작 인력, 시장조사 인력(상기 인력은 모두 광고 전문기술 자격 증서를 구비해야 함), 재무인력 등을 구비해야 하며 그중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② 광고 경영범위와 상응하는 자금, 설비, 기자재 및 장소가 있어야 하고 경영장소가 40m<sup>2</sup> 이상이어야 하며 제작 장소는 광고제작 프로젝트에 따라 정함.
- ③ 광고 경영범위와 상응한 경영기구 및 광고경영 관리제도가 있어야 함.
- ④ 광고심사 전임인력이 있어야 함.

상기 두가지 유형의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

- 투자자는 광고업무 위주로 경영하는 회사이어야 함.
- 투자자의 성립 및 운영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함.

## 19 일반 무역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질의

유통법인 외에 일반 무역회사 설립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답변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2004년7월 1일부터 시행)
- <보세구세관감독관리방법>(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
- <상해외교보세구조례>(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경영범위 : 수출입무역, 가공무역, 화물저장, 운송, 상품전시, 상품거래 등
  - 설립절차
    - 보세구 관리위원회에 신청 - 20일내 비준 여부 결정
    - 비준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 발급
    - 기타 후속절차
  - 운영방식
    - 보세구기업 비보세구기업과 무역 가능, 단, 이 경우 국내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함.
    - 보세구내 상품거래시장 설립 가능.
    - 상품전시, 도매 등 업무도 가능.

-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잠정방법>(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
  - 대상업체 : 외국기업
  - 투자방식 : 합자
  - 설립조건 :
    - 외국투자자 :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국 무역액 US\$ 3,000만 이상
    - 중국투자자 : 신청전 3년간 연평균 수출입액 USD 3,000만 이상, 대외무역경영권 구비
    - 합자무역회사 : 자본금 RMB 5,000만 이상

(참고) 중국은 2004년도 <외상투자기업 상업영역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WTO 가입에 따른 양허안대로 유통업에 대한 개방을 실천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독자적으로 수출입/중국국내 도소매업을 모두 할 수 있고 또한 법인 설립요건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등록자본금이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3만위안(실제적으로는 정부 관련 부서의 타당성검토에 대한 심사통과를 위해 최저 약 10만불은 되어야 함)입니다. 이는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의 규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방법의 실시와 동시에 잠정방법은 거의 무용한 법률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 20 경호사업에 투자가 가능한지요?

질의

중국에서 경호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답변

경호사업이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위탁을 받아 신체의 안전, 재산 등을 물리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설 경호원, 보디가드 용역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1999년도 <정법기관의 기업관리 유보에 대한 약간규정(政法機關保留企業規範管理若干規定)>과 2000년도 <보안서비스규범관리회사에 대한 공안부의 몇 가지 규정(公安部關於保安服務規範管理公司的若干規定)>에 따르면 보안서비스회사는 공안부서에서만 독자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기타 단체, 기관과 개인은 보안 서비스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안서비스 사업은 금지종류에 속하며 외국인투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현재 중국법률에는 보디가드(保鏢) 사업에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법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비수위(警衛, 징웨이)란 군대, 경찰에서 구성한 보안원의 호칭이며 사설 보디가드와 다릅니다.

## 21 컨설팅 회사 설립은 가능한지요?

**질의** 순수 컨설팅 독자법인의 설립이 이제 가능합니까? 투자가 가능하다면 최저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4년도 수정)중 정보,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규정 상 허가업종과 제한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금지업종은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장려종류(허가업종)>

- 1) 국제경제, 과학기술, 환보정보 컨설팅 서비스
- 2) 회계, 감사(합자, 동업에 한 함)

### <제한종류(제한업종)>

- 1) 법률자문
- 2) 시장조사(합자, 합작에 한 함)

<외상투자 방향 지도 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2004.4.1부터 실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항목은 지지, 허가, 제한과 금지 등 4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권장, 제한과 금지 종류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권장, 제한과 금지 종류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허가종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입니다. 허가종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열거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시장조사”, “회계”, “감사”를 제외하고 중국법률은 외국인투자 투자 자문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 컨설팅 독자법인 설립의 투자액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회사법(公司法)>에서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최저 등록자본금은 RMB 3만원이란 규정은 만족시켜야 합니다. 단, 외국인 독자투자 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주관기관에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를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고, 심사비준기관은 투자액을 포함한 프로젝트 상황을 심사 확인하여 전반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정하기에 투자액이 너무 적으면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가 비준을 받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22 피혁가공업 투자가 궁금합니다.

**질의** 중국내수보다 수출에 치중하는 피혁가공업에 독자투자하고 싶습니다. 독자투자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혁가공업의 수출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혁, 모피제품산업에서 돼지, 소, 양피의 신기술 가공 및 피혁 악세사리 신기술 가공은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권장산업에 속하며 아울러 제한 및 금지 산업목록에서 기타 피혁제품의 제조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독자투자 피혁가공회사는 설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설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세부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 14조, 제 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독자투자기업은 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체로 수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증을 수령하여 년도 수출계획을 편성하고, 매 반기 마다 1회 증서발급기관에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2005년도 수출허가증 관리 상품목록”(상무부, 세관총서 공고 2004년 78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혁제품은 허가증관리 상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자기업에서 피혁제품을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 23 지주회사 설립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현재 중국에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한 상태인데, 이를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등록자본금이 3천만불 이상이 되어야 한데 이것은 지주회사만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1**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2004년 11월 3일, 商務部令 2004年 第22號를 통해 수정)과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관한 일부 규정>([1997]外經貿法發第267號),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 잠정 규정>(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령 2003년 제3호)에 따라 귀사에서 질의하신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 1) ① 외국인투자자 자산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구비해야 하며 회사 설립 신청 1년 전, 당해 투자자의 총 자산금액은 최저 US\$ 4억이어야 하며, 또한 당해 투자자는 중국내에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은 US\$ 1천만을 초과해야 한다. 또는,

② 외국투자자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구비해야 하며, 당해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이미 10개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은 US\$ 3천만을 초과해야 한다.

2)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US\$ 3천만이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US\$ 3천만이어야 하는 바, 이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요구조건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제3조 1)항 규정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바,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요구조건입니다. 따라서 상기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에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에는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2**

지주회사가 기 설립 법인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해야 합니까?

**답변2**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제12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투자액은 투자 설립한 회사 등록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지주회사는 중국에 기 설립된 법인의 등록자본금의 10%를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일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기관리 조례>(國務院令[第156號])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속해야 합니다.

➡ 회사가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

- 1) 투자자 지분변경 신청서
- 2) 회사 원계약서, 정관 및 수정한 협의서
- 3) 회사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복사본
- 4) 회사동사회의 투자자 지분변경에 관한 결의
- 5) 회사투자자 지분변경 후의 동사회 구성원 명단
- 6) 양도측과 양수측에서 체결하고 기타 투자자가 사인 또는 기타 서면 방식으로 인정한 지분양도협 의서, 7) 심사기관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 심사비준기관은 제출자료를 전부 접수한 후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심사 비준기관에서 투자자의 지분변경 비준 후 30일 내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인투자회사 비준증서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변경후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등기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회사의 법인대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 ② 변경결의 또는 결정
- ③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 정관 수정안
- ④ 새로운 주주의 법인자격 증명
- ⑤ 회사 등기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질의3** 지주회사가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금의 보유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제 12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본 규정에서의 지주회사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 :

- 1) 지주회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기타 외국 투자자와 / 또는 중국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주회사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투자 설립한 지주회사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한편 동 규정 제20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일반적으로 그 투자 설립한 기업 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설립한 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주회사의 대우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지주회사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출자비율이 25% 이하인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현행 외국인투자회사의 심사비준 등기절차에 따라 심사비준과 등기를 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에서 외국 투자자가 투입하는 등록자본금 비율은 통상 25%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부 특수업종의 경우, 중국법률은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금 비율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금의 비율은 그 투자기업의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의4** 등록자본금의 출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이는?

**답변4**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제3조 제(1)항에는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이란 단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자본금”이란 회사가 등기기관에 등기하는 자본총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실제 회사에 불입해야 하는 출자액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액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등록자본금”과도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24** 합자파트너가 설비를 입찰로 구매해야 한는데 맞는지요?

**질의** 국유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합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측은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는데, 중국 파트너측은 자신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1장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거쳐 설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측 주장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공정 프로젝트 입찰 범위와 규모 표준 규정>(2000년 5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제3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귀사는 설비와 기술로 출자하므로 입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찰의 주요한 목적은 입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기계설비 또는 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해당가격은 합자 쌍방이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쌍방이 동의하는 제 3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합자회사 설립의 경우, 출자하는 설비, 기술은 입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는 공정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중국기업과 합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정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설비, 기술로 출자하는 것과 입찰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2 자본금납입 · 증자 · 감자 · 지분참여

### 1 현지법인 자본금 납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의**

저희는 중국 연태에 250만 달러(등록자본)를 투자하려는 회사로, 유럽회사와 50:50으로 출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회 출자분은 15%(37.5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7.5만 달러에 대하여 각각 50%(18.75만 달러)출자하여야 하는 지, 이후에도 이런 비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상기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자투자하는 회사가 전부 외국기업일 경우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첫 번째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90일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한에 따라 출자시 투자자가 꼭 출자비례에 따라 출자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작계약서 작성시 쌍방의 상황에 맞게끔 약정을 하면 됩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출자비례에 한하여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기한에 따라 필히 출자비례로 출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2 판매법인을 위한 합작법인 최소 자본금과 설립기간은?

### 질의

현재 북경에 의류관련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의류회사와 합작을 하려 합니다. 한방의 디자인으로 중방이 생산한 의류를 판매법인을 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판매법인을 위한 합작법인 최소자본금과 설립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조업종과 자본금의 차이는 어떤지요?

### 답변

1. 2004년부터 시행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회사법> 제 26조의 규정과 제 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금액은 3만위안이고,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금액은 500만위안입니다.

2. 허가 소요시간 :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성급 상무부서는 상업법인 설립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고 상무부서에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상무부 지방부서에 위탁하여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을 심사허가 할 때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2006년 3월 1일부터 일부분 업종과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무부의 심사허가권을 지방부서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까지 소요되는 기한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다.

### 3 감자를 해야 하는데요?

**질의** 안녕하세요. 증자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주책(등록)자본금을 84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증자신청이 완료되어 영업집조 등의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본사의 사정에 의해 증자결정을 철회(등록자본금의 감자)하고자 하는데 이미 서류발급이 되어 있는데 번복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 철회(번복)가 불가능하다면, 납입을 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 답변

1.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외자기업은 그 경영기간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단 투자총액과 생산경영규모 등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감자 필요성이 있으면 심사부서의 허가를 거친 후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1995년 5월 25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표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을 조절할 때 관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면 다음 사

항이 있는 기업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1) 현행 법률, 법규에 등록자본금에 대하여 최소금액 규정이 있을 경우 조절후의 등록자본금이 법적금액보다 적을 경우
  - 2) 기업이 경제분쟁이 발생하여 사법 혹은 중재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 3) 기업의 계약서 혹은 정관에 생산, 경영규모 관련 최저 규모 규정이 있을 경우 조절 후의 투자총액이 동 최저규모보다 작을 경우
3. 따라서 귀사에서는 감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자 신청시 대외무역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심사허가를 거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4** **등록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의** 등록자본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금, 현물, 특허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요? 현물과 특허를 등록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등록자본금이 500만 달러라면 이 금액중 200만 달러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국내에 있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모기업의 보증) 등록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06년<회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가 화폐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외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근거하여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 재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 예를 들어 기계설비의 경우 회사설립 신청 후 제출하는 정관과 함께 기계설비 명세서, 기계설비 구매시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 허가증, 특허 기술서류,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적재산권 인허가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 출자평가 가격은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신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단 2006년 <회사법>에 의하면 현금투자는 등록자본금의 30% 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외환 및 외채 관련 법률 범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금이 100% 완납된 상황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한도내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등록자본금 불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남경 지역에 아래와 같은 조그만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자본금 규모 : \$2,500,000.00
- 2) 설립시 불입 자본 : \$750,000.00
- 3) 설립일 : 2004. 9월
- 4) 품목 : 전자부품
- 5) 영업 : 중국 및 홍콩 지역에 판매
- 6) 100% 한국 본사투자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6년 8월말까지 나머지 미불입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보고를 현지 공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말까지 동 금액을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불입하지 못했을 때 무슨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과 근거를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가 공상행정 관리국에서 발표한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각 방출자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 제 6조의 규정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규정된 기한내에 자본금을 출자하지 못한 투자자는 원심사 허가부서에서 동기업의 비준증서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준증서 취소 후에 기업은 공상관리부서에 말소 등기 처리를 하여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채권채무를 청리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와 영업집조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상관리부서는 그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공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내에 자본금 불입이 어려울 경우 설립 허가기관에 자본금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 3~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소자본금 규정에 따라 귀사의 자본금이 최소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허가기관에 자본금 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 입금된 자본금 금액이 규정된 최소자본금을 초과했다면 불입된 부분의 자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최소자본금 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건물관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 최소자본금 규정이 3급에 해당하는 50만 위엔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자본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14만달러 + 50만 위엔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이 백화점용도인데 그러면 자본금이 더 있어야 하는지요? 백화점일 때는 최소 자본금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독자기업과 합자기업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근거하면 외국투자자는 건물관리(物業管理에 포함)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는바 2006년<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자본금은 3만위안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경우 외국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부부서의 타당성 검토, 실제 경비 소요 및 자본금 인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제 등록자본금은 법 규정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백화점일 경우 최소 자본금이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본금이 50만 위엔일 경우 20만㎡ 이하의 주택, 5만㎡ 이하의 비주택 관리업 무가 가능합니다.

독자와 합작 중 어느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은 귀사에서 직접 향후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외상투자물업관리공사(外商投資物業管理公司)를 설립할 경우 임대, 건물관리 및 보수 등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건물내부 매장에 자체적으로 입주하여 판매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7 증자절차를 알려주세요.

**질의** 중국에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하던중 금번에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증자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해당지역 상무부서의 심사비준, 공상 행정관리국의 등기변경, 세무등기 변경, 통계국 등 관련부서의 변경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증자절차의 핵심인 상무부서, 공상국, 세무국 3개 부서와 관련된 절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절차 외에도 통계, 외환 등 부서에서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중국 내 증자 절차>

#### 1. 상무부서의 비준

##### 1) 제출서류 :

- ① 회사의 증자신청서
- ②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서류(원본)
- ③ 동사회 결의(원본)
- ④ 계약서, 정관수정 정본(원본)
- ⑤ 비준증서 정본, 부분

2) 심사비준 기한 : 상기 관련 서류구비 후, 먼저 예심을 거친 후 재심 등 절차에 30일 정도 필요.

## 2. 공상변경 등기

### 1) 제출서류 :

<외상투자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투자자 명부>, <회사 법인대표 등기표>, <동사회 구성원, 경리임직증명서>, <회사장소 증명서>, <동사회 결의서>, <법인 영업집조(원본, 부분)>, <계약서>, <정관 수정본>, <자본금 검사보고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부분)> 등

2) 심사 비준기한 : 서류 구비 신청후, 워킹데이 5일내 변경

## 3. 세무변경 등기

### 1) 제출서류

납세인이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0일 내, 원 세무등기기관에 하기 증서,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 등기수속을 해야 함.

- ① 공상등기 변경표 및 영업집조
- ② 납세인 변경등기 내용 관련 증명서류
- ③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원세무등기증서(등기증서 원본, 부분과 등기표 등)
- ④ 기타 관련 서류

2) 심사비준 기한 : 세무기관은 관련 서류 접수후, 접수일부터 30일 내 세무등기 변경을 심사 처리해야 함.

## ➡ 증자 관련 한국내 신고절차

국내 증자관련 신고절차는 투자자금의 국내 신고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트라 홈페이지(<http://crm.kotra.or.kr/main/invest/odi/system/system01.php3>)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재경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odi/sub1/sub3.html>)에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했던 소정양식(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업계획서나 투자개요서)
- 기타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1백만불 이상시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등)

※ 근거법령 :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 9장 제 1절

-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 신고로 가능하나, 해외투자금액이 증액(증자)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에 구분 없이 신규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외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

**8 지분을 중국측에 넘길 때, 관련 세금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양주에 합작투자한 경기도 업체이며 전기용품을 제조합니다.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중국측(49%)에서 한국측 지분을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한국 측(51%, 16억 현금투자)에서도 지분을 넘기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거 법은 무엇이며 세금, 한국으로의 송금절차, 계약서 작성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분인수와 관련한 규정은 <외상투자기업투자자지분변경의 규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입니다. 세금은 지분을 인도하면서 귀사가 취득한 이익의 20%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자본금이 100만 이고 지분인수 가격이 200만일 경우 차액 100만에 관하여 2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납부할 세금은 100만 × 20% = 20만입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세금납부 증빙을 가지고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직접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문으로 된 서류만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양도인(轉讓方), 양수인(受讓方)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이름, 직무, 국적
- 2) 인수하는 지분의 비율 및 가격
- 3) 인수지분의 거래 완료기간 및 방식

- 4) 양수인(受讓力)은 기업의 계약서, 정관에 부여된 권리 향수, 의무 책임
- 5) 위약시 강구할 책임
- 6) 협의의 효력발생 및 종지 시간
- 7) 협의제정 시간 및 지점

계약서 양식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락사무소(대표처)**

**1**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 시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질의**    연락사무소 설치 시 대행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그렇다면 어떤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요 (선택기준, 비용 등)? 대행사를 통했을 때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지요(서류 번역 및 공증 등)? 사무실은 거주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상하이입니다. 끝으로 사무소 등기도 역시 대행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반드시 대행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도 반드시 상하이 정부에서 지정한 약 400개 정도의 오피스빌딩에 입주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대행사는 매우 많고, 연락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는 대행비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대행사는 사무소 설립 자문에서부터 등기증, 파견직원 대표증 취득까지 모두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서류번역은 전문 지정 번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공증은 한국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거주용으로 겸용해서 쓰실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무소 등기는 공상국 등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공상국 등기도 대행사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 2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과 관련 특별한 등록조건이 있는지요?

**질의** 연락사무소 설립과 관련해서 특별한 연락사무소 등록허가 조건이 있는지요? 등록비용과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답변** 연락사무소는 중국에서 외국회사의 대표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처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필요 없고,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지정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 : 상세한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무역투자정보 ⇒ 국별정보
- 2) [www.kotrachina.org](http://www.kotrachina.org) ⇒ 투자실무 ⇒ 중국

### 3 운송업체가 연락사무소를 세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질의** 중국에 설립한 연락사무소 중에서 항공과 선박업종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즉, 운송업체가 베이징에 연락사무소를 세울 때, 연락사무소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답변** 한국 운송업체 대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영업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1) 납세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기업 대표처 세수 관리를 강화한다는 문제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6.9.13 國稅發(1996)165號) 제 1조 제 2조항 제 7항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업체가 설립한 대표처는 운송업무 각 단계에서 거래처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 납세 방법과 관련하여

<외국기업 대표처 세수 관리를 강화한다는 문제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제2조에 따라 아래 상황중 하나가 해당될 경우, 경비 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하는 방법을 채용하여 동 수입액을 확정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가) 대표처가 유효한 계약서, 협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

아 납세해야 할 업무활동과 납세하지 않는 업무활동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경우,

- 나) 대표처가 경상적으로 본사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효한 자료, 증빙을 제공 못하여 대표처와 본사에 배당해야 할 수입액을 정확히 구분 못할 경우,
- 다) 대표처가 수입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처 세금 납부 방법을 확정한다는 문제와 관련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86]財稅外字第055號) 제 3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업체 대표처가 본사 거래처, 기타 기업을 위한 중개업체 소개, 대리 등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사무소는 소재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경비지출액으로 환산한 수입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운송업체 대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와 관련하여(연락사무소 면세혜택 향유 여부), <국가세무총국의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발효에 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我國政府和韓國政府避免双重征稅協定生效的通知)>(동 통지는 소득세에 적용)(1994.9.22) 제 8조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항공 국제운송업무를 경영하여 취득한 이윤은 본사 또는 실제 관리기구가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즉, 한국운송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운송업체가 설립한 대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4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질의

베이징 소재 연락사무소입니다. 현지직원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파견한 중국직원의 노동관리업무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한 북경시 노동국의 통지>[京勞頒發(1996)133號]의 규정에 따르면 외사 서비스 업체(연락사무소 대신 직원을 관리해 주는 기구. FESCO 등)는 <북경시 노동자양로보험규정> (북경시인민정부령[1998]제2호), <북경시 기업직원 실업보험규정> (북경시인민정부령(1994)제7호령) (1999년 <북경시실업보험규정>에 의해 폐지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또는 현(縣)노동국에 중국직원을 위해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사 서비스 업체는 아울러 <북경시 지방소속 직원 및 퇴직인원의 중병 의료비용의 사회총괄모금 관련 규정>(북경시인민정부령(1995)제6호)<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으로 대체됨)에 의하여 중국직원을 위해 중병 의료 사회총괄모금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공적자금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2002]12호)에 따르면, 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업체 및 개인 모두 주택공적자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북경시<산재보험조례>실시방법>(북경시인민정부령제140호)의 규정 및 북경시 산재보험 업종 기준비율 및 유동 등급표에 의하면 대표기구 역시 확정된 비율에 따라 공상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북경시기업직원생육보험규정>(2005년 7월 1일 부터 시행) 제2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북경시 행정구역내의 각종 기업은 북경시 장기 거주 호구를 갖고 있는 직원을 위해 생육보험비용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 5 연락사무소 수석대표의 개인소득세는?

**질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수석대표인 경우, 개인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연락사무소의 외국직원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또는 주거지가 없더라도 중국 내에서 1년을 체류한 개인은 중국 내와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令(142號)]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도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으로 소득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임금, 급여 - 1600원 - 3200원 = 납세 금액

## 6 사회보험 일부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사회보험 일부를 관리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직접 직원에게 지급 가능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 <외국기업 대표처의 중국직원 고용에 관한 관리규정> (북경시 인민정부 제6호) 제 5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 대표처에서 중국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외사 서비스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사사로이 또는 기타 업체 및 개인에게 의뢰하여 중국직원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체 고용 후 외사서비스업체에 등록하면 됨).

동 관리규정 제 8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사 서비스 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중국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비용은 대표처에서 직접 직원을 위해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KOTRA베이징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금평법률사무소

## 7 본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전액 한국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지요?

### 질의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본사 직원을 장기 파견한 후 급여를 전액 한국에서 지급하게 되면 중국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무소는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사무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직원에 대한 일체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사무소 파견 인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답변

사무소에 183일 이상 즉 장기 파견된 직원은 반드시 개인소득세를 중국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중국에서 납부한 후, 중국에서 소득세 납부 증빙을 가지고 한국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보험은 중국인에 해당되고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파견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4

## 가공무역(래료·진료가공)

## 1 진료가공시 중국내 구매 원자재 대금을 한국본사가 결제할 수 있는지요?

## 질의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A시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가방 회사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무역방식은 진료가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원부자재는 중국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중국 자재업체에서 A시 우리 투자법인에 납품한 자재비에 대하여 한국 본사에서 지불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진료가공은 바이어(본사)가 원, 부자재를 공급해주는 것이므로 본사와 중국 자재업체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형태로 하고 납품장소만 중국으로 할 경우 본사와 자재 업체간에 필요한 서류(한국에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프로포마 인보이스, 거래 명세표, 자재 납품 공급계약서, 거래 사실 증명 확인서 등이 필요 한지요?

이런 서류들이 준비되면 가능한지, 아니면 서류가 준비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납품을 하는 자재 업체들이 기업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의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진료가공과 내료가공의 차이점

진료가공은 중국에 있는 자사의 책임하에 원부자재를 유상구매하여 수출품을 완성가공한 후, 역시 자사의 책임하에 수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취할 경우 수입원자재와 수출 완성품은 모두 자사의 이름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내료가공방식은 한국의 본사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중국 국내의 원부자재 공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만약에 중국 내수 구매를 원하신다면 진료가공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단, 한 계약에 대하여 진료와 내료가공방식을 동시에 채택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 2) 결제방법

따라서 진료가공무역에서는 중국 자사의 이름으로 증치세 전용발표(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증치세를 내고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내수로 구매하면 됩니다. 완성품 수출 후에 증치세를 환급받으시는 방법과 보세물류원구를 통하여 (중국산 자재를)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가공무역수책을 만들어 증치세를 면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료가공무역에서는 자사의 중국내수(원부자재)구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치세 발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외화로 결제하여야 하고 물품 공급에 대한 일반

적인 증빙을 갖춘다면 한국 세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이름으로 대금을 결제하셔야 됩니다. 이 때에도 역시 보세물류원구를 통하여 가공무역수책을 만들어 (중국산 자재를)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증치세를 면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물류원구를 통하는 것은 중국산 자재를 내수구매 할 때 내료가공무역에서 가공무역수책(이전의 등기수책)의 관리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자재를 원자재로서 수입했다는 증빙을 수책상 등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품의 개수 수량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있는 보세물류원구(청도, 대련, 상해 등 9개 지역)를 통하여 중국산 물품을 재수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세물류원구를 통과하여 나올 때 수책관리가 시작되고 수출시 수책관리가 종료되므로 증치세 면세혜택(즉, 구매시 증치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방법은 상기와 동일하므로 한국의 본사가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 2 중국에서 다품종 소량 주문 시 임가공 관리의 어떻게?

**질의** 저는 스포츠의류를 중국 A시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중국에 있다 보니 자재를 중국으로 실으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 매번 자재 선적 시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면세신청을 하려고 면세복을 만드는데, 점점 까다로워지는 중국세관의 기준에 맞추려니 관세를 내지 않고 선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첫번째로 loss는 최대 3%까지 밖에 못 넣는다고 하는데 저희 바이어의 경우 소량 다품종으로 주문하는 바이어가 대부분이다 보니, 한 품목 오더당 수량이 워낙 작아(80~300장) 3% 갖고는 생산을 해 나가기가 어려워 6~2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스타일의 토탈 오더 수량이 100장이라고 해도 칼라별로 나뉘면 로스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면세복(가공무역수책)을 중국 사무실로 보내면 그쪽 담당자는 최대 3% 이하로 해서 다시 보내라고만 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자재가 다 못 실려서 작업에 문제가 많아 수정할 수 없다고 하고....

- 1) 이럴 경우 미리 넉넉한 분량의 자재를 공장에 보내놓고 이를 세관에 신고한 이후, 수출할 때마다 소진된 수량을 차감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2) 선적된 자재가 불량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뒤 돌려보낸 수량만큼 다시 실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불량이 났다고 해도 추가로 필요한 선적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막대한 양의 관세를 내더라도 선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지요?

**답변**

첫째, 중국에서 손모량(Loss)이 인정되는 한도는 한국내(기업 자율 소요량 계산 방식)에서와는 달리 국가 단모표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한도를 상회하여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방식에 따라 임가공(내료가공)무역을 영위한다면, 자각 품종(스타일, 모델, 칼라 등)별로 보다 세분하여 세관에 수입원 자재의 로스율을 최대한으로 등록(비안)하고, 로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량자재 등은 퇴운(반송)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가능한 잉여자재는 동일기업의 동일한 무역방식의 자재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 단모표준(국가지정 단위소요량 표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손모량(Loss)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단모표준에서 예컨대 3%로 로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규범입니다.

중국의 법규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을 주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귀사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이 업무의 전문가인 해관 담당 공무원의 지도나 관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기수책이나 수입자재를 관리하는 방법은 계약 한 건을 한 권의 등기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또는 여러 권의 수책으로 한 건의 계약을 관리하는 방법)과 여러 건을 한 권의 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방법은 업체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 관세사와 협의하되 관세사로 하여금 회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지 추천토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불량 자재분은 한국의 위약반송의 형태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장의 통관실무요원(보관원)들의 학력은 고교나 전문대 졸업 정도이어서 업무 숙지도 수준이 높지 않고, 책임감이 높지 않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약물품(불량자재)을 반송한 후에 역시 면세(관세, 증치세)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체물품의 수입에는 관세 등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잉여자재는 동일기업, 동일공장, 동일한 무역방식의 자재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임가공비 실시대조 후 말소(核銷)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질의

저희는 중국에 임가공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한국과 임가공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문서가 왔는데 중국 외환국에서 임가공비에 대해서 핵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소에 대한 내용은 한국에서 100장의 원자재를 보냈고 90장을 받았는데 (10장은 중국에서 불량) 한국에서 검사하니 10장이 또 불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장에 대한 것만 임가공비를 송금하였는데 중국에서 임가공 제품을 90장 보냈으니 나머지 10장에 대해서도 돈을 송금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송금하기 싫다면 핵소를 해야 하는데 핵소를 하기 위해서 한국품질검사부문의 보고서와(10장이 한국에서 불량이 났다는 승인) 주중국 한국대사관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국품질검사부문 보고서를 한국에서는 해주는 곳은 없고 주중국대사관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또 책 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0사의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내료가공기업은 해관등기수책과 경무위의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가공수수료에 대하여 핵소한다. 진료가공무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액을 수취하여야 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액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한 진구합동(수입계약)과 보관단(통관서류), 해관등기수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환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상호 계산하여 잔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국 공장

은 내료가공기업이고 중국과 한국기업은 내료가공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핵소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료 또는 진료가공방식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각 임가공 계약 건별로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진료가공 방식의 임가공은 임가공비만 정산하는 경우보다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액과 원부자재를 사용해 창출하는 수출액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한 임가공계약서를 검사하여 수입수량 및 금액, 수출수량 및 금액, 소모율 등을 비준하여 수책을 발급하고, 이 수책에 따라 수입, 수출 및 수출대금 입금까지의 전과정을 사후관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90장의 임가공비를 수출 신고한 경우는 수출대금 전액이 반드시 일정기한 내(보통 60일에서 90일내)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임가공합동계약에 불량품에 대한 정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동 계약 내용에 따라 불량품의 정산절차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수출후 수출대금의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외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절차이고 수출입업자들도 이런 사후관리절차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상호계산 등에 의한 정산방법은 수출액 중에서 원부자재 대금을 상계한 차액을 정산한다는 것으로 불량품의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만을 정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하는 외환관리국 접촉 결과입니다. 위해 외환관리국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국측에서 정식 클레임증명서를 작성(한국본사에서 이리이러한 사유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명)하고 중국 내료가공기업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

명을 작성해 제출하면 보통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도 외환관리국에서는 불량품을 다시 중국공장으로 보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해결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외환관리국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 4 전장(轉廠)제도를 아시나요?

##### 질의

임가공 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산동성 소재 A업체가 1차 가공을 마치고 광둥성 소재 B 업체에게 납품을 한 후, B업체는 마카오의 C업체에 물건을 수출합니다. 마카오의 C업체는 물품대금을 B 업체가 아니고 A업체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B업체는 단지 위탁가공업체일 뿐, A업체가 수출 주체이고, 거리가 멀어 직접적인 수출 핸들링이 어려우므로 포워딩업체를 통해 수출을 하고, 대금을 결제 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대로 업무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방식을 <전장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 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A업체 1차 가공완료 - 납품 → B업체 2차 가공완료 - 수출 → 마카오 C업체 → 대금결제는 A, B업체로>

이는 이른바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이라고 부르는 가공무역방식으로서, 가공무역업체(A 上游企業, 중간재 단계 생산기업)가 보세원자재를 가공한 상품을 타 가공무역업체(B 下游企業, 최종재 단계 생산기업)에 넘겨 추가 가공을 한 뒤 재수출하는 가공방식입니다. 가공을 위해 가공물품을 A에서 B로 넘기는 것을 바로 전장(轉廠)이라고 하

며 수출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출기업 A는 소재지 세관의 보세업무 관할부서에 진출계획 등록수속을 하고 심가공결전신청표(深加工結轉申請表)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입기업이 있는 광둥성은 전창제도의 활용이 빈번한 지역이어서 심가공결전의 관리방식이 2002년 이후 간편해졌습니다.

즉 진출세관과 전입세관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전입지 세관(광둥성 B기업 소재지)의 세관심사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입전출 허가가 완료됩니다. 그 후 화물을 발송하고, 그 화물수량에 근거하여 이월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관처리절차는 전입기업 수입통관서류 입력 → 전자신고 → 전자서류 심사 → 서류접수 → 수입통관서 통관심사 → 전자시스템 발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때 A, B 업체는 모두 수탁가공업체로서 각각의 가공분에 대하여 가공임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C는 A, B 업체에 각각의 가공임(외화결제)을 지급하게 됩니다.

## 5 임가공 투자기업, 채권 채무상의 차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질문

저희 회사는 중국 ○○성 ○○시 경제기술개발구에 100% 출자한 투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법인은 한국에 있는 본사와 생산 차수별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받아서 임가공을 하고 이를 다시 본사로 수출하면 한국 본사는 입고되는 수량에 한하는 가공임을 T/T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loss가 생깁니다. 물론 추가생산도 있을 수 있지요. 저희 중국 투자법인 무역담당 직원이 현지인인데 가공 후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대로만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의 변은 이렇습니다. “계약수량보다 적게 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수출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럼 계약서를 생산된 수량만큼으로 수정해서 재신고를 한 다음 수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저희 질문에 “신고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각을 다투는 우리 회사 특성상 납기를 맞출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국 투자법인은 수량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수량대로 수출서류를 작성해서 통관시키고 외상매출 채권을 수출면장상에 있는 계약수량으로 계상하고, 여기 한국에서는 실제 물건의 입고수량 만큼을 채무로 계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호간 채권, 채무금액이 상이하게 되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무역 관행인 “10% 및 5% more less” 조항의

여부를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저희 질문에 담당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1) 이 사안의 해결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 2) 두번째 자문을 구할 사항은 세무회계적인 문제입니다. 상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채권, 채무 금액의 차이가 계속 누적되고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본 채권, 채무의 상이 금액을 손해배상(Claim)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처리하여 그 상이 금액을 상계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회계나 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손해배상(Claim)을 당했을 때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1) (고문관세사)
  - 문의기업의 임가공 무역개요
    1. 임가공 합동서 작성 - 스타일 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임
    2. ○○시해관에 등록(비안) - 등기수책 발급
    3. 원부자재 무환으로 수입
    4. 제품가공후 한국 모기업으로 수출
    5. 가공임을 모기업으로부터 전신환(T/T)으로 송금 받음.
    6. 세관 등기 말소(核銷) 상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아래의 번호는 상기 항목의 번호를 그대로 따릅니다.)

- 1번 항목 : 각 스타일별 단위실량과 정상 손모량(Loss)을 계산한 옷 본 등 제조사양서 및 계약서(합동서)상에 정상 손모량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번 항목 : 따라서 등기수책에도 원, 부자재의 수량과 이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질 제품의 수량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3번, 4번항목 : 원부자재 수입시 면세부분을 과세 추정당하지 않기 위하여 담당자는 등기수책상의 수량을 100%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 5번 항목 : 한국 모기업에서는 실제 수입되는 수량만을 입고 처리 하면서 외상채무가 중국수출 신고분보다 통상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 6번 항목 : 중국 투자기업에 기록된 외상채권과 한국 모기업에 기록된 외상채무의 차액이 점점 커지게 되어 그대로 두면 큰문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제의 해결방안)

첫째 : 과거문제의 해결방안(일시적인 수단) - 중국에 기록된 외상채권액과 한국이 지불해야 할 외상채무액의 차액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지체배상, 품질불량)으로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액분과 손해배상금을 상쇄시키는 셈이지요. 이 방법은 증빙서류(송수신 메시지, 합의서 등)를 구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 : 앞으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 ① 00해관에 불량률과 로스를 보고하고 손모량을 현재보다 높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식의 가장 큰 애로(한계)는 수출가공구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가단모표준에 따라 손모량의 상한선 이상으로 손모량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 작업공정도, 옷본, BOM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해관 실사도 나올 것입니다
- ②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손모율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나 수책 관리를 할 때 수치상의 오차(차액 또는 과다수출 신고량)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도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치가 크지 않을 테니까 세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 용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다 계상되는 외상채권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습니다.
- ④ 실제수출량이 비안(계약등록)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비안의 내용을 해관에 변경 신고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추후 가공임의 결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⑤ 핵소(계약의 말소)단계에서 수입된 원자재의 수량, 중량과 완성품의 수량, 중량의 차이가 세관 인정분(손모량) 이상일 경우에는 로스로 발생한 자투리, 불량품, 폐기물, 부산물, 잉여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불량, 부산물, 잉여자재 등의 Ship-Back 등)해야 합니다. 내수 판매분으로 간주하여 관세, 증치세 추정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원자재 공급자에게 반납(반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문 회계사) 중국의 자회사와 한국 본사의 채권채무 잔액은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상호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 선적분에서 차이가 난 원인과 반대로 조정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불량이나 Claim으로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채권채무 잔액은 일치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세무상 인정받기가 아주 힘들 뿐더러(본지사간에는 거의 불가능함), 외화입금이 안되면 수출가공비 외화입금 정산(외화핵소)을 현지법인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임가공료의 계산 및 정산 방법 즉 채권채무의 계상과 현지법인이 수출용 원부자재의 사용량 계산 및 정산방식은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통관서류와는 별개로 실제 가공비 정산서를 작성하도록 이원화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책 정리시 일시적인 부족인 경우 다음 선적분으로 부족 생산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책정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Loss분에 대한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Loss분을 정산하고도 계속 부족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소요량 환산율을 해관에 실지정황에 맞게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관세사 변재서

## 6

## 가공무역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관세, 증치세를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 질의

지난 2004년 4월 이후 천진 00지역에 3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한 가공무역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장제도가 아니라 관세와 증치세를 예치하고 수출후 검사완료(수입등록사항 말소)가 된 후(核銷)에 관련 예치금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 답변

가공무역기업은 세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수책>으로 관리를 하며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및 증치세의 예치에 관련된 규정은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처음으로 가공무역 진행시, 세관은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자재의 관세와 증치세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세관에 신청을 하여 검사말소(核銷)하고 관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동지역의 적용현황을 살펴볼 때 임대공장이거나 현지투자 연한이 오래 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보증금 예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5

## 회계·세무

## 1 투자 예정기업의 세제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질의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회사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현재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대기업인 A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품을 현재 A사가 있는 B시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A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시장에 파는지, 제3국으로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중국 공장 쪽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보낸다면, 관세와 증치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받는다면 몇 %나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1

중국에는 관세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입시점에서부터 수출용 원자재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용으로만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 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유예하고 수출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증치세의 경우 17%, 13%, 8% 등의 징세율로 운영하고 있고 관세는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다양합니다.

**질의2**

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 증치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환급은 되나 시간이 2~3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요. 17%의 증치세 중 1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13%가 맞는지요?

**답변2**

증치세의 환급은 수출 개시 이후 13개월분부터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실제 환급이 되는 시점은 각 지방세무국의 재정상황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목의 징세율은 17%, 환급율은 13%이지만 이 역시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매입증치세액 중 매출액의 4% 상당액은 환급이 안되므로 수출 계상시점에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의3**

현지 사람에게서 중국 B시에 TAX FREE ZONE 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에선 관세나 증치세가 FREE 하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3**

대부분의 연안 개방도시에는 보세구 또는 수출가공구가 있습니다. B시의 외자유치전담부서(보통 초상국)나 KOTRA의 당해 지역 무역관에서 소개받으시면 됩니다. KOTRA의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법인 설립절차가 자료화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가 능통한 투자전담 실무자들을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하여 관세, 증치세가 유예되는 반면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관세, 증치세를 유예 받는 혜택과 현지 자재의 조달 가능성 및 기타 투자비용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손모량기준(국가단모표준)을 맞추기 힘든 제품군을 생산하는 업체는 수출가공구 등이 유리하며, 중국산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보세물류원구에 인접한 지역(일반지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국의 수출자유지역 등과 같이 특정지역 단위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무역시스템에서 수출을 전제로 원자재 수입 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장소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종류나 영위하는 무역의 종류에 따라 면세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의4** 수책등기는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모두 수출할 경우 관세,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공급한 부품을 A사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모두 수출할 경우 저희 회사가 수책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A사에 공급하는 자체가 내국거래가 되어 원자재에 대한 관세, 증치세를 모두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4** A사가 귀사의 부품을 납품받아 전량 수출하면, 전량 수출을 전제로 수입시 징수유예 받은 관세부분은 수출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귀사와 A사 간에 심가공결전(전창)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책등기와 사후정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의 다른 기업에 판매 후 그 회사가 가공한 후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중국내 내수판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납품처(귀사)의 부품을 전량 재수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구입분에 대한 증치세(17%)를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A사가 수출 후 환급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즉 심가공 결전(전창)방식으로 귀사가 생산한 가공물품의 소유권을 A사에 넘겨주면서 핵소처리(가공무역수책 등록말소)를 하고 A사는 귀사로부터 가공물품을 공급받는 단계에서 수책관리를 하였다가 수출 후 수책관리를 끝내는 방법입니다(단,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보세물류원구를 통해서 가공물품을 A사에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매입증치세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5**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공장을 B시에 짓지 않고,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법인이 심천쪽에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고 다시 홍콩으로 수출한다면, 한국에서 심천쪽으로 나가는 원재료가 수책등기가 되서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되고, 중국내에서 구입하는 원자재도 증치세가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습니까? 맞다면 B시로 보내는 물류비만 제외하고는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답변5**

홍콩에 수출한 부품을 최종 사용하는 지역이 중국내인 경우 홍콩에서 중국으로 재수입하는 물류비와 홍콩법인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관세, 증치세의 환급부분이 유리한 경우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단 법인의 관리비를 고려하거나 물류비를 고려하면 중국 내에 공장을 짓고 물류의 이동은 심천의 염전항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법인 관리비가 필요 없게 됨)이라고 판단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 2 초기 중국 투자기업이 자주 겪는 세무 의문점

### 질의 1

저는 중국에 투자 초기인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 담당자입니다. 아직 중국 현지사정과 각종 법규를 잘 모르고 또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세무회계 담당자로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장부에서 보면 7월말 현재 매출은 81만 위안이고 원가는 80만 위안, 경상손익 적자 50만 위안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품 판매가격이 원료구매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여 원가비용과 정상적인 업무수입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혹은 원료 구매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납 증치세가 20여만 위안 남아있고 이번 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유관규정에 따르면 세금 납부률이 2%(2% 보다 적거나 하면 증명자료를 보고해야 함)가 안되면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을 취소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발전과 시장개척 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재무상황도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세무조사의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초기로서 시장 침투 및 사업 아이템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 일부 품목은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시장의 저가품 공세에서 당사의 제품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익을 내고 싶지 적자를 내고 싶겠습니까. 위의 세무정책이 사실인지, 그리고 회사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1**

세무국에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법인 과세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은 과세기간이 1개월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증치세가 있고, 금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입증치세가 매출증치세액보다 일시적으로 큰 경우 외에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질의2**

현지 소재지인 B시 국세청에서 본사의 해관 완세증명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본사에서 신고한 세금 금액과 A시 국세청(A시는 현급시인 B시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급시로 상위 행정단위임)에서 B시 국세청에 전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국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에 관련서류를 세무국에 제출하여 차이를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나 또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답답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에 따른 중국 관세국과 세무국과의 업무 흐름이 어떠하며 회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관세, 증치세의 납부는 관세국이 전산 발행한 납세고지서(해관수입관세 전용 영수증 및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의해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하므로 자동전산으로 납부내역이 사후 관리되고 있습니다. A시 해관에서 B시 국세국으로 수입건별로 관세, 증치세 세금을 이체하거나 내역을 개별 통보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 확인하여야 하나 그 절차가

오히려 번잡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관 완세증명의 착오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종종 해관완세증명이 회사에서 신청한 대로 착오 발행되는 사례가 있어 국세국의 퇴세부문에서 확인 대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3** 현재 투자법인인 당사에는 본사 파견 주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정황을 분석해 보면 향후 약 3년 정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기업에서 주재원의 급여가 많이 지급될 때 오히려 탈세 혐의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재원들의 급여(주재수당)를 한국 모기업이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법상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이전가격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투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 모기업이 주재원 급여를 장기간 부담하게 되면 중국 현지 세법상(기타 법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3** 지급지가 한국 본사이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한 댓가인 경우에는 중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83일 이상 중국에 주재하는 경우 중국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주재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그 이상 장기간 동안 B시 세무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사의 급여 지급내역과 한국에서의 납세증명을 요구하는 등 세무간섭이 있게 됩니다. 이전가격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소득세의 납부를 독촉받게 됩니다.

**질의4** 당사는 중국 내수 10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 등에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출품 제조에 부담한 수입관세 부분은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4** 수출은 중국정부 입장에서 장려하고 있으므로 내수용품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대외무역경영권을 신청하면 자동 부여되므로 원부자재를 직접 수입하고 있다면 수출도 가능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수출영업 등록을 하지 않을 이 유가 없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해관 등록절차를 거쳐 신고하시고 필요에 따라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관세의 사후환급제도는 없습니다. 중국의 관세관리는 사전에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수출용 원부자재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면세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일정기간(보통 1년)내에 수출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 3 중국, 일반납세인 승인 전의 매입증치세도 환급이 되나요?

#### 질의

저희 회사는 ○○시에 있으며, 현재 공장건축이 완료되어, 생산중에 있습니다. 중국 매입증치세 공제와 관련되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납세인 신청 및 승인이 되기 전에 발생된 매입증치세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일반납세인 승인이 되기 전에 자재를 일반무역으로 수입하였고, 일부 자재는 중국 내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납세인 승인은 4월에 받았으며, 매입증치세는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만일 공제가 안된다면 금년 3월 발생분의 경우 30일 내 신고하면 되므로 4월중에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이지만 혹시 일반 납세인 승인일을 변경 가능한지요?

#### 답변

안타깝지만 환급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일반납세인 지정일 이전의 매입증치세는 인증 확인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에 따른 퇴세신청시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세무국에서의 일반납세인 등록일의 조정도 힘든 실정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세관에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관일을 일반납세인 지정일 이후로 수정을 부탁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매입분도 마찬가지로 반품 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4 중국회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 질의

중국의 일반 공무유한공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 답변

일반납세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에 <신규 설립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 7월 1일 공표)와 <신규 설립 상업무역 증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2004년 12월 1일 공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2개 통지에 따르면 일반납세자의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세무 등기일로부터 1년내 실제 판매액이 180만 위안에 달하는 경우에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고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으며 상응한 관리인원, 화물 구입판매 계약서 또는 서면으로 된 의향서가 있고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 경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판매액이 180만 위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찰기간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 3)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화물 실물을 갖추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은 세무등기 시 일반납세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업에 대해 관찰기간 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 KOTRA베이징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금평법률사무소

## 5 인지세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 질의

중국 지사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대하여 인지세(인화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연간 1회 납부), 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과세대상을 확인하였으나 계약문서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국내 세금계산서, 수출입 인보이스를 모두 계약문서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세목 자체가 중요도가 낮아서인지 자세한 정보도 없고 당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세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 답변

인지세 과세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징행조례(中華人民共和國印花稅暫行條例)> 제2조에는 아래 5개 조항에 속하는 증빙은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매매, 가공, 건설공정 담당, 재산 임대, 화물운송, 창고보관, 대출, 재산보험, 기술 계약서 및 기타 계약 성질을 띠고 있는 증빙
- 2) 재산소유권 이전 증빙
- 3) 영업장부(營業帳簿)
- 4) 권리, 허가증명
- 5) 기타 증빙(재정부에서 결정)

인지세 세율은 증빙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0.03% 혹은 0.05%입니다. 단, 가옥(건물)계약서, 선박, 비행기, 차량, 기계, 설비 등 재산 임대계약서와 창고보관계약서는 0.1%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6 중국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경우 기존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한국으로 파견할 중국 직원에게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중국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만일 지급해야 한다면 최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직원개인이 현재 개인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와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해시노동사회보장국(上海市勞動和社會保障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한국으로 파견될 직원과 중국 투자법인 사이 노무관계가 아직 존재할 경우 사회보험료(개인부담 & 회사부담)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급여의 경우 재무정산문제로 인해 중국내 투자법인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7 회계감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질의

남경에 소재한 한국투자기업(자본금 30억원)이 회계 감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 답변

회계 감사비용은 RMB 1,000원에서 심지어는 몇십만 위엔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회사규모, 회사의 세무보고(稅務報告), 당해년도 경영실적 보고(年審報告)의 수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계사무소와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보고의 경우 회계사 필요 없이 회사내부의 회계담당이 직접 정리하여 세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영실적보고(年審報告)일 경우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 자본금이 RMB 3,000만위엔이라면, 비용이 최소 1만 위엔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중국파견 한국직원의 개인소득세는?

**질의**

중국 파견직원의 개인소득세 납세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국에 파견된 직원의 중국 누적 거주 기간이 연간 183일을 넘을 경우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 직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과 한국에서 받는 급여 총액을 중국 세무당국에 신청하여 총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하여 이중과세 부분을 한국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득세 부과 시 기본 공제금액은 RMB 4,800원/월 (비용공제 1,600 + 외국인 추가공제 3,200)이며, 기본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개인소득세를 산출한 후 수입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개인소득세 세율 내역〉**

(단위 : RMB, %)

기본공제 후 소득	세 율	추가 공제금액
500	5%	0
500~2,000	10%	25
2,000~5,000	15%	125
5,000~20,000	20%	375
20,000~40,000	25%	1,375
40,000~60,000	30%	3,375
60,000~80,000	35%	6,375
80,000~100,000	40%	10,375
100,000이상	45%	15,375

개인소득세 계산법 : 기본공제 후 소득 × 세율 - 추가 공제금액

## 9 이윤분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질의

저희 회사는 무석에 설립한지 5년이 되는 업체입니다. 이윤분배 시 배당이윤에 대한 중국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4년 동안 이윤 배당액을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합자회사 청산시 자산인 부동산 유동자산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공제하는지요?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법적 규제가 있는지요?

### 답변

이윤이라면 귀사가 기업소득세를 지불하고 남은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 분배를 할 경우에,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청산시 부채와 손실을 청산한 후 잔여재산이 회사의 지분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귀사가 취득한 이윤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청산회사 지분의 투자금액 즉 자본금이 100만 위안이고 잔여 재산가액이 200만 위안일 경우 차액 100만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납부할 세금은 20만 위안입니다.

상기한 세율 20%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0 법인세(기업소득세)율은?

### 질의

현재 기준으로 중국의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

기본적으로 세율은 33%(국세 30% + 지방세 3%)입니다. 기업소득세(법인세)의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경제특구, 개발구, 보세구, 상해 포동 등 : 15%
- 2) 연해구, 성도, 연강, 변경, 휴양지 : 24%(첨단15%)
- 3) 장려업, 수출 주도업종(70% 이상) : 50% 감면(최저 10%)
- 4) 10년 이상 제조업 감면 : 누적이익 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 3년 50% 경감
- 5) 전년대비 기술개발비(신제품, 신기술, 신공예) 10% 증가: 50% 소득공제(이월이 불가함)
- 6) 중국설비의 40% 세액공제 : 소득세 증가액 한도(5년 이월공제)
- 7) 5년 이상 재투자시 소득세 환급: 40%(수출, 선진기술, 해남경제특구, 농업개발 : 100%)

기업소득세에서 공제 불가항목

- 1)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손실에 대한 배상, 본사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

- 2) 과표를 3% 초과한 공익구호 기부금, 각종 찬조금
- 3) 한도(1,500만 0.5% + 0.3% ; 500만 1% + 0.5%) 초과 접대비

소득세 납부 :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예납, 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정산납부(재정, 세무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 11 이익 발생시점은 어떻게 기산하는지요?

### 질의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외자기업은 2년 면제 3년 감면 혜택의 기업소득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시점이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현지 회계법인은 1개월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 해부터 시작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상식으로는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계산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의 과세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익 발생시점이 월 기준인지, 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중국은 생산성 외자기업에 대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 발생 후 첫 2년은 기업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세무국에 1년 단위로 재무보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발생 시점이 연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년중 1개월만 이익이 발생하고, 기타 11개월은 적자가 나서 연간 통계로 볼 때 이익이 없으면 이익발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초기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이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도 이익이 발생한 연도를 이익 발생연도로 합니다(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76조).

## 12 지주회사도 세제 혜택이 있는지요?

**질의** 중국내 지주회사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일부 세수문제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字[1994]08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업무 및 투자 관련 기타 업무(투자받은 기업에 관리, 양성, 대리 등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련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3 지주회사가 중국 내에서 투자 시, 투자된 회사의 세제혜택은?

**질의** 중국지주회사에서 중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피 투자회사에는 세금혜택이 없는지요?

**답변** <외상투자 지주회사 투자 관련 규정>(상무부령 2004년 제22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기업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의 지분중 지주회사를 포함한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등록자본금의 25% 보다 낮지 않으면 그 투자 설립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서 중국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피투자회사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이윤 재투자 시 기납부 소득세 환급 여부?

질의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이 발생한 이윤으로 재투자했을 경우, 투자액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하는지?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동기업에 재투자하여 자본금을 추가하거나, 또는 자본으로 투자하여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투자자가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조항은 국무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 81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10조에서 말하는 국무원의 별도의 혜택규정은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서 직접 재투자하여 설립, 확대한 제품 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 기업 및 외국투자자가 해남성 경제특구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해남성 경제특구내의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와 농업개발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한 부분의 기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國稅函發[1995] 154호)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세칙의

재투자 관련 환급 혜택 규정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중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로서 기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일부 세수문제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字[1994]083호) 제 1조 2항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주식 배당금)을 중국내에 직접 재투자하는 경우에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며 아울러 기업소득세법, 그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환급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2]90호)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國稅函發[1995] 154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업무 및 투자업무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하고 수출 및 선진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즉 중국 현지법인이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법인의 주주인 외국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하되 송금은 하지 않고, 직접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이므로 환급 혜택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감면혜택도 가능합니다(청도 지역 외경위 해석임).

## 15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의 소득세 관련 규정 내용은?

**질의** 한국파견 인력의 소득세 규정 관련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파견 인력의 소득세 신고 관련 문제는 주소(거주처), 거주기간, 소득내원, 직무급별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업무인력

- 중국에 주거지가 없으며 1개 납세연도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세수협정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중국외 고용주가 지불하고 해당 고용주의 중국내 기구에서 지불하지 않는 임금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면제받게 됩니다.

상기 개인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중국의 기업 또는 개인고용주가 지불하거나 중국내 기구에서 부담한 임금소득 부분만 납세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중국내 기업, 기구가 실사확정(核定)한 이윤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영업수입이 없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중국내 기업, 기구에서 임직하거나 고용된 개인이 중국내에서 근무기간 내에 실제 취득한 임금과 관련하여 중국내 기

업, 기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중국기업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해당 중국내 기구에서 부담한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중국에 주거지가 없으며 1개 납세연도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또는 세수협정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중국에서의 근무기간에 중국기업에서 지불되었거나 또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지불받은 임금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중국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중국 내에 주거지가 없지만 주거기간이 만 1년인 개인의 경우 : 중국 내에 주거지가 없지만 주거기간이 만 1년 이상, 5년 이하인 경우, 중국내 근무기간에 중국기업, 개인고용주와 중국외 기업 또는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임금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임시 출국한 기간에 취득한 임금소득은 중국기업 또는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부분만 신고납세하면 됩니다. 해당 중국내의 기업, 기구가 실사확정(核定)한 이윤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영업수입이 없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중국내 기업, 기구에 임직하거나 고용된 개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실제 취득한 임금과 관련하여 중국기업, 기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임직하고 있는 중국 기업, 기구에서 지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개인이 1개월 내에 중국에서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도 있고 중국에서 임시 출국한 기간에 국내기업 또는 개인고용주

로부터 취득한 임금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당월의 응납세금을 합산하여 신고, 납세해야 합니다.

➔ 이사 등 고급 관리인력

중국내 기업의 동사(이사), 고급관리 인력이 중국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사회 참가비 또는 임금은 해당 인력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직무를 이행하더라도 중국내 기업의 동사 또는 고급 관리 직무를 맡은 날로부터 상기 직무의 해임 전까지의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16 중국에서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청도의 위성도시중 하나인 A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공무역 관련 실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우리회사가 사출기계가 없어서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와 A시의 다른 업체에 외주가공을 준 후에, 이 제품을 다시 우리 공장으로 가지고와 조립한 후에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체 공장에서의 가공정도를 살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는 공정에 대해 외주가공(외발가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입시 면세를 신청하면서 등기수책(내료 또는 진료가공)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면세(관세, 증치세)가 가능합니다.

청도 현지에서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경우 해관(세관)에 외발가공에 대한 수속을 사전에 밟아야 하지만,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상으로는 이 절차를 미리 밟아서 외주가공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의2**

우리회사가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오되 도착지(데스티네이션)를 사출 위탁업체로 한 후에 그곳에서 사출을 하여 우리 공장으로 가져와 조립한 후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2**

이 또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방법을 약간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가공결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애초의 수하인(Consignee)을 사출업체로 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차 가공하고, 전출기업(일차 가공기업)과 전입기업(재가공 기업)의 등기수책을 해관에 갖고 가서 결전을 신청하면 통상 3일 이내에 수속이 끝납니다.

양 기업간에는 마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절차를 밟게 되고, 최종 가공 후 전입기업이 완성품을 수출하고 해관 등록을 말소(핵소)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두 방법중 세관의 관리가 엄격한 것은 외발가공 쪽이며, 최초 신청 시에는 공장 확인, 소요량 확인 등의 관리감독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해관내의 보고체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재량권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발가공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 후에 본 업체로 물품이 회수되지만, 심가공결전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재가공기업 명의로 수출된다는 점이 양자간의 차이점입니다.

## 17 자체 사용설비의 면세 한도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

중국 현지 제조회사입니다. 최근 규모 확장으로 인해서 설비와 금형을 추가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설비 면세 한도액이 50만 달러까지인데, 새로 들여오는 설비가 이 면세 한도액을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 들여오는 설비를 위해 면세 한도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물출자를 하거나 채권 출자전환을 하면 어떨까요?

### 답변

설비, 금형 수입시 면세 한도액을 높이려면 증자가 좋습니다. 귀사가 생각하시는 현물출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를 하셔서 등록자본금이 증가되면 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 출자전환의 경우는 수입설비 면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현물출자 혹은 증자에 관하여 별도로 발표한 법규나 정책은 없습니다. 증자절차는 회사설립 절차와 같고, 기준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우선 증자를 하시려면 회사 신설시 비준기관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 출자전환의 경우 1999년에 국가외경무위, 인민은행이 발표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몇몇 문제에 관한 의견(關於實施債權轉股權若干問題的意見)>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출자전환의 경우 반드시 채권이 외환관리국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채권 출자전환은 금융 등 자산관리기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법인 설립시 장려산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수입하는 설비의 투자 금액을 포함한 투자총액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 등록자본금의 증가와 연동되어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면세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증자 신청은 당초 법인 설립 비준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려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 18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수입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할 때, 세금상 혜택이 있는지요?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감독 관리와 세금징수, 감면 방법> 제 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자체 사용하는 합리적인 수량의 교통도구, 생산용 차량, 사무용품을 수입할 경우에 수입 관세와 공상 통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설비 세수정책 관련 국무원의 통지>에 따르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유형과 제한(을)유형에 부합되고 아울러 기술을 양도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설비는 HS 코드중 8702, 8703, 8704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 19 합자회사 및 기술지원 계약 추진에 따른 조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회사는 A성 B시 지역에 50:50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계약서를 중국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설비의 엔지니어링입니다. 합자회사 계약과 함께 기술지원 계약도 병행하려 합니다만, 이와 관련 중국의 조세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질의1** 합자회사의 이사로서 중국에 업무차 방문시 지불되는 이사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내용 및 부과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1** 이사의 지위 및 이사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책 및 직무수행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직무를 담당할 경우에 지급되는 이사보수에 대하여는 서비스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율은 과세소득이 20,000위엔까지 20%, 50,000위엔까지 30%, 50,000위엔 초과 시 40%를 적용합니다.

과세소득은 수입액이 4,000위엔 이하는 1,600위엔을 공제하고, 4,000위엔 초과액은 20%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급여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금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사비용이 보수가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일 경우 직접 출장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비 정산방식의 비용인 경우 급여소득으로 보되 일시 면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2** 기술지원계약서에 의거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면에 대한 세금 및 부과율은?

**답변2**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부담합니다.

**질의3** 기술지원계약서에 의한 슈퍼바이저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율은?

**답변3** 슈퍼바이저의 지위 및 체류기간과 비용의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슈퍼바이저가 현지 합작법인에 소속되거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으로서 슈퍼바이저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중국내 급여 소득으로 분류하여 5~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술계약서에 의해 지불되는 기술사용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분류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 중국에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경우 원자재 입고시점에 화표(發票, 영수증)가 처리되지 않고 대금 지급시 화표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입고시점과 대금 지급시점이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화표 처리시점에 전표처리를 하다 보니 원가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원자재 입고시점에 일단 전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한후 화표는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업소득세 신고 시 당해 비용 인정이 안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추후 비용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지요?

## 답변

회계처리는 실제 거래사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이며, 국제적인 관례로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외적인 사항들로 인하여 몇 가지 특수한 규칙들이 제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 거래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에 입각하면 실제 자재가 입고되는 시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물품대금을 회수하였거나 대금회수의 권리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시점에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확인서 등에 의

해 물품 인수도 시기, 수량, 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이들 증빙들은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증빙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비록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재 입고시점에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의 상거래 관행상 현금지급을 하여야만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도 실제 자재가 입고된 시점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수익 원가 대응이라는 대전제(이는회계의 기본원칙중 하나임)를 위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를 세무상으로 손금부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 회계원칙을 훼손하게 되므로 중국 관할 세무국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상급기관에 불복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국에서면 질의를 하여 확인을 받아 처리하시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물품 입고 시점에 증치세와 관련된 사항은 (1) 비망 기록하거나 (2) 응교세금 - 증치세 과목이 아닌 기타 응수관 - 해당거래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응교세금 - 증치세는 실제 증치세 영수증을 수령한 시점에 증치세 영수증상의 증치세 해당액을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증치세 영수증의 관리에 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6

## 증치세(부가가치세)

## 1 중국 투자기업의 증치세 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 질의 1

처음 중국에 투자하여 수출 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아예 1년 안에 수출한 증치세는 날아가 버리는지요?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국 A시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기계부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증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원가계산도 다시 해야 하고, 예상 밖의 일이라 몹시 궁금합니다.

## 답변 1

첫 수출개시 후 1년간 증치세는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13개월분부터는 그간 쌓아진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시작하므로 아주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리방식은 수출 초기 업체의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매입세액의 부정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리방식으로 추측됩니다.

**질의2** 증치세 관련 답신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1년간의 증치세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간의 증치세 환급분을 13개월째 전부 정산해 주는지요? 아니면 그냥 1년 치는 그대로 안고 가고 13개월부터는 매월 분을 정산하여 차월에 환급해 주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2** 첫 수출개시 후 1년간은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13개월분부터는 그간 쌓아진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내에서 수출액의 일정률로 환급을 시작하므로 아주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수출규모가 2백만~5백만 위엔 미만의 소규모 수출업자는 매월 정산방식이 아닌 연간정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KOTRA청다옴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 2 중국내 자체 수급한 제품의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문의 사항은 "중국내 자체 수급한 부품"에 대한 증치세 관련 사항입니다.

- \* 본사 : 한국
- \* 중국공장 : 청도
- \* 거래형태 : 임가공계약에 의한 거래, 청도공장 자체 매출도 일어남.
- \* 부품공급 : 한국에서 무상공급, 중국내 자체수급.

이 경우 중국내에서 자체 수급한 부품에 대한 증치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용 원자재 구입시 부담한 증치세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증치세 환급방식은 면세, 상계, 환급 방식으로 상계(抵)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생산 재화에 소모되는 원재료·부품·연료·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화물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지칭하며, 환급(退)은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생산 재화에서 당월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은 화물을 수출하고 재무회계상 매출 처리를 한 후 수출화물 환급 신청표를 작성, 각종 수출 증명서류를 가지고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화물 수출 통관일(수출화물통관서 <수출환급전용>상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함)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부서에 수출화물에 대한 증치세 환급 수속을 신청해야 합니다.

### 3 증치세 환급의 과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

증치세 환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익월 10일까지 증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조업체의 증치세 17%를 가정하여 원재료를 중국내 17%의 매입 증치세를 내고 구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원부재료 : 100,000원

매입증치세(17%) : 17,000원

가공 수출 invoice (fob 포함) 가격 : 150,000원

환급 신청율 (13%) : 19,500원

기업 부담율(4%) : 6,000원

상기내용에서

- 1) 실질적인 환급액의 기준 과표는 무엇입니까?
- 2) 실질적인 환급액의 기준 과표가 환급 신청액인 19,500원보다 작은 매입 증치세분 17,000원이면, 실질적인 기업 부담금(4%)은 매입증치세의 4%인 680원입니까? 매입증치세가 수출증치세의 환급 신청(13%)보다 작은 경우, 구체적인 환급 과표 및 환급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환급액의 기준 과표는 수출액인 150,000원입니다.
- 2)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은 150,000원의 4%인 6,000원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과표 및 환급 계산방법입니다.

A) 10일 까지는 증치세 신고 전산프로그램으로 우선 증치세 납부신고서(증치세 신보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보표상에 수출액을 기재합니다.
- 2) 기초매입세액 잔액을 기재합니다. 전기의 증치세 신보표상의 잔액을 옮겨 적습니다.
- 3) 당기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당기 매입세액은 당월중 세무서에 인증 확인받은 매입증치세 영수증을 전산 입력하면 자동 기재됩니다.
- 4) 공제불능 매입세액 전출액을 기재합니다. 수출액 1)의 4%(징세율과 환급율의 차이)를 기재하며 직접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
- 5) 증치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전기 증치세 퇴세 신청표상의 환급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6) 당기말 매입세액 잔액을 기재합니다.( 2) + 3) - 4) -5) )

B) 15일 까지 역시 전산프로그램으로 증치세 퇴세(환급) 신청을 합니다.

- 1) 수출액을 수출대금 입금 완료 및 해관신고 완료분과 미완료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1) 미완료분 당월수출액 1-2) 완료분 당월수출액
- 2) 전월이전 수출액중 당월 정산완료분을 기재합니다.
- 3) 당월 환급가능액을 기재합니다. 당월정산 완료한 수출액 1-2) + 2) 의 13%(환급율)

- 4) 당월 매입세액 잔액을 기재합니다. 당월말 신보표상의 잔액을 옮겨 적습니다.
- 5) 당월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3) > 4) 인 경우 4)의 금액을 적습니다. 3) < 4) 인 경우 3)의 금액을 적습니다.

위사례의 경우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증치세신고서

- 1) 수출액 150,000원
- 2) 전월말 매입세 잔액 0원
- 3) 당월 매입세액 17,000원
- 4) 공제불능 세액전출 6,000원
- 5) 당월 환급세액 0원
- 6) 당월말 매입세액 잔액 11,000 원

B) 수출퇴세(증치세 환급) 신고서

- 1) 수출액 150,000원 1-1) 정산미완료분 30,000원 1-2) 정산완료분 120,000 원
- 2) 이전 수출중 당월정산분 0원
- 3) 당월 환급가능액 15,600원
- 4) 당월 매입세액 잔액 11,000원
- 5) 환급세액 11,000원

(증치세 환급 사례)

A사

· 원부재료	100,000	
· 매입증치세(매입세액)	17,000	
· 수출인보이스	150,000	⇒ 환급액 기준과표
· 환급신청율(13%)	19,500	(=150,000 * 0.13)
· 기업부담료(4%)	6,000	(=150,000 * 0.04)

(증치세 신고서)

1) 수출액	150,000	
2) 전월말 매입세액(잔액)	0	(없는 것으로 가정)
3) 당월 매입세액(매입증치세)	17,000	
4) 공제불능 매입세액(기업부담료)	6,000	
5) 당월 환급세액	0	(없는 것으로 가정)
6) 당월말 매입세액 잔액	11,000	(=17,000-6,000)

(수출퇴세 신고(증치세 환급 신고))

1) 수출액	150,000	
· 정산미완료	30,000	(가정)
· 정산완료	120,000	(가정)
2) 이전 수출중 당월 정산액	0	(가정)

3) 당월 환급가능액	15,600	(=120,000 * 0.13)
4) 당월말 매입세액 잔액	11,000	
5) 환급세액	11,000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 4 중국 투자기업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회사는 중국 ○○시에 투자한 기업으로 지금까지는 일반무역 형태로 자재를 CKD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 후 로컬로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BUY BACK(한국으로 재수입)을 하기 위해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몇 가지 파악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저희는 자재를 중국 로컬로 100% 현지화할 생각입니다. 수입자재가 하나도 없이 중국 로컬자재만 사용할 경우에도 진료가공무역 계약이 성립하는지요? 진료가공의 경우 중국로컬 자재 구매시 증치세는 처음부터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납부하고 수출할 때 환급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고문회계사) 진료가공은 임가공계약을 근거로 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통관을 관리하는 방식중 하나입니다.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진료가공방식으로 통관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통관할 자재가 없으므로 의미도 없습니다. 즉 내료가공, 진료가공, 일반무역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통관을 하던 중국내에서 구매되는 자재에 대한 증치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하고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 또는 이월공제를 받게 됩니다. 내료가공 방식 하에서는 증치세 환급이 안됩니다.

(고문관세사)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일반무역이지 임가공무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료가공무역에서 중국산 자재를 증치세를 내고 구매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이나 일반무역의 방식으로 수출 후 증치세를 환급 받는 것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로나 진료가공무역에서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 관세와 증치세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며, 그 대신에 등기수책으로 면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부자재에 대한 내수 구매분에 대한 증치세 환급은 고문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 질의2

만약 중국로컬 자재 100% 사용으로 인해 가공무역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일반무역으로 한다면 그래도 완제품 수출 시에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답변2

(고문회계사) 진료가공방식 하에서 원부자재의 수입시에 부담한 증치세가 없으므로 수출실적에서 수입한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수출액은 수출실적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환급증치세 계산방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 내에서 구매한 자재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증치세를 한도로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무역방식에서는 수입시 부담한 증치세와 중국내에서 부담한 증치세를 합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합니다.

**질의3**

위의 두가지 케이스 모두 중국 로컬 자재만 사용하여 나중에 한국으로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한국 수입관세가 붙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이 때 진료가공과 일반무역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떤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3**

(고문회계사) 한국에서의 관세 부과방식은 진료가공이라 하여도 품목과 임가공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료가공 방식으로 원부자재가 중국 임가공 현지법인에 제공후 가공하여 한국으로 재수입할 경우 원부자재가격을 제외한 임가공료와 현지 조달한 보조자재 해당액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무역인 경우에는 전액이 관세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가공방식에서 수입자재가 없이 전부 중국내 자재로 조달하여 가공한다면 일반무역 방식과 동일한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관세 과세표준 관리방식에 따라서 달리 취급될 수도 있으니 이점은 관세 전문가에게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문관세사) 한국(또는 제3국)에서 무상제공(내료) 또는 판매(진료)된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구입한다면 그것은 일반무역으로서 한국으로 수입시에는 송품장 가격(CIF기준)에 관세율을 곱한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첨언하자면 진료가공의 경우

한국에서 볼 때는 자재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일반 유상무역과 다름이 없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수출 장려차원에서 가공무역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진료가공이나 일반무역이나 한국에서의 관세의 과세 표준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 질의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진료가공과 일반무역, 증치세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 1) 진료가공계약시 로컬자재 구매 인정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진료가공무역은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내료가공일 때는 일부 로컬자재 구매시에 외국업체에서 대금 납부를 위해 간접수출입 (결전수책) 방식으로 면세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재는 중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들어오지만, 대금결제는 간접수출입으로 인정하여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 같습니다.
- 2) 만약 진료가공 무역시 로컬자재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 허가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 3) 진료가공 무역시 구매한 로컬자재분도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증치세 17% 선납부후 수출시에 13% 환급받는 방식이 맞는 것이지요?
- 4) 증치세 환급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립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투자 관련 정보들을 읽어보면, 중국내 세수악화로 인해 증치세 환급 이행율이 낮아서 외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그 말은 증치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증치세가 정확히 어떻게 환급되는 것인지, 만약 현금으로 계좌이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켜 준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현저히 큰 기업에서는 영원히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 5) 일반무역으로 자재 수입시 중국내에서 관세 및 증치세가 발생할 텐데요. 일반무역으로 들어온 수입자재를 이용, 가공후 재수출할 경우 중국에서 관세도 환급이 되는 것이지요?

#### 답변4

- 1) (고문관세사)진료가공의 경우 계약상에 상호 합의된 수입원부자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수입자재의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원부자재를 수입통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임가공계약과 관련 등기수책은 매 건별로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가공 무역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수책관리를 전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문회계사) 내료가공이어서 간접수출(결전)의 증치세를 면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방식(내료,진료,일반무역)에 따라 증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수출 또는 내수, 품목에 따라 증치세율이 달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종 간접수출의 경우 증치세 면세를 하는 지방정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증치세 자체를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무원의 일관된 해석은 간접수출의 경우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증치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문관세사) 진료가공은 중국 가공무역업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원자재를 유상구매(국내자재, 수입자재)하는 것이므로 임가공계약서가 아닌 수출계약을 근거로 가공무역수책을 만들어 관세, 증치세 면세를 사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료가공무역에서는 자재의 내수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내료가공무역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는 최근 광둥지역에서 내료가공무역의 원자재로서 면세 수입하여 내수시장에 매각하였다가 체포된 밀수범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중국)산 자재와 수입자재를 혼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수출(결전, 전창)은 한국의 기납증(혹은 분증)에 의한 공급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료가공에서는 해외공급자가 자재대금을 결제하므로 자재의 해외인수 수입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때 자재의 수책관리상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고문관세사) 진료가공의 경우 로컬자재의 구매범위에 대한 특정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진료가공의 수출입계약을 해관에 등록하고 그 계약에 따라 등록된 원부자재의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원자재를 수입 혹은 구매하여, 가공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
- 3) (이하 고문회계사) 중국 내에서 자재 매입시 부담한 증치세와 일반무역으로 수입시에 해관에 납부한 증치세는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내료가공 방식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급율(대부분 13%)과 징세율(대부분 17%)에 따라 차액 해당액(4%)을 매입증치세 부담액에서 먼저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수출실적(엄밀하게는 수출 후 외화수금 실적)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확인한 후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3개월 정도 이후에 환급하게 됩니다.

- 4) 첫 수출이 개시된 후 12개월까지는 매월증치세 신고만 하며, 13개월째부터 환급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환급을 해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차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다가 연간 단위로 정산후 환급을 합니다.
- 5) 일반무역으로 들어온 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관세사 변재서

## 5 서비스업 중국 진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꼭 체크해야

### 질의

저희 회사는 국내 종합 물류서비스업체로 현재 중국 ○○시에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경위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모 대형제조업체(이하 A사로 지칭)의 물류부문을 전담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A사의 사업장내에서 크레인, 지게차를 고정 투입하여 사업장내 제조품 이동 및 한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를 하역, 육상 운송하고 전체 제작이 끝나면 중국내 거래기업 납품을 위한 해상운송, 또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해상운송을 하는 물류서비스를 저희 회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제 관련 어려움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 1) 증치세 문제 : 현지 진출전 물류서비스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사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A사의 세무사는 운송업도 7%의 증치세를 내야 된다고 하며, 증치세를 구분해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과연 증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 2) 회계처리 문제 :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법인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대행업체(1급 포워딩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해서 그쪽 상호로 청구, 수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비공급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국내 장비를 못 들여왔기 때문에 현지 장비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A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월말 장비공급자가 대행업체로 청구하면 대행업체는 INVOICE로 A사에 청구하고 수금되면 우리 회사 한국 모기업으로 송금하고 다시 모기업에서는 장비공급자한테 직접 송금하고 대행처에도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인데 송금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회계처리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답변

- 1) 현지 세무사가 증치세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통역의 불완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송업 및 관련 상하역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세(세율 3%) 과세 대상입니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증치세 대신 영업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송비에 대하여는 7%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품을 농축산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때에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公路), 내하(內河 - 내륙하천) 화물운수업 통일영수증(發標)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운송비에 상하역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일반 영수증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 2) 현지법인 설립이 없는 상태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한국의 본사가 모든 운송 및 상하역 관련 수수료를 수령해서 현지 비용을 지급하되 대행업체의 창구를 통하여야 하므로 대행업체의 세금 결정방식이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식 운송비 전용발표(전용영수증)

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A사가 7%의 증치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자체는 회사의 경영 또는 업무내용을 기록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송금과 회계처리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이 없으므로 운송수입이 아닌 용역 보수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OTRA청다오훵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 6 고정자산에도 증치세가 적용되는지?

**질의** 증치세 관련 질의입니다.

1. 일반 무역 단지내 수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증치세 17%가 부과되는지? 부과가 되면 취득 후에 공제 및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2. 투자에 따른 해외 설비(기계) 반입 시 관세 및 증치세의 적용 및 면세의 적용 기준은? (참고할 문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세가 아닌 과세가 적용 될 시 공제 및 환급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1. 건물을 취득하면 증치세가 아니라 부동산취득세(契稅)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3~5%로 지역마다 다르며 산동의 경우 3%라고 합니다.
2. 1998년 1월 1일부로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습니다. 면세적용 범위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장려항목과 제한항목 을류, <국가중점발전산업 상품기술 목록> 품목입니다. 그 후 2002년 10월 1일부로 이 우대정책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수입설비 면세조치는 :

- ◇ 1996년 4월 이전에 승인을 받은 기술개조 항목, SOC 항목, 외

국인투자 항목의 경우 잔여 투자액 이내에서 자체이용 설비를 수입할 경우 면세불가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합니다.

- ◇ 2002. 10. 1일 이후 비준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항목 중 "100% 수출형 허가업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증치세를 먼저 징수한 후 제품의 출하일자부터 해당제품이 모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시 매년 납세액의 20%씩 반환하여 5년내 전부 환급합니다. 일부만 수출한 경우 해당연도 납세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는 외에 법적 처벌도 추궁합니다.

## 7 원자재 수입통관 시 증치세는?

### 질의

중국 공장쪽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보낸다면, 관세와 증치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제품은 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받는다면 몇 %나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 증치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환급은 되나 시간이 2~3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회사에 이득이 있습니까? 17%의 증치세 중 1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13% 맞는지요?

### 답변

관세와 증치세는 HS CODE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세한 HS CODE를 말씀해 주셔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한국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이 수출되지 않고 중국에서 내수될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할 경우 증치세를 반드시 부담해야 됩니다. 단 이것도 HS CODE에 따라 17% 혹은 13%의 증치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환급을 받는 정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 내수제품의 증치세 환급은 수출제품 환급과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달 세무국에 신고하여 제품의 판매와 구입 차액에 한하여 증치세를 부가하면 됩니다.

## 8 물품 국외 반송시 기납부 증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질의

중국의 관세 및 증치세 환급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가 중국 상해로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수출제품 전량을 한국으로 반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바이어 측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제품 통관시 부과된 관세 및 증치세(약 4.5만 위안)를 한국으로 반송 시 환급받을 수 없다 하여 이 비용까지 당사에서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하자제품을 반송한 후 이 계약이 종료가 되어 보상제품이 다시 수출되지 않고 중국 바이어측에서 재수입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관세 및 증치세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중국 법규상 상기 사유로 인한 수입제품 반송시 이미 부과된 관세 및 증치세 환급이 불가능한지요?

### 답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반송할 경우 우선은 상품검역 관리국의 증명에 있어야만 반송이 가능하고, 세관에서도 상품관리국의 증명에 의하여 반송처리를 합니다. 또한 세관이 제품의 반송을 승인하여 제품이 반송될 경우 수입시 지불했던 관세, 증치세에 대하여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해당 세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해 세관의 관련부서의 전화번호는 86-21-6889-2085입니다.

## 9 증치세(부가가치세) 최종 납부액은?

## 질의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증치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면, 수입부가세 10%를 세관에 내고 나서야 통관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다시 A라는 업체에 이익을 보고 판매를 하게 되면, 수입부가세 10%를 매출부가세에서 감액하여서 최종세액을 내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중국에서 수입상이 수입증치세 17%를 내고 통관을 해서, A라는 업체에 이익을 보고 판매를 하게 되면, 수입증치세 17%를 매출증치세에서 감액해서 최종세액을 내게 되나요?

## 답변

중국 내수제품에 대하여 납부세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출액 × 적용세율(17% 혹은 13%)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매입액 × 적용세율(17% 혹은 13%)

즉 증치세를 우선 납부하고 향후 매출입 차액에 관한 세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10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급자격은?****질의**

증치세 영수증은 발행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답변**

증치세 발행은 일반 납세인과 소규모 납세인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 납세인은 설립 첫해부터 발행이 가능하고, 소규모 납세인은 1년 후 연간 매출액이 RMB 180만 이상이면 세무국에 일반납세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본금이 RMB 500만 이상이면 일반납세인 자격을 갖추어 첫 1년부터 증치세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납세인이 첫 1년 연간 매출액이 RMB 180만 이상이 되어 익년 일반 납세인 자격을 신청하여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하여도 첫 1년의 증치세는 환급 해주지 않습니다.

## 11 중국산 설비 구매시 증치세 환급은?

### 질의

중국산 설비를 구매하면 증치세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 답변

- 1) 귀사에서 질의하신 국산 설비 구매 관련 증치세 환급은 국가세무총국에서 1999년 9월 공포한 <외상투자기업의 국산 설비를 구입시 세금환급 관리 잠정방법>(1999년 9월 1일 시행) 제 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환급 혜택을 향유하는 주체는 세무등기 수속을 밟은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불입한 자본금은 반드시 기업 투자 각방이 기업 투자한 자본금의 25%(25%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국산설비는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 관련 국무원의 통지>(國稅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장려종류와 제한을류) 및 <현재 국가에서 중점으로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 목록>의 투자 프로젝트에 부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설비여야 하며, 당해 설비는 반드시 세무기관에서 확정된 환급 투자총액(확정한 환급 투자총액 = 투자 각측의 화폐 투자총액 - 이미 구매한 면세 수입설비 총가치)에서 화폐로 구입한 사용하지 않은 국산설비이어야 하되, 투자측의 실물투자와 무형자산 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3) 기업은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서 환급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중, 환급받는 금액=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 × 적용받는 증치세 세율이 됩니다.
- 4) 당해 증치세 환급제도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규정으로서 각 지방세무기관에서 당해 규정 적용 시에 그 기본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즉, 증치세 환급 관련법은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없습니다.

## 12 자동차 부품의 증치세 환급율은?

**질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용 휠의 증치세 환급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출 화물의 환급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2003]222號)에 따르면 자동차 및 당해 관건적인 부품의 환급율은 17%입니다.

중국세관에서 공표한 “2005년 최신 수출 환급 세율표”와 “2004년 세관에서 공표한 제품 분류 코드 설명”에 근거하면 코드번호가 87087090인 부품에는 11개 제품(車輪、車輪蓋、鋼鈴、鋼圈、輪輻板毛坯、輪圈、輪轂、輪轂蓋、前輪轂、小汽車輪轂、轂蓋)이 있습니다. 상기 11종 제품의 환급율은 17%입니다.

상기 내용에는 WHEEL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지만 WHEEL이 輪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분류로 판단하건대 코드번호가 87087090인 부품의 환급율은 17%입니다.

### 13 중국에서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중국 A성 B시에서 셋탑박스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세우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 후 한국 본사로 수출하는 방식의 영업을 취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이 경우 원자재 구매시 납부한 증치세 17%를 수출 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1** 품목에 따라 환급율이 다릅니다. 대부분 13%이지만, 특정 수출 장려품목은 17% 전액을 환급하기도 하고, 환급을 전혀 안해 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HS code를 국가세무총국의 홈페이지 ([www.chinatax.gov.cn/tsl.jsp](http://www.chinatax.gov.cn/tsl.jsp))에 입력하시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의2** 현지법인의 회계담당에 따르면 회사 수출개시후 1년간은 증치세 환급 신고만 받다가 1년 이후부터 1년간 누적된 증치세를 인민폐로 한번에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2** 1년 이후 일시환급이 아니라 그 이후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을 해줍니다.

**질의3** 이전에 이월공제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에서 말한 인민폐 환급이 아닌 여타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지요?

**답변3** 증치세 관련 설명중 이월공제란 표현을 사용했다면, 수출개시 후 초기 12개월간의 매입증치세는 13개월 이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질의4** 중국내 한국 투자법인들의 증치세 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증치세 환급이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4** 기업측이 매입증치세 영수증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원 부족, 세무국의 관련 전산망 구축 지체등으로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내 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정부족이나 전산망 구축 지체등으로 인한 환급 지연은 많이 해소가 되었으며, 오히려 기업측의 환급신청 절차 준비의 오류나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답변 내용 중 2번, 3번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5** 2번 항목의 답변을 보면 "1년 이후 일시환급이 아니라 수출 실적에 따라 환급을 해줍니다"라고 하셨는데 수출실적의 많고 적음이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니면 수출 실적의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변5** 수출실적, 정확하게는 수출 후 중국 해관(우리의 세관), 외환관리국, 세무국의 수출 및 대금입금 확인절차 완료 후 해당 확인액에 환급율을 적용하여 환급가능액이 계산됩니다. 이 환급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증치세액을 환급하여 줍니다.

**질의6** 3번 항목 답변 중 "수출 개시후 초기 12개월간의 초기 매입 증치세는 13개월 이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중략)"이라고 하셨는데 당사의 현지법인은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 등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제할 매출세액이 있는지요?

**답변6** 중국내에서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으며, 추가답변1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을 하게 됩니다.

## 7

## 직원 채용 및 관리 · 사회보험

## 1 중국에서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질의

안녕하십니까? 중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기업입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지요?

한국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또는 친인척의 인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답변

중국에서는 신원보증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 법학에서는 이를 인사보증이라고 합니다.

인사보증은 직무보증 또는 신원보증이라고도 하는데 고용관계 혹은 직무관계중 피고용인의 사유로 고용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일종의 특수한 보증계약입니다. 신원보증 관련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제정한 방식으로 스위스 및 대만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비전형적인 계약형식인데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들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노동계약 담보문제에 관하여 노동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중국 노동부, 공안부, 전국총공회(한국의 노총에 해당)가 1994년 3월 4일 공동으로 발표한 《외상투자기업과 사영기업 노동관리면에서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절히 보장하는데 관한 통지》 제 2조에는 “기업은 직원으로부터 화폐, 현물 등의 형식으로 “입사 보증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직원의 주민등록증, 임시 거주증과 기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증빙을 압류 혹은 저당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1995년 8월 4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을 관철 집행하는데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4조에는 “고용회사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시 어떠한 형식으로도 노동자에 대해서 계약금, 보증금(물) 혹은 저당금(물)을 수취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노동행정 주요 관리부서에서는 고용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계약금, 보증금(물) 혹은 저당금(물)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로 노동계약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노동관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인사보증(신원보증)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 중국내 법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공보에 실린 <중국공상은행 하얼빈 평화지점이 고연을 기소한 담보계약 분쟁건>이라는 판례를 보면 하얼빈 중국인민법원은 <본건의 담보계약이 가리키는 주요 계약서의 약정은 평등 주체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기업 내부의 관리업무이다. 담보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인의 “법을 위반 행위, 규장제도 위반 행위”가 기업이익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본건의 “담보계약”은 민법통칙과 담보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로 발생한 분쟁은 민법 조절 범위가 아니며 인민법원이 접수 처리해야 할 민사소송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기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동 판례는 간접적으로 노동계약에 보증을 제공하는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현재 노동계약에 물질적인 담보 혹은 인위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전부 법률의 승인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2) 중국 투자기업의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관련 법적근거는?**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A시 B진에 소재한 악세사리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11월초 2004년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의무적으로 회사인원 대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당사에서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인민폐 7,200위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소규모 회사(70~80명 정도)로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B진 세무서에서 장애인고용법을 어긴 결과로 상기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회계사무소에 전화를 했고, 회계사무소에서는 당사로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자동으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당사로 보내지 않고 단지 전화상으로만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장애인고용법이라는 것이 있는지요?
- 아무런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입금을 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답변**

- 1)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1991년 5월 15일부 시행) 제 30조(…기관, 단체, 기업 사업조직, 도시, 향 집체경제 조직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 배치해야 하며 적절한 업무와 직책을 선택해 주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할 수 있

다.)에 의하면 귀사에서는 반드시 재직 직원 총수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 배치해야 합니다.

- 2)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관한 방법>(2001년 4월 1일부 시행) 제 5조에 의하면 산동성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이하 고용사로 통칭)는 필히 재직직원의 1.5%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채용, 배치해야 합니다.

<청도시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관리 잠정 방법>(2004년 1월 1일부 시행) 제 3조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 배치비율이 재직직원의 1.6%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관한 방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 비율이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고용주는 반드시 실제 차액 비율에 의하여 장애인 취업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준은 해당 지역 통계부문에서 발표한 전년도 지역 직원 평균 월급여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공식 : 납부 보증금 = 전년도 전시(청도) 직원 평균 월급여액 \* (고용사 전년도 말 실제 재직직원수 \* 1.6% - 고용사 전년도 말 재직 장애인수)

- 4)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관한 방법>, <산동성 인민정부 사무청 지방 세무부서에서 장애인 취업 보증금을 대리 징수 하는데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 및 <청도시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관리 잠정 방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증금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 노동취업 서비스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각 기업의 보증금은 각 구, 시급(현급시를 지칭함) 지방세무국에서 대리 징수합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장애인 취업 비율 연검사 기한이고 9월 30일이 전년도 보증금 징수기한입니다. 보증금은 연도에 따라 징수하며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매일 5%의 체납금을 수취합니다. 장애인 취업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는 필히 장애인 취업 보증금 납부통지서에 명기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기구(혹은 지방세무국 대리징수)는 장애인 취업 보증금 수취 후 필히 성 재정부서에서 통일 인쇄 발행한 장애인 취업보증금 전용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 기구가 날인해야 합니다.

- 5) 만약 장애인 취업 보증금 납부 결정 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 재심의(재심의 신청 기한 : 처리 결정일로부터 60일)도 신청하지 않고 소송(소송 제출기한 : 처리 결정일로부터 3개월)도 하지 않으며 또한 처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결정을 한 인민정부에서 위탁한 장애인 연합회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청도시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기구에 장애인 취업 보증금 납부통지서 및 구체적 행정행위 처리결정서 및 관련 증빙, 그리고 장애인 취업 보증금 전용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직원들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질의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 약 1년 정도 되는 투자법인으로 진출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현지법규중 낮은 부분들이 많아 답답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지불한 정식 영수증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여기 회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접대비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세무에서 복리후생비도 수입의 일정율(14%) 범위 내에서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답변

중국에서의 복리후생비 관리는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및 복리비는 그 지급 표준과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서 사전 심사하여 비준을 받도록 하다가, 2003. 1. 1 부터는 사후에 제출하도록 바뀌었을 뿐 그 지출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급여총액의 14%를 한도로 하는 직공복리비는 사전에 정해진 지급표준과 방침에 따라 지급하되 사후에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직원들의 회식비는 복리비의 일반적인 지출 내용에 비추어 납세조정을 당하여 직접 손금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대비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접대비도 한도 여유가 없으면 복리비로 회계처리를 하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 사후 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4 임금에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입니다. 중국 근로자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국 관리직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급료 조건을 제시하는데 노동법/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세후 수령액 3,000위안 정도인 직원인데, 회사에서 각종 보험 및 주방공적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4,000위안을 본인에게 직접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자 회사로서 처리 가능한지와 소득세 등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중국 관련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각종 보험 및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을 납부치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크게 각종 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의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중 최소한 하나는 고용주가 직접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내 기업이 고용직원을 위하여 각항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이 기업 소재 해당 지방 평균봉급보다 300% 이상 높을 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해당 지방 직원 평균봉급의 300%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사회보험비용 징수 집행조례

제 4조 :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할 회사와 개인은 필히 규정한 금액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제 12조 : 회사와 개인은 현금으로 규정한 보험비용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13조 :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보장 행정부문 혹은 세무부문에서 정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비용의 일당 천분의 2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납금은 사회보험기금으로 사용한다.

상기 규정을 볼 때 회사는 각종 사회보험비용의 납부 당사자로서 자체 부담할 비용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 5 중국에서 직원 해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질의**

중국에서 직원 해고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최근 현지 투자기업 중 일부에서 직원 해고시의 부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보다 고용의 유연성이 더 보장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지만, 아직도 중국의 사회체제 골간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원 해고시 관련 근거만 갖추어 놓는다면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 해고 시 큰 어려움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노동관계의 기본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으로, 이 법은 노동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에게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퇴사 혹은 노동계약 해지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됩니다.

우리 투자기업중 일부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의 제명 또는 노동계약 해지 관련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관련 증빙 보완 소홀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의 보완 및 수집에 대해 평소 주의를 기울인다면 유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련 증빙자료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규율을 위반한 직원의 "검토서(각서)", "사정서", "변명서", 규율 위반 상황 설명 등
- (2) 규율을 위반한 직원 본인이 서명한 규율 위반 기록, 처벌통지서 등
- (3) 기타 직원 및 사정을 아는 제 3자의 증언
- (4) 관련 사건과 관련된 물증(예를 들어 파손된 생산설비 등)
- (5) 관련 서면 증거 및 녹음, 영상 자료(예를 들어 녹음, 녹화 자료 등)
- (6) 정부 관련 부서의 처리 의견, 처리 기록 및 증명 등

특히 그중 서면 증거가 가장 효과적인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규율을 위반한 직원의 서명을 받은 서면 증거는 가능한 수집하고 잘 보존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평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을 수집,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일상 서면 문서 제도와 서류 보관제도의 철저한 실시
- 2) "큰 착오는 없지만 작은 착오를 자꾸 범하는" 직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평상시 기록 보존에 주의를 기울일 것. 예를 들어 매번 규율 위반시 회사에서 관련 서면 처리서류를 작성하고 해당직원에게 서명케 하는 것이 좋음. 만약 해당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봉급에서 벌금을 공제하고 봉급 내역서에 벌금 금액과 그 사유를 기재한 후에 급여 수령 시 직원에게 서명케 함
- 3) 위법행위(도박, 절도 등)가 있는 직원은 정부 관련부서에 즉시 처리를 청구함. 정부 관련 부서의 처리결론 혹은 기록은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6**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질의**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지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어느 기관과 접촉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비용만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만약 내야 한다면 어떤 세금이 있고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중국에서는 4대 보험이라고 하여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공상보험이 있으며, 그 외 주택공적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총 임금의 62%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중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이 44%, 개인부담분이 18%를 차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시 사회복지보험 공제 내역〉

구 분	표 준	기업납부율	본인납부율
기본양로보험	30%	22%	8%
실업보험비	3%	2%	1%
공상보험비	0.5%	0.5%	0%
의료보험비	14%	12%	2%
직공 교육경비	0.5%	0.5%	%
주택공적금	14%	7%	7%

연락사무소(대표처)의 경우 上海市對外服務有限公司, 中智上海外企服務有限公司 등에서 고용계약과 보험금 납부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 上海市對外服務有限公司(Shanghai Foreign Service Co.,Ltd.)

주 소 : 上海市金陵西路28号金陵大厦

전 화 : 86-21-6372-1888

홈페이지 : [www.efesco.com](http://www.efesco.com)

➡ 中智上海公司外企服務分公司

주 소 : 上海市衡山路922号18樓建匯大厦

전 화 : 86-21-5459-4545

팩 스 : 86-21-6407-0263

홈페이지 : [www.ciicsh.com](http://www.ciicsh.com)

한중협정으로 규정된 면세기관(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제외한 연락사무소는 모두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계사 사무소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무소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33%의 소득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무소일 경우는 면세신청을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락사무소는 운영비에 한하여 9.8%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7 공장 노무자를 위한 산재보험은?

**질의** 일반적으로 공장 노무자를 위한 산재보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다들 가입하고 있는지요?

**답변** 중국은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회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이 포함됩니다. 주로 총 임금의 62%, 그 중 공상보험 즉 산재보험이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62% 가운데서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이 44%, 개인 자체부담이 18%를 차지합니다. 상세내역은 6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공상보험)은 아래 10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 1) 근무시간내 근무지에서 사무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
- 2) 근무시간 전후 근무지에서 사무에 필요한 준비 혹은 마무리 작업시 사고나 났을 경우
- 3) 근무시간내 근무지에서 사무책임을 시행하다가 폭력 등 의외 사고가 났을 경우
- 4) 직업병이 걸렸을 경우
- 5) 외출기간 업무 이유로 해를 입거나, 사고가 나서 행방불명의 경우
- 6)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산재(공상)로 인정하는 기타 형식

- 8) 근무시간 내 근무지에서 질병이 돌발하여 사망되거나 구급을 하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48시간 내 사망되었을 경우
  - 9) 구재(수재, 화재)활동 등 국가이익, 공공이익을 구재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피해를 받았을 경우
  - 10) 원래 병역에 복무, 전쟁으로 상처를 입어 신체장애 혁명군인증을 발급 받은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병이 재발했을 경우
- ※ 상기의 10가지 경우 회사는 반드시 노무자에게 산재보험(공상보험)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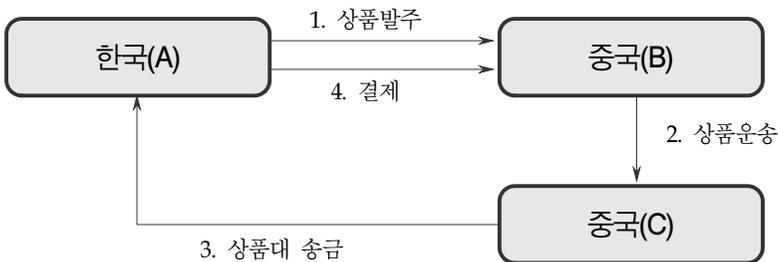
## 수출입

## 1 중국에서 물품거래와 현금흐름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요?

## 질의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IT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법인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 종류는 2가지로서 상품매출과 용역매출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이라서 그렇게 표기하였습니다)

## ➡ 상품매출



## ➡ 용역매출

위 그림에서 C와 A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인원이 중국 법인(고객사)에서 시스템을 깎다든지 하는 용역행위를 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발생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여기서는 상품매출에서 물품의 거래와 일치하지 않은 현금흐름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이 경우 상품매출의 그림과 같은 거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대로라면 C가 B에 돈을 주고 B가 다시 A에 송금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사전에 C에서 A와 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진행하겠지만 이런 거래가 중국현지에서 가능한지 궁금한 것입니다. 거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3번의 외화송금이 가능한지가 키포인트구요. 참고로 저희는 중국현지에 관계회사나 협력회사가 없습니다.

**답변**

주지하시다시피 중국은 대외무역경영권이 있어야 해외수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법인 B 또는 C가 대외무역경영권이 있거나 또는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수출입회사(進出口公司)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B 및 C가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다고 할 경우라도, 염려하신대로 C가 직접 A로 해외 송금할 수는 없습니다. A는 B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매입계약과 C에게 인계하는 수출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해보세구등에 무역회사 (a)를 설립하여 (a)가 A를 대신하게 하면 해외반출, 반입에 따른 물류비 절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보세구, 보세물류원구 내에 있는 진출구공사(무역회사) 및 물류회사의 업무대행 서비스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2 중국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

###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A시에 소재한 완구가공 무역업체로, 현재 A시 투자공장에서 생산한 완구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중국 투자법인이 완구/공예품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문구류를 중국에서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입니다. 저희 중국 투자법인 명의로 상기의 업태를 추가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하나 신규로 설립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우선 귀사는 완구생산회사이지만 문구류 상품(타사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2) 2005년 4월 2일 상무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소매경영범위를 추가하는데 관한 관련 문제의 통지>에 의하면 기존 제조업체가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상기 통지에 의거하여 기존 회사 경영범위에 소매영업 범위를 추가하면 됩니다.
- 3) 외국인투자 비상업기업이 소매 경영범위를 추가할 때에는 각 투자자가 법에 의하여 회사 계약, 정관을 수정하고 관련 신청표서

식을 작성해야 하며, 기업 경영범위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법정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영역 경영범위를 추가할시 구체적인 판매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예: 도매, 소매, 커미션대리) 또한 신청서 제출시 경영상품 리스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상술한 바와 같이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 3 생산형 외자기업의 무역업 영위 범위는?

**질의1** 외국인투자기업 유통업 확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생산액의 30% 범위 내에서 타사제품을 다룰 수 있는데, 한국 본사의 제품(가발 원사 : 투자기업과 동종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업종 : 가발 제조업(중국 A시 소재, 100% 독자 생산기업)
- 한국 본사 가발원사 제조 수출(현재는 중국외 지역에 판매)
- 투자기업 : 가발원사(중국내 판매)
- 상황발생 : 중국에서도 한국산 가발원사를 살 구매처가 등장

**답변1** 외국인투자기업 상업분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생산형 기업이 유통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경영범위를 추가한 후,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제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생산형 기업이 경영범위를 변경한 후에 계속하여 생산형 기업으로 남는다면 유통업무 영업수입이 일반적으로 기업 총 판매액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비생산형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유통업무 영업수입의 비율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2** 상기의 경우 본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2**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사제품의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질의3** 중국내의 다른 회사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3**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질의4** 중국인으로 하여금 자본금 50만 위안의 공무유한공사를 세우게 할 경우 그 회사가 내수 및 수출입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답변4** 무역법인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합자합작으로만 제한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할 경우 등록자본금 5천만위안에 달해야 하지만 중국 내국인일 경우 2006년<회사법>에 근거하면 최저등록자본금 3만위안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4 제조업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의 수출입을 할 수 있는지요?

#####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의류를 일반 무역수출 및 위탁가공무역으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자 중국에서 1. 의류와 관계없는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며, 2. 외국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내수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의류와 관계없는 제품은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취득한 무역권으로 상기 1, 2항이 완전히 자유롭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본사에서 상해쪽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1) 직접 제조하는 의류 이외 다른 품목을 수출할 경우 직접제조 비율의 30% 이내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2) 저희 회사 기업 등기표에 보면 하단에 도장으로 '無進口分銷業務'라고 찍혀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상에 제반 물건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경영범위가 기입되어 있는데 의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하여 중국내수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 3) '無進口分銷業務'의 의미가 수입하여 중국내에 유통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 답변 1

중국은 지난 2004년 4월 20일에 <외상투자 상업영역관리방법>을 공표하였고 2005년 2월 국가 상무부에서 공포한 <상무부 외상투자 비상업기업 유통(分銷) 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제의 통지>에서 귀

사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는 신청서 제출
- 2) 신청기업은 계약서와 정관을 수정하고 최초 기업설립 인가 부서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 3) 신청 시에 도·소매업 방식(도매, 소매, 커미션 대리)을 명확히 해야 하고 경영 제품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 4) 경영범위에 대한 심사권한은 아래와 같음.
  - 도매 : 중앙 상무부(북경)- 소요시간 : 3개월
  - 소매 : 성 상무부 - 소요시간 : 1개월
- 5) 유의할 점 : <상무부 외상투자 비 상업기업 유통(分銷)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체의 통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더라도 타사제품 취급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해측에서 조언받은 답변이 맞습니다.
- 6) ‘無進口分銷業務’ 도장이 있는 것도 귀사에서 아직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분야 진출 영업범위를 추가하지 않고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았으므로 이러한(分銷)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分銷 자격을 취득하려면 필히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분야 진출 영업범위 추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도·소매업 분야 영업범위를 추가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7) 경영범위 추가 제한 업종
  - (1) 도매업 : 화학비료, 제품유, 원유, 소금, 담배가 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소매업 : 화학비료와 담배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고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약품, 자동차, 프랜차이즈 경영, 경매 등 분야는 별도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질의2

저희 같은 기업이 수입하여 중국내수를 할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 본래 제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은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수입과 반대로 수출의 경우에는 본래 경영하는 제조업과 관계없는 품목을 무제한 수출할 수 있는지요? 自産證明이 없는 것은 증치세 환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바뀌지 않았는지요?

### 답변2

<외상투자상업기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타사제품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므로 수입이던지 수출이던지 일단 판매할 경우 모두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경영범위 변경후 여전히 생산성 기업일 경우 도,소매 영업액이 기업총판매액의 30%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비생산성기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해 도,소매 영업액의 비례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세금 환급 관련, 일단 증치세 영수증과 세금 완납증명만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귀금속을 수출방식으로 중국내 창고로 보낸 후 필요시마다 출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저희 회사는 골드바와 은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금은 홍콩에서, 은은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 업체들은 대부분 주얼리 가공업체들이며 많은 수가 중국 칭다오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들은 저희가 해외에서 수입한 금과 은을 구매하여 직접 칭다오의 공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중국 칭다오의 창고업체(B사)에 직접 금과 은을 가져다 놓고 업체들이 국내에서 구매할 때마다 칭다오에서 출고를 할 생각입니다. 모든 자금이나 업무는 한국내에서 이루어지되 금과 은은 호주에서 직접 칭다오로 보내지고, 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중국으로 바로 물건을 보내려면 중국내의 수입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답변

질문을 보건대 중국의 수입업체에 대한 부분이 질문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형태는 문의하신 회사(이하 A사)가 한국으로 금, 은을 수입한 후, 청도 보세구에 있는 가공업체에 금, 은을 공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청도의 가공업체가 금, 은을 수입하면 진료가공무역이 되고, 청도 가공업체의 본사가 A사로부터 한국에서 매입하여 이를 임가공

의 원부자재로서 무상으로 청도로 송부하게 되면 내료 가공무역형태가 됩니다.

2004년 1월 1일자로 금과 그 제품의 가공무역 수출입은 중국인민은행이 심사 비준하지 않고 해관도 중국인민은행의 비준문서에 따라 검사 및 신고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 후 재수출할 수 없는 금과 그 제품이 비준을 받은 후 내수판매를 하는 것은 일반무역의 수입관리에 따라 여전히 중국인민은행이 심사비준하고 해관은 인민은행의 비준문서와 내수판매 관련규정에 따라 해관의 말소등록 수속을 밟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금이나 업무를 모두 한국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은 국내업체간 금은 거래대금을 국내에서 결제하고 현품만 중국 청도로 보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청도의 전만항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여 보세창고도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를 하면 모든 결제나 매출, 매입은 한국 본사 앞으로 잡을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6 대중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반드시 소독 처리해야하는지?

## 질 의

안녕하십니까? 최근 연합뉴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내용에 대한 중국정부 세부지침이나 상세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유관기사) 제목 : 對中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 의무화

내년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화물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중국측의 새로운 검역기준에 따라 소독한 뒤 이를 증명하는 소독표지를 붙여야 한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새 검역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목재포장재란 목재팔레트, 나무상자, 짐갈개, 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 보호하거나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 산물을 말한다.

새 검역기준은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으로 30분 이상 처리하는 열처리기준과 메틸 브로마이드(MB)가스로 소독처리하는 MB기준 중 하나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한 뒤 소독사실을 입증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MB 기준은 모든 국가산 비침엽수인 경우 16시간 이상 훈증을, 소나무재선충발생지역산 침엽수의 경우 24시간 이상 훈증을 각각 요구한다.

중국은 소독마크가 없거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반송 등을 조치하고 비용을 화주에게 부담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자료원 : 연합뉴스)

## 답변

침엽수 목재포장에 대한 검역강화 방침은 이미 하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의 내용 중 열처리증명에 대한 부분은 이전과 다르지 않고, 이에 따른 한국식물검역소에서의 열처리 증명서 발급도 종전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메틸브로마이드(MB) 소독 후의 검역증 발급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재차 확인한 후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정사실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침엽수 목재포장에 대한 검역 및 검역증 발급

가) 식물검역소에서 지정하는 열처리공장에서 열처리(목재 심부 기준 섭씨 56도 이상의 온도로 30분 이상 열처리) 후 열처리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Heat Treatment Certificate) 발급(동 포장재에 열처리 증명마크 부착)

나) 상기와 동일하되, 열처리 대신 24시간 이상 메틸브로마이드 개소소독하고 검역증 발급(동 포장재에 MB 훈증 증명마크 부착)

2) 비침엽수 목재포장에 대한 검역 - 식물검역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16시간 이상 메틸브로마이드 개소 소독하고 검역증 발급 (동 포장재에 MB 훈증 증명마크 부착) -- 이전에는 비침엽수목재포장증명을 수출자의 명판, 직인을 찍어서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를 식물검역소의 증명을 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검역 관리방침이 훨씬 강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비목재포장에 대한 확인 - 이는 이전과 같이 수출자가 자술하여 확인하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한국식물검역소의 업무지침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식물검역소 홈페이지를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 7 원단 제작과 의류가공을 중국에서 하는 경우 보세구역을 거쳐야 하는지?

### 질의

저희는 상해 인근의 원단공장에서 원단을 제작해서 복건성에 있는 가공공장에게 의류의 가공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가공공장의 완성품 수입뿐만 아니라 원단공장에서 가공공장으로 가는 원단도 당사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는 신용장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가 원단공장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담당자가 자신의 회사는 저희가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을 지불해도 제품이 보세구역을 거쳤다가 현지의 공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중국 현지의 방식은 어떤지? 추가적인 비용도 드는지에 대해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중국 현지에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세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 귀사에서 원단공장의 원단을 구입하여, 복건성 의류공장에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귀사에서는 원단공장에 L/C를 끊어주고, 복건성 의류공장에는 임가공 비용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의류공장에서 가공비용 수금(가공비를 받고 납품한다느니 등) 문제 때문에 납기를 늦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 2 : 귀사에서 원단공장과, 의류공장에 L/C를 각각 한 장씩 끊어주고 의류공장에서 원단공장의 원단을 구매하는 것으로 교역계약을 작성하고, 완성품은 복건성 의류공장에서 수입하면 됩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L/C 개설비용과 보증금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고문관세사) :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해의 원단공장에서 말하는 보세구는 상해외고교보세물류원구(혹은 샤먼보세물류원구)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단공장에서 생산한 원단을 상기 보세물류원구에 반입시키면 수출에 대한 제반 증빙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과 유사하게 L/C Nego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복건성에 있는 가공공장은(원구를 경유한 원단을) 면세로 수입하여 가공하게 되므로 금융비용의 절감이나 합법적인 세관의(가공무역수책)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진료가공무역으로 진행되는 방법으로서 귀사가 지정하는 원단 생산업체의 제품을 복건성 소재 가공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한 후에 이 전체금액(원단가격 + 가공비)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일반무역으로 본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8 중국에 제품을 보내 포장한 후 제 3국 수출시 문제가 없는지요?

### 질의

폐사는 한국에서 소규모 안경부품 공장을 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안경 관련 업종은 수작업이 많은 관계로 한국의 인건비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히 부품은 포장에 문제점이 많아 폐사의 물품중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포장작업을 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물론 폐사제품을 제외한 포장에 관련된 물품과 그리고 일부 부품은 현지 공장에 하청을 주어 이 또한 현지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폐사의 직원 한명을 파견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단순 포장 작업한 제품과 현지 하청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중국기업을 통해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현지 공장을 통해 포장을 한다면 굳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업체를 통해 단순히 포장만 하시려면 이것은 OEM 생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중국기업에서 귀사의 제품을 수입해서 포장을 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일단 지불하셔야 하고, 수출할 경우 중국의 수출제품 환급에 관한 세제에 따라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환급은 100% 환급받지 못하고 일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경제품의 경우(HS CODE : 9003190010/9003190090)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은 17%이고, 환급세율은 13%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포장회사는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변재서 고문관세사 추가답변)

보다 개선된 방안으로서 보세물류원구에 반입하면 포장, 마킹, 라벨링 등 단순가공업무가 가능하고 또 관세,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치세 중 4%를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9 홍삼제품 중국 수출시 현지 절차는?

### 질의

저희 회사는 서울에 있는 홍삼제품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 통관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중국현지에서 판매할 경우 저희가 중국정부에 보건식품증서 혹은 약검허가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귀사에서 문의하신 홍삼제품(완성품)은 일반식품이 아니라 약품(보건제품)에 속합니다. 홍삼완성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전에 북경의 중국상품검역국(中國商品檢驗局)에 중문라벨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허가기간은 52일(근무일기준)정도 소요됩니다.

#### ➡ 중문라벨 신청시 필요서류 :

- 1) 원산지 증명
- 2) 포장공장 위생증명
- 3) 현지 대리기업 영업집조
- 4) 한글을 중문으로 번역한 서류
- 5) 기타 필요서류

#### ➡ 통관 필요서류 :

- 1) 중문라벨
- 2) 현지 상품검역국(商品檢驗局)에서 발급한 통관서류

- 3) Packing List
- 4) B/L
- 5) 영수증
- 6) Wooden Box(Cotton Box) 자재가 목재일 경우 반드시 IPPC  
마크 표시
- 7)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참고로 중국 역시 식품 혹은 약품은 수입절차가 타 제품에 비해 많이 까다롭고, 절차도 번거롭습니다.

## 10 모든 수출입거래에 CCC인증이 필요한가요?

**질의** 관련 자료를 찾던 중 CCC 인증제도를 보았습니다. 모든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필요한 인증서인가요?

**답변** CCC 인증은 제품마다 다 필요한 증서는 아니고 국가인증인 허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에서 규정한 지정된 제품(19종류의 132가지 제품 - 주로 전기제품)만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전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동일 품종, 동일 포장의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후 수입시마다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물품대금 해외송금시 유로화(Euro)가 가능한지요?**질의**

한국에 물품대금 결제 통화로 달러를 사용했었는데 환율변동이 염려스러워 Euro화로 한국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달러를 Euro로 환전해서 송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달러를 Euro화로 환전해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외환계좌에서 달러를 Euro로 환전할 수 있고, 송금도 가능합니다. 기타 필요서류와 구체적인 사항은 계좌 개설은행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2 비데 관련 수입세는?

### 질의

한국에서 비데를 수출할 경우 관세, 증치세는 얼마나 됩니까? 통관할 경우 반드시 보증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지불해야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비데의 경우 HS CODE가 3922.9000이며, 관세는 10%, 증치세 17%, 종합세율 28.7%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통관이라면 보증금은 필요가 없고 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관 보증금은 원료를 수입해서 중국에서 가공한 후 재수출되는 경우와 기타 방법의 재수출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해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제품을 사전에 통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제품의 관세와 증치세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은 보편적으로 지불해야 할 관세의 정상금액보다 높습니다.

### 13 임대설비 수출시 중국 통관절차는?

#### 질의

당사는 유무선 통신용 계측장비 임대 사업을 준비 중이며, 현재는 대표처 형태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별인 설립 전에 영업을 통해 우리 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중국 업체 또는 한국계 업체와 저희 한국 본사간의 임대계약이 진행되어 영업을 하고자 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 1) 이 경우 한국 본사에서 중국업체에게 바로 임대가 가능한지?
- 2) 그럴 경우 관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 3) 임대 기간이나 기타 요건에 제한은 없는지? 임대 수입 형식이라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4) 위와 같이 진행할 때 기타 문제되는 사안은 없는지?

#### 답변

한국 본사에서 중국업체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하는 기계설비가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해외로부터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 중고기계(사용기간이 5년 이상) 설비일 경우 거의 수입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품의 관세는 임대금액을 기준으로 제품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지불합니다. 제품 임대금액을 월 결제할 경우 매달 관세를 지불하시면 되고, 분기, 년도별로 결제할 경우 분기, 년도별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시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한국으로 반출하실 때 보증금을 되돌려 줍니다.

## 14 중고설비 수입 절차는?

### 질의

중고설비를 중국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중고설비수입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계설비 제품 수입신청서 작성(2부), 단 제 12항 규격/사이즈에 반드시 설비 생산년도를 밝혀야 함
2. 신청서(2부)
  - \*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 1) 기업기본현황, 생산현황, 수출현황, 본사소개
    - 2) 기업의 기존 설비명칭, 금액 및 수입시 설비 실태(신설비 혹은 중고설비)
    - 3) 설비 수입신청 현황 : 용도, 설비제조일, 사용기간, 품질현황, 설비보수 기록 및 향후 보수보증조치, 설비 사용현황(사용여부), 설비제조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특수 설명을 추가해야 함
3. 기업 영업집조, 관련 기관 프로젝트 타당성 허가서 및 비준증서 사본 각각 2부, 가능성연구보고서 사본 1부
4. 외자관리부문에서 허가한 “외상투자기업 수입설비 인허신청서” 및 “중고 기계제품 설명서” 각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설비검사 설명, 반드시 관련 검사 기구에서 출시한 <국가검사검역기구> 혹은 설비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국외관련 중개검사기구의 검사설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설비 제조일, 사용기간, 설비 현재 현황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검사 신청서(備案書)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함.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중고 선박일 경우 반드시 중국선급(中國船級社)에서 발급한 <중고선박 수입기술 평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아래의 사항하에서는 관련 필요서류(우측)를 제출해야 함
  - 1) 공정용 설비 : 공정 시공계약, 계약의 공정량 등을 제공
  - 2) 인쇄산업류 설비 : 인쇄특종산업허가증 사본 제공
  - 3) 技術監督局(기술감독관리국), 無線電管理委員會(무선전 관리위원회), 公安局(공안국) 등에서 출시한 관련증명서류를 같이 첨부
7. 제품사진(디지털 카메라 촬영 불허), 설비 출고 합격증과 영수증
8. 기타 필요서류
9. 상품검역부문의 사전 신고서(預備案) 증서

(상하이시의 경우)

- 제출처 : 上海市機電產品進出口辦公室
- 연락처 上海市機電產品進出口辦公室
  - 담당자 : 處長 臧新興
  - 주 소 : 上海市江西中路181号101室(우편번호: 200002)
  - 전 화 : 86-21-6339-0381, 6339-0380
  - 이메일 : j3100@chinabidding.com

## 15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증치세 부과 방식은?

### 질의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의 관세 및 부가세(증치세) 문의입니다.

- 1) 품목 : X-RAY BAGGAGE INSPECTION SYSTEM(MACHINE)
- 2) HS CODE : 9022 19 9000
- 3) 수출시 INVOICE VALUE : C.I.F INCHEON AIRPORT ,  
KOREA EUR 100,000.00
- 4) 수량 및 단가 : 1대 / EUR 100,000.00- (C.I.F. INCHEON  
AIRPORT)

본 장비를 한국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세관(해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관세는  $CIF \times 8\%$ 이고 부가세는  $(CIF + \text{관세}) \times 10\%$ 인데 중국에서는 어떤 공식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장비는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방사선 발생 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를 "한국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에서 득한 후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본 IL이 없으면 몇 달이고 통관이 안 됩니다.

중국에도 혹시 HS CODE 9022 19 9000의 장비를 수입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입자가 IL 혹은 "X-RAY 발생장치 사용신고"를 과학기술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득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규제가 있다면 IL 이나 인허가를 중국의 어느 정부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들여서 수출해 놓았는데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통관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우리나라에서도 무턱대고 수입해 놓고서 통관하지 못해서 반송하는 사례를 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제품의 관세는 4%, 증치세는 17%이고, 종합세율은 21.68%입니다.

그리고 관세와 부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계산방법은 한국과 같습니다. 즉

관 세 :  $CIF \times 4\%$

부가세 :  $(CIF + \text{관세}(CIF \times 4\%)) \times 17\%$ 입니다.

이 제품은 다음 3가지 사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1)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入境貨物通關單)
- 2) Automatic import licence(machinery and electrical products, whether used or not) (自動進口許可証<新旧机电產品>)
- 3) Used machinery and electrical products are on the list of prohibited import goods(旧机电產品禁止進口)

1)번 통관서류는 상품검사검역기구(商品檢驗檢疫局)에서 발급하고, 2)번 허가증은 외경무위 산하의 기계제품관리사무실에서 발급합니다. 상품 원산지가 독일이라고 하셨는데 원산지인 독일도 최혜국에 속하므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의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 16 지사도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저희는 유공압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알 수 없을까요?

저희 현지 고객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저희 회사에 지사 설립과 동시에 해당사의 제품을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수출의 형태와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무역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만이 수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인인 저희가 지사설립 후 라이선스 획득이 가능한지요? 상황이 호전되면 저희 역시 동시에 합작 형태로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지사 설립의 개념은 중국 현지에 사무소(대표처)를 설립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므로 제품의 수입, 수출 등 영업을 할 수 없고, 단지, 향후 업무추진을 위한 시장조사 등 비영리성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경영권이 없는 기업이 수출입을 할 경우 반드시 수출입경영권을 보유한 수출입대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귀사의 경우 수출입대행사를 통해서 제품을 수출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7 보세구내 무역법인의 중국기업들과의 수출입업무는?

**질의** 상해 외고교보세구에 무역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중국 내자(內資) 법인들과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1) 수출의 경우

- 화물이 보세구를 경유하여 수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출 프로세스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무역법인 명의로 L/C를 개설하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USD 송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 중국 내자법인과 RMB 거래를 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 2) 수입의 경우

- 화물이 보세구를 경유하여 수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입 프로세스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무역법인이 외국 수출자에게 직접 USD 외환 송금이 가능한지?
- 무역법인이 직접 수입자 명의로 수입하여 내자법인에게 내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3) 보세구 무역법인과 일반지역 무역법인의 차이점

## 답변

- 1) 보세구에 설립된 무역법인이 중국 내수를 할 경우 보세구내의 교역시장을 거쳐서 판매를 해야 하고, 내수제품에 대하여 관세

를 보충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수입자의 USD 송금은 가능하지만 자금을 사용할 때에는 RMB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내자법인하고는 반드시 RMB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 2)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보세구 교역시장을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 외환관리국을 통하여 달러로 교환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내자법인에 대한 내수판매도 반드시 보세구 교역시장을 거쳐야만 합니다.
- 3) 보세구 밖의 법인은 외국에서 중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지불하고, 보세구내의 법인은 외국에서 수입시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제품을 내수할 경우 내수제품에 대하여 세금을 보충하여 지불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재서 고문관세사 보충답변)

보세구의 무역법인에 비해서 보세물류원구(외고교에 설치된 법인은 원구내에 위치)에 설치된 무역회사는 외화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 전체 무역법인에 대하여 내수판매와 무역경영을 전면 허용하는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1. 보세물류원구 기본기능

보세물류원구의 4대 기능 즉, 국제중계, 물류배송, 국제조달, 국제통과무역 등의 기능을 기초로 한국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원구내 진입한 화물에 대하여 증치세를 환급

둘째, LCL Cargo를 FCL로 물류 배송 가능, CFS 작업이 가능

셋째, 중국산 물품을 중계무역 통해 다시 중국으로 재수입 가능  
 넷째, 다수 화물을 해체, 재포장, 단순가공 가능  
 다섯째, 수출입 집중운송 가능 등

2. 가공무역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이점

첫째, 수출환급을 실현하고 수책을 해소(면세 사후관리 종료)  
 둘째, 가공무역화물 내수 시의 외환 지급, 영수 문제를 해결  
 셋째,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절차가 간편해져 환급 손실(수출세 4%)을 면함  
 넷째, 역진세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  
 다섯째, 국산설비를 수입설비로 전환하여 증치세 17% 만큼 절세  
 여섯째, 가공무역방식의 전환(내료가공에서 진료, 혹은 그 역도 성립 가능)  
 일곱째, 가공무역 잔류자재에 대한 처리 등

## 9

## 중국내 거래·내수

## 1 최소한의 설비만 갖추고 위탁가공한 제품의 내수판매 영업집조가 가능한지?

**질의 1** 우리 회사는 원목을 수입, 가공하여 내수 및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중국 투자공장 내에는 최소한의 설비만 두고, 주요 생산공정은 중국업체에 대부분 넘기려고 합니다.

즉, 중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투자공장으로 가져와서는 간단한 처리만 하고 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투자공장은 거의 창고로서 기능하게 되고, 가공 및 생산기능은 대폭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내수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산설비 및 증명만 갖추고자 하는데, 중국 당국의 허가 및 사후관리가 어떻게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할 경우 공상국에서 정상적으로 내수판매 허가를 득하는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1

(고문변호사) 회사가 실제 운영목적으로 출발하여 중국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된다면 최소투자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최소 투자금

액은 3만위안입니다. 단 회사 운영 플랜, 정부차원의 타당성 검토 등의 원인으로 현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금을 최소 10만불 내외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관세사) 최초의 영업집조(영업허가증)가 수출과 내수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재 가공업은 장려지도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외환수지에 대한 평형의무가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 전량 내수판매를 한다고 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걱정되는 부분은 수출가공 및 내수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는데 영업집조 발급에 문제 제기가 있을지?

### 답변2

(고문변호사) 영업집조는 내수, 수출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사 설립 신청서류에 내수, 수출 판매율만 명확히 기재하면 내수가 가능합니다.

(고문관세사) 최초의 설비투자를 수입할 때 관세와 증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최초 설립후 5년의 기간 이내에 주생산 설비를 매각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관세, 증치세에 대한 면제를 받았고,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에 이들 생산설비를 매각이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치 잔여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의3** 1년 후 공장국에서 설비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지... 사례나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3**

(고문변호사) 설비검사는 공장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 혹은  
상품검사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회사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립  
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문관세사) 제조설비를 최소한만 갖추고 있더라도 제조임에는 문  
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내수판매는 귀사가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으  
로 제한됩니다. 만약 제조를 하지 않고(귀사가 제조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유통을 위한 경영범위 추가 또는 변경 비  
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고문관세사 변재서

## 2 중국내 Local L/C가 가능한가요?

### 질의

저희는 중국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중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래시 어음이나 현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내 거래시에도 한국처럼 Local L/C로 거래할 수 있는지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자세한 사항은 어디를 통해 문의하여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중국에서도 로컬 LC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중국 거래 관습상 LC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C 개설 사항은 거래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문관세사)

중국은 아직 신용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와 같이 Local L/C나 구매승인서와 같은 시스템은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중국은행에서 중국업체에 대해 일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출구공사가 L/C를 담보로(원자재 구매 대금 등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는 사례는 수출대금 용자 기능을 은행 대신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3 중국에서 로컬수출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공장신설을 검토 중인 회사입니다. 세금과 회계적으로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중국공장의 매출은 LOCAL수출과 내수판매 혼합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LOCAL수출과 내수판매를 병행할 경우 LOCAL수출에 불이익을 부과하여 매입증치세 환급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면세 구입 원자재의 매입증치세 환급과 관련, 총매출액 중 LOCAL수출매출액의 비율만큼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비용이 추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을 사용할 경우 LOCAL수출에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아(직수출로 인정됨.) LOCAL 수출용 원재료 매입시 면세되며 내수용 원자재의 매입증치세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요? 정확하다면 관련법규를 혹시 알 수 있는지요?
2.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 2-1) 내수품과 수출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건가요?(원료, 제품 참고)
    - 가.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 칸막이 또는 선으로 구역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나. 분리 시 벽 또는 별도의 창고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2) 생산공장의 생산 설비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분리해야 하는지요? 분리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야 하는지요?  
 ⇒ 역시 상기내용이 법적으로 정확한지의 여부와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3. 1번의 경우 내수품 생산에 대한 증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산정공식)를 알 수 있을지요?

**답변**

Local 수출의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일관되게 내수로 보아 매출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각 성 및 자치구도 이러한 해석에 반하여 면세 또는 환급대상으로 뒤집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각 성 및 자치구에서 실무 절차상의 방식으로 조금씩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Local 수출(엄밀히는 심가공결전 또는 전창 : 보세가공 이전)의 요건을 갖추어 매출자와 매입자 양 당사자가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매출자에게 증치세를 징수하여 매입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증치세 징수와 환급을 간소하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Local 수출을 구분 기장한다고 하여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기장의 여부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수출을 전제로 하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 증치세가 면세로 수입되는데 내수영업도 할 경우 이를 구분 관리하여야 하므로 구분기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경영관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을 구분 기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구분기장과 병행해서 실물자재 자체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더 중요합니다.

#### (고문관세사)

로칼 수출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심가공결전 내지 전창방식(전량 수출을 전제로 함)으로 가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1차 가공기업은 로칼 수출시 보세물류원구에 가공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직접 수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사후관리가 종료되고 증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당해 물품을 원자재로서 공급받는 기업은 해외원자재를 면세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수출 시까지) 수책관리를 하면서 증치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관세사 변재서

#### 4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 내수 판매하는 경우는?

##### 질의

저희 회사는 설립된 지 약 1년 정도 되는 투자법인으로 진출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현지법규중 낯선 부분들이 많아 답답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에서 내수 판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참고로 저희 회사는 100% 내수영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답변

귀사가 100% 내수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셨지요? 이는 외국인 상업기업으로서의 허가여야 하며, 허가의 의미는 청도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또는 수입한 상품을 전량 내수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입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사가 일반무역으로 수입을 한 다음 이를 내수로 판매하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 1) 수입 시에는 각 HS Code 에 해당되는 수입요건(예, 화학물질 관련 인증 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수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HS Code에 관련되는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업기업이므로 생산성기업이 누릴 수 있는 조세 감면 혜택은 경제특구가 아닌 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관세감면에 해당되는 물품(장려산업관련, 전량수출기업의 설비자재) 등의 수입에 있어서 면세증명을 미리 받지 않고 해당화물을 수입했다가, 면세통관이 안되는(혹은 오래 지연되는) 곤란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외경위에서 면세증명을 받은 후 감면세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증명을 받은 물품 조차도 해관에서 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면세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내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당연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관세사 변재서

## 5 진료가공 시 중국내 내수가 가능한지?

### 질의

청양에서 액세서리 관련 임가공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100% 수출을 해야하는 방식이 진료가공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수책을 잡아 한국에서 들여온 재료는 100% 한국에 재수출하여 핵소 절차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진료가공방식을 별도로 진행하고, 내수를 하기 위하여 중국내에서 원재료를 따로 구입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2) 만약 가능하다면 원재료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료판매상에 요구를 하고, 원재료를 가공한 후 중국 내 완제품 업체에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3) 또 그 업체가 저희가 중국에서 재료를 구입해 가공한 제품을 완성하여 해외에 수출한다면 심가공결전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세부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진료가공방식과 내수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 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경우 감면 취소 내지는 환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2) 일반납세자인 경우 내수부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인 경우에는 일반발표(영수증)를 발행하게 됩니다.
- 3) 직접수출한 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내수판매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상대방 수출업체가 우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출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고문관세서)

심가공결전 방식(전량 수출을 전제로 함)으로 가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귀사는 로칼 수출시 보세물류원구에 가공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직접 수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사후관리가 종료되고 증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당해 물품을 원자재로서 공급받는 기업(귀사의 납품처)은 해외원자재를 면세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수출 시까지) 수책관리를 하면서 증치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완성품의 수출과 아울러 수책관리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관세서 변재서

## 6 수입한 원자재를 현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 질의

영업집조상의 경영범위가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현지의 다른 업체에 판매할 경우 유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답변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가공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경우는 무역이 되기 때문에 제조법인의 경영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됩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법률을 제대로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만 마음도 편하고, 혹시 나중에 중국정부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005년 4월 22일에 외국인투자 비상업기업(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진출 규정(2005.4.22)]

#### ➡ 타사제품의 판매는 30%이하로 제한

- 통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더라도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외자 생산형기업의 총매출액에서 타사제품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 박탈 등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단, 매출액 비중 제한은 기존제조업체가 제조분야에서 손을 떼고 유통법인으로 완전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 도소매업 분야 진출에 관련 수속 및 절차

- 관련 절차와 수속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신청기업은 계약서와 정관을 수정하고 최초 기업설립 인가를 받았던 부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합자기업의 경우 합자쌍방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에 합의해야 하며 독자기업의 경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에 합의하면 된다.
- 신청서와 판매상품 리스트도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 생산형기업과 지주회사(투자성 공사)는 각각의 신청표에 경영범위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도매, 소매, 수수료 대리)을 명기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판매상품 리스트도 제출해야 한다.
- 도매인 경우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무부에서 심사하며 인가는 중앙상무부에서 하게 된다. 소매는 모두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심사와 인가를 하게 된다.

### ➡ 새로운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발급

- 이번 통지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실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경영범위 추가가 상무부에서 인가되면 새로운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가 발행되며 새로운 증서가 나오면 기존의 비준증서와 교환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난 후,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새로운 영업집조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경영범위 추가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밝혔다.
- 도매업에서는 화학비료, 제철유, 원유, 소금, 담배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고, 소매업에서는 화학비료와 담배가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약품, 자동차, 프랜차이즈 경영, 경매 등 분야는 별도규정에 따라야 한다.

## 7 본사제품의 중국 현지법인 명의로의 판매는?

### 질의

저희 회사는 강소성 무석에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설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품(본사의 제품)을 중국 현지법인 명의로 판매할 수 있는지요? 중국 현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 본사는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대리상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 본사의 권리와 책임을 중국법인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 답변

2005년 4월 22일에 발표한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중국 현지법인(제조업일 경우)은 경영범위에 유통업을 추가한 후 타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판매액은 총판매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 일반납세인은 설립 첫해부터 발행이 가능하고, 소규모납세인은 1년 후 연간 매출액이 RMB180만 이상이면 세무국에 일반납세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자본금이 RMB 500만 이상 혹은 연간 매출액이 RMB 180만 이상이면 증치세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8 보세구내 교역시장이 무엇인지요?

## 질의

상하이 외고교보세구내 무역법인의 수출입 거래절차 관련 교역시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교역시장이 보세구내에 있는 상품전시판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역법인의 사무실 등을 말하는 것인지요? 보세구내 교역시장을 거쳐 거래를 하는 경우 매 건당 거래수수료가 징구될 것 같은데, 수수료 규정이나 기타 거래상 절차를 알 수 있는 교역시장관리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교역시장이란 上海外高橋保稅區聯合發展有限公司에서 보세구내에 설립한 것으로 보세구내의 기업들의 내수업무, 영수증 업무를 지원해주고, 보세구내 입주한 외자기업들이 무역자문, 서비스, 상해정부와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교역시장 연락처 : 86-21-5869-9888 (\*22293)

담당자 : 田小姐(Ms. Tian) 시장유치팀(市場招商部)

홈페이지 : [www.no1market.com.cn](http://www.no1market.com.cn)

교역시장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거래상 절차, 수수료를 공개함.

## 9 중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있는지요?

### 질의

중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중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서 내수판매를 하거나 중국외의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려면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OEM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서 내수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단, 중국에서 내수할 경우는 내수하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보충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리상을 찾아 판매할 수 있고, 무역회사 혹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로 수출할 경우는 중국 OEM 생산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에 OEM 생산된 제품은 어느 국가 어느 회사로 수출한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제품생산 후 중국에서 직접 국외로 수출을 하면 됩니다. 또 ORDER 별로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10 투자기업의 타사제품 취급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에서 가발원사를 만들어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100% 독자기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 법인이 수입해서 내수시장에 내다 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1

외국인투자기업 유통업확대 관련 법규에 따르면 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타사제품을 다룰 수 있는데, 본사의 제품(가발원사: 투자기업과 동종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1

외국인투자기업 상업분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생산형 제조기업이 유통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경영범위에 동 업무를 추가시킨 후,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제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생산형 제조기업이 경영범위 변경후, 계속하여 생산형 제조기업으로 남는다면, 유통업무 영업수입이 일반적으로 기업 총 판매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비생산형 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유통업무 영업수입의 매출액 비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2** 상기의 경우 본사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2**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사제품의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질의3** 중국내의 다른 회사 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3**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질의4** 중국인으로 하여금 자본금 50만 위안의 공무유한공사를 세우게 할 경우 그 회사가 내수 및 수출입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요? 또 이 회사가 일반 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답변4** <대외무역법>이 시행된 후, 등기 설립한 회사는 상무국에서 대외무역경영자 등기절차를 밟고 공상국에서 경영범위 변경등기를 마친 후,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시 경영범위에 국내 판매업무가 포함된다면 국내판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납세자 인정과 관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에 <신규 설립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2004년 7월 1일 공표)와 <신규 설립 상업무역 증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2004년 12월 1일 공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상기 2개 통지에 따르면 일반납세자의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세무등기일로부터 1년내 실제 판매액이 180만원에 이르는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고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으며 상응한 관리인력, 화물 구입판매 계약서 또는 서면으로 된 의향서가 있고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 경로가 있는 경우, 판매액이 180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찰기간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 다)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화물 실물을 갖추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은 세무등기시, 일반납세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 기업에 대해 관찰기간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 10

## 설비통관 · 임대

## 1 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중국으로 이관 시 통관문제는?

##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국 청도로 진출한 협력업체로 외주생산을 의뢰하여 제품 생산중입니다. 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 추가 금형을 청도로 이관 예정인데, 중국내 수입시 중국정부에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비 및 금형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금형이관을 진행 중인데, 훗날, 이관된 외주금형을 회수하여 한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때, 중국정부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설비의 유출을 막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주금형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세로 중국 내로 이관된 설비는 5년간 중국세관 소유로 판매, 임대, 저장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5년간 회수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문의사항 관련,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로 들어온 설비는 5년 동안 세관의 감시를 받습니다. 저장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며, 관리기

간 중에 이를 판매, 양도하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만료후 회수는 가능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수입설비 면세조치는 다음일 경우 가능합니다.

- ◇ 1996년 4월 이전에 승인을 받은 기술개조 항목, SOC 항목, 외국인투자 항목의 경우 잔여 투자액 이내에서 자체이용 설비를 수입할 경우 면세불가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 ◇ 2002.10.1일 이후 비준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항목 중 "100% 수출형 허가업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증치세를 먼저 징수한 후 제품의 출하일자부터 해당제품이 모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시 매년 납세액의 20%씩 반환하여 5년내 전부 환급함.

일부만 수출한 경우 해당연도 납세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는 외에 법적처벌도 추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내료가공무역에서 해외(한국) 위탁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비는 "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이므로 해관의 면세수속을 밟은 뒤에는 관세, 증치세가 없이 면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내료가공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위탁기업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2 임가공 계약시, 무상제공 설비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

현재 저희 회사는 중국 ○○성 ○○시에 위치한 경제개발구 내에 법인 설립 관련 등록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부품,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중국법인에서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문의하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핸드폰 부품인 RF SWITCH 조립라인을 중국 □□성 □□시에 있는 한국업체에 임가공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고 완제품은 중국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중인데 조립라인 설비처리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대할 수 있는지요?

둘째, 무상임대 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조립라인 회수가 가능한지요? 임가공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설비고장이나 사업 철수시), 제가 알아본 결과 물류회사(통관업체)에서는 한번 들어간 설비는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올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무상 임대설비들을 저희 중국법인 양산시점에서 □□성 □□사에서 ○○성 ○○시로 이전 가능하며, 이전시 등록 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넷째, 저희 중국법인으로 이전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우선 임가공 즉 내료가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료가공은 원부자재 및 설비 등을 무상으로 반입하고, 완성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형태입니다. 이러한 내료가공무역에서 해외(한국) 위탁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비는 “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이므로 해관의 면세수속을 밟은 뒤에는 관세, 증치세가 없이 면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내료가공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위탁기업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가공을 한 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은 "내료제품 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역방식의 고유번호가 0345입니다. 따라서 내료가공 조립무역인 0214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내료가공물품을 바로 내수로 판매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말씀 드리자면, 내료가공무역에서는 해외 가공무역계약자가 제공하는 설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무비(또는 차액)조로 상환하는 수입설비와 무료제공 설비를 포함합니다. 담당자가 말하는 무상임대는 무료제공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조립 및 보상무역 수출입화물 등기수첩" 중 필수 숙지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설비는 수입일부터 완전 상환일까지 세관의 관리감독 하의 화물(보세화물)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수책의 결산(등기말소)신청서에는 수입설비, 수출제품 혹은 가공비 상환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유상제공(가공비 차감 방식의 보상무역방식) 또는 무상임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전에 임가공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설비처리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기간은 통상 5년(혹은 무상 임대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은 설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세관의 허가를 얻은 후(이 경우에 관세, 증치세를 납부를 해야 할 지의 여부는 장려품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잔존가치 만큼 등록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 3 중국내 설비 무상임대 방법은?

**질의 1** 중국의 기존 공급업체에 있는 설비를 매입하여 중국내 신규 업체에 무상임대코자 하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여 절차 및 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정>

- \* 대상설비 : M
- \* 문의사 한국공장 : A
- \* 기존 공급업체 한국공장 : B
- \* 기존 공급업체 중국공장 : BB
- \* 신규 공급업체 한국공장 : C
- \* 신규 공급업체 중국공장 : CC

- ① 목적 : A가 BB의 설비를 매입하여 CC에 무상임대하고자 함. => 설비대금은 A가 B에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BB에게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A와 CC는 직접적으로 아무 거래도 없는 회사인데, 무상 임대 가능한지요?
- ② 현상 : A와 BB, A와 CC 간에 직접적인 거래는 없음. A는 B 혹은 C를 통해 부품을 구매할 뿐임. B의 제품은 BB에서 생산된 것이고, C의 제품은 CC에서 생산된 것임.
- ③ 설비상황 : B에서 BB와의 가공무역을 위해 BB에 면세수출한 설비임. 사용기간은 약 1년 경과한 상태임.

- ④ 문의사항 : 설비 구매 및 무상 임대 절차 / 관련 세제 이 설비를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무상임대 해줘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1**

중국현지법인(BB)에 있는 기계 M을 A사가 매입하고 실제 해당기계를 한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기계 M은 면세로 도입한 기계이므로 중국내 현지에 있는 제 3의 현지법인(CC)에 무상임대할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면세 수입기계를 양도시에 양수자는 양도자와 동일한 지위 즉 면세요건을 갖추어야 남은 4년간 계속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수입기계를 5년간은 면세지위를 갖춘 업체가 면세요건에 따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이더라도 같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의 현지법인이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이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초 수입 시 면세받은 세액은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M기계를 최종 사용하는 현지법인은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사가 전혀 무관한 업체에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A사가 중국 현지법인(BB)에 M기계 대금을 중국으로 지불해야 할 경우 회계처리는 가능하지만 송금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요건을 갖춘 현지법인(CC)이 직접 BB로부터 M기계를 매입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 면에서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질의2**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A사가 구입하는 부품이 중국산이기는 하지만 직접 BB 혹은 CC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B 혹은 C사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BB, CC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A사는 B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C사의 부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BB에 있던 설비 1대를 CC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B로부터는 돈을 주고 사지만, CC에 줄 때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자 합니다.

즉 설비 실물 흐름은 중국내 BB공장에서 바로 CC공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은 중국내에서 이동하지만 설비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송금을 BB의 한국본사 B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BB에게 직접 줘야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건은 제3의 중국 공장으로 바로 보내는데 설비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2**

한국 B와 B의 현지법인 BB 사이에 M기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B가 M기계를 현물출자한 것이거나 현지법인 BB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M기계의 소유권자가 현지법인 BB라면 거래당사자는 BB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B를 거래당사자로 할 때에는 B가 BB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는 단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B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것이 해외 송금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질의3**

저희가 새로 거래할 CC라는 회사에는 이 설비를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A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CC에서 직접 BB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송금방식과 회계처리 상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그리고 한국의 A사에서 CC라는 회사에 무상임대 해주기 위한 절차 및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3**

BB를 거래당사자로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송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송금방식과 절차는 거래은행의 외환관리 전문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해외자산취득에 따른 신고절차를 취하고 이에 따라 BB로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상임대의 경우는 해당자산의 임대사유와 조건, 기계의 관리책임, 임대 후 반환 여부와 소유권 등이 명시된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법적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 등의 특수 관계인일 경우 정당한 임대가격 이하이면 부당행위부인의 세법규정을 적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면세설비 이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질의

당사는 설비가 면세로 투자된 회사입니다.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면세로 투자된 설비를 다른 한국투자기업한테 이관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에 따르는 필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설비는 면세감각상각 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으나 전부 3년 반 이상된 설비들입니다. 타 외자투자업체로 이관시 문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면세 설비이관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설비를 이전하려는 한국투자기업이 면세기계수입쿼터(면세 증명)가 있으면 세관에 면세이전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세관 감독기관이 5년이므로 나머지 1년 반에 해당하는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한 후 기계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은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 5 가공무역 무상설비 제공 절차는?

**질의**

가공무역 무상제공 설비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가공무역경영기업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기준을 받은 계약서와 가공무역 무상제공 설비를 신청한 등록명세서를 가지고 관할 해관에 가서 면세수속과 수책을 발급받습니다. 설비가 수입된 다음에는 외경무위(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기준이나 면세증명을 받기 어렵고 수입신고기한(15일)도 정해져 있으니, 나중에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번재서

## 6 투자총액 한도내 자용설비 면세 여부는?

##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설비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1998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류와 제한을류 및 기술이전형 외국인투자항목(프로젝트)는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설비는 <외상투자항목 중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목록> 상 열거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및 수입관련 증치세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항목(프로젝트)은 계약에 따라 설비수입에 따른 기술, 부속품, 부품 또한 관세, 증치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면세증명이나 면세 항목 해당여부에 대하여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번재서

## 7 수입설비 면세수속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질의

외국인투자 장려항목의 수입설비는 어떻게 면세수속을 밟으면 됩니까?

### 답변

외국인투자 장려항목은 화물의 수입 전까지 관할 해관에 설비의 등록 및 면세 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합니다. 가행성연구보고서(타당성검토보고서), 심사비준기구가 발급하는 <국가발전장려내외자항목확인서>, 외경무위가 심사 비준한 기업설립 문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수입설비계약서, 인보이스, 이하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수입설비 면세통관의 관건이 됩니다. 액수가 크면 리스크도 크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KOTRA청다옴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 11

## 토지 · 건축 · 임대

## 1 중국에서 개발중지 상태인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

##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중국 A시에 합자투자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발구내 토지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A시 개발구내 토지를 출양 받아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자본금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한 상태입니다.

토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개발도 진행했고 기준에 맞는 자금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개발 도중 사업부실로 인하여 더 이상의 개발을 못하고 중단된 점입니다. 현재는 전체 공정중 30%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06년 0월 0일부로 개발하지 않을 시에는 무상회수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측 합자파트너의 의견은 법조항은 있지만 아직 조항대로 실행된 적이 없으며, 만약 문제 발생시 자기네의 판씨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측 파트너는 A시 토착기업으로 시정부에서 많은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간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답변1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본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출양 계약서 내용을 참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토지가 도시계획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 계획에 포함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적용법규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명해 주신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해당토지가 A시 도시계획 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 제25조에는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필히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에 약정한 개발용도와 시공개발기한에 따라 개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사에서 이미 개발을 시작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계약서의 06년 0월 0일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회수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2) 해당토지가 A시 도시계획내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점용하여 1년 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 해당토지가 농작이 가능할 경우 경작을 해야 하며 1년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하

고 해당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비준을 거쳐 무상으로 회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해당토지가 본 법규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보다는 법 규정 적용이 우선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귀사 파트너가 인지도와 인맥 관계가 좋다면 본건 처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중국 실정을 볼 때 워낙 토지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2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 1) 우선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토지사용권출양합동서]에 의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합동서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성지방지산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 계약서상에 출양인은 [중화인민공화국 B성 A시 국토자원국]입니다.
- 3) 계약서 내용중 위약책임에 대한 조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양수인은 합동서 약정에 의거하여 건설 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합동서 계약후 만 1년을 초과하여 개발하지 않을 시에 양수인은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유희 비용을 내야하며 만 2년 내에 개발하지 않을 시에는 출양인은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4) 합동서 계약일자는 04년 0월 0일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토지는 개발할 의사가 없습니다. 회사 경영악화가 주요 이유입니다. 추후 경영이 호전되면 현재의 부지에 재건설할 의지는 있지만 최소 2년 내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자회사 측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2**

<토지관리법>과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규정에 미개발 상태로 유휴가 된 토지에 대한 처벌 형식은 규정되어 있지만 개발 시작후 토지를 유휴할 경우에 대한 처벌 형식이 미비한 상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인정 표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처리방법> 제2조에 근거하면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개발하지 않은 건설용지도 유휴토지이고 시공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였지만 개발 건설면적이 개발해야 할 총면적의 1/3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이미 투자한 금액이 총투자액의 25%에 도달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중지한 기한이 연속 1년을 넘을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답변 사항과 결부하여 상기 표준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개발을 중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토지계약 시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 질의

중국 AA성 BB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문의사항은

- 1) 지난 7월 15일 AA성 BB시 CC진 경제개발총공사와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시, 현급 인민정부의 토지 관리부서에서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15일 BB시 CC진 경제발전총공사와 계약한 토지 사용권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 2) 중국최고인민법원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국유 토지 사용권계약분쟁 안건과 관련된 적용법률의 해석"에는 본 해석 시행전 계약을 체결하였을 시,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의 추가 비준을 취득할 시에는 계약을 유효로 인정한다는 보완조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가 시정부 토지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1) 중국내에서의 토지 사용권 유상매매에는 출양(出讓)과 양도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출양은 직접 정부 토지관리부서로부터 유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양도는 정부 토지관리부서로부터 출양받은 토지 사용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이미 토지를 출양받은 CC진 경제개발총공사로부터 양도를 받는 것에 속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만일을 위해 상대방의 토지 사용권 상황(즉 토지사용권증)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2)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주로 출양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즉 토지 사용권 매입자가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 취득시에는 필히 시, 현급 이상의 정부 토지 관리부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월 1일 이후부터 공업단지관리위원회 등 부서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당 해석에는 8월 1일 전에 공업단지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은 토지관리부서의 추가비준을 취득할 시 계약유효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추가비준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도시 토지관리 부서에 해당 토지가 국유토지 또한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만 문제가 없으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국 현지법으로 용적율을 높여 건축할 수 있는지요?

**질의**

건축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건축밀도 40%에 거의 접근하는 토지이용률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건축물(창고,공장)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법으로 용적율을 높여 건축할 수 있는지요? 녹지면적(15%이내)을 지키면서 건물을 2층으로 높여 지으려 합니다.

**답변**

귀사에서 건물 증축시 현재 건축밀도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용적율을 높일려는 경우 회사 소재 지역 도시계획부서에 용적율 변경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득하면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4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무용 오피스와 직원 주거용 주택 매입시 대출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의**

외투기업이 사무용 오피스와 직원 주거용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 100만 달러 중 30%가 납입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금운용상 대금 중 일부(60%)는 대출을 받아 진행하려하는데 이때 회계상의 비용 처리와 세금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외화 차입금은 총투자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대로만 가능합니다. 즉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의 투자총액의 30%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차입하여 구입하려는 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의 30%인 3십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차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가 건전한 반면에 이자비용이 없어 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 5 상업용 부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질의** 중국에서 상업용 부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화인민공화국부동산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의 상업용지는 필히 입찰 및 경매방식을 통해야 합니다. 해당 현급 토지관리부서에서 토지 출양에 대한 공고를 낸 후 참가자 신청자격에 부합되면 공고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필요서류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해시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도 한국처럼 여러 개의 구(區)로 나뉘어 있는데 보편적 (초대규모의 토지매매 제외)으로 각 해당지역의 부동산관리국(房屋土地管理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사에서는 해당지역을 선택하신 후 그 지역의 부동산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하이시 부동산관리국(上海市房屋土地管理局) 홈페이지([www.shfdz.gov.cn](http://www.shfdz.gov.c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 구(區) 부동산 관리국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고, 해당 구(區)를 클릭하시면 해당구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6 토지 구입시 혜택은?

### 질의

중국에 제조업체가 투자하면 토지구입 관련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 답변

중국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유상사용 및 기한 부여 사용을 실행하기에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유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업 토지는 반드시 토지거래시장에서 입찰, 경매, 정식 거래 등 양도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양도는 반드시 토지행정 주관 기관기관에서 토지사용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토지사용자는 법률과 계약서 조항에서의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 대해 양도, 임대, 저당 등 권리를 소유합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의 최고 연한은 40년부터 70년까지 기한이 다양합니다.

상기 방식의 토지사용권 취득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또한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사용비를 연납(年納)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자체 사용만 가능하며 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물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 연한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기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경영기한 내에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용지비용이고, 토지수용(征地), 철거, 기초시설 건설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표준은 지역 위치와 토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기 토지사용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산유형의 업종이 중국측의 원 생산부지를 이용하는 합영기업 용지, 재배업 용지, 양식업 용지와 정부에서 비준한 기타 용지를 합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토지취득과 관련 도시 기초시설 건설비 감면, 토지사용권 양도금, 납부기한 등에 대해 지역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진출 지역 투자유치국, 개발구관리위원회, 토지관리국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7 토지사용권 구매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요?

### 질의

토지사용권을 구매하려 하는데, 상대가 제시하는 가격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중국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가격을 확인하려면, 먼저 토지 기준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토지사용권 특히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가격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토지 기준가격이란 도시계획 지역내의 일정한 시기의 다양한 토지구역 또는 등급별, 용도별 토지 사용권의 평균가격을 가리킵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며,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게 됩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매 3년에 한번씩 조정하며 시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토지 기준가격의 기본내용은 적정 형식으로 지정한 장소 또는 매체를 통해 공표하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최초 양도하는 행위) 방식에는 협의출양, 입찰출양, 공시출양 및 경매출양 등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기준가격이 있는 지역의 경우, 협의출양 최저가격은 출양토지의 소재 등급 토지 기준가격의 70% 이하여서는 안되며,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은 출양할 수 없습니다.

국유토지를 입찰, 경매, 공시로 출양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토지가격 평가결과와 정부 산업정책에 따라 최저가격을 종합적으로 확정합니다.

<도시토지가격 평가 규정>에 따르면, 토지 기준가격이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가격 평가결과와 토지 기준가격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나대지, 미개발지, 7통 1평, 5통 1평 등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8 토지 사용기한 만료시 반환해야 하나?

### 질의

토지사용권 기한 만료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양(出讓)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권의 최고 연한은 공업용지의 경우 50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타 토지사용자의 토지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토지사용 연한은 기존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 중 정한 사용연한에서 기존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뺀 후의 남은 연한입니다.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사용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의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금을 지급하며 등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연한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 및 지면의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바,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증을 반환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9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데 회사설립이 필요한가요?

### 질의

상하이 지역에서 개인 명의로 건물을 구매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업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해야 할 텐데요. 송금이 가능한지요?

### 답변

개인 명의로 건물을 구매할 수 있고, 임대업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구매할 경우 건물가격이 USD 1백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이익부분을 국외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할 경우

- 1) 부동산 교역소에 가서 임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2) 직접 임대를 주거나 부동산 회사를 통하여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 ➡ 회사를 설립하여 임대할 경우

- 1) 건물 관리회사(外商投資物業管理公司) 설립
  - 등록자본금 : USD 14만
  - 설립요건 :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기타 조건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lt;1급&gt;

- 등록자본금 : RMB 500만 이상
- 관리인원 및 공정, 경제 등 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기술인원 30명 보유. 그중 중급이상 수준의 기술인원이 20명 이상
- 관리인원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른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함
- 각종 건물관리 업무

## &lt;2급&gt;

- 등록자본금 : RMB 300만 이상
- 관리인원 및 공정, 경제 등 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기술인원 20명 보유. 그중 중급이상 수준의 기술인원이 10명 이상
- 관리인원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른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함
- 30만㎡ 이하의 주택, 8만㎡ 이하의 비주택 관리업무

## &lt;3급&gt;

- 등록자본금 : RMB 50만 이상
- 관리인원 및 공정, 경제 등 관련부문에 종사하는 기술인원 10명 보유. 그중, 중급이상 수준의 기술인원이 5명 이상
- 관리인원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른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함
- 20만㎡ 이하의 주택, 5만㎡ 이하의 비주택 관리업무

## 2) 부동산중개소(房地產經紀管理公司) 설립

- 등록자본금 : USD 14만
- 설립요건 :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독자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 경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5명을 보유해야 함

## 12

## 기업 외채관리

## 1 외채관리 강화조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질의 1

외채관리 강화 관련 외환당국이 2005년 발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답변 1

먼저 2005년 4월 15일자로 발표된 내용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05년 4월 이전까지는 본사 지급보증부 대출건 가운데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 등기를 밟을 필요가 없었으나, 4월 이후부터는 인민폐 차입, 외화 차입에 관계 없이 모두 외환관리국에 신고하고, 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본사 지급보증부 대출건도 외채 차입한도(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과의 차액. 이하 “投注差”라 함)에 포함이 되어 투자기업으로서의 그만큼 차입한도가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 10월 21일에 발표된 내용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주된 내용은 외채등기 관리대상의 확대와 외채 관리업무의 은행권앞 위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새로이 수입계약을 체결한 중국내 수입업체가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이 2십만달러 이상이고, 약정기간 혹은 실제 납입해야 할 기간이 180일

이상의 연불기한일 경우, 수입업체는 통관후 15 영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지 외환관리국분국에 가서 <연불납부에 관한 외채등기>를 하고,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채계약 현황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거래은행은 동 연불납입 조건에 따라 <외채계약 현황표>와 수입관련 통관서류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금액은 <외채계약 현황표>에 등재된 원금과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부서가 비준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이 동일하거나, 투자총액이 명확치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원래의 비준부서 앞으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재차 확정을 신청해야 하고, “投注差”(외채 차입 한도)의 관리원칙에 따라 외채를 차입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앞 인민폐 및 외화대출을 취급할 때 만약 중국외의 기구 혹은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매월 10 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 담보부대출과 계약현황 등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2** 외채관리 강화조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2** 우선 외부로부터의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경기과열 차단과 함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과 외국계 은행들의 외화대출 증가 추이에 따른 중국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의3** 외채관리 강화조치에 따른 차입여력(“投注差”) 계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3** 우선 대외담보하의 대출건이 그 적용조건이며, 대출가능액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투자금액 - 등록자본금 - 【중장기 외채 취급누계액(1년 초과 대외대출금) + 단기외채 잔액(1년 이하 대외대출금) + 대외담보(본사보증, 질권설정, 저당 등)에 의한 대출잔액(외화 + 인민폐)

**질의4** 등록자본의 증액승인을 받고 실제 납입(현물출자 포함)하기 전까지도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차입이 가능한지요?

**답변4** 자본금을 100% 납입한 후 “投注差” 범위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상에 <實收資本金>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이 동일한 금액(US\$ 2,000천)일 경우 차입한도가 없습니다. 이 때 차입한도 확보를 위해 투자총액을 1백만 달러 증액할 경우,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증액되는 투자금액의 70%인 7십만 달러입니다. 즉 이 70만 달러는 증액 승인단계를 거쳐 실제 납입하여야만 30만 달러의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5** 단기차입금(1년 이내)은 잔액으로 한도관리를 하므로 매년 재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차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단기차입금을 몇 년 차입하다가 완제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차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5** 우선 한국내 은행을 포함, 중국지역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1년 이하 대출은 대출잔액 기준, 1년 초과 대출은 발생액 기준으로 차입한도가 관리되며, 중국지역내 금융기관(한국계 은행 중국지점 포함)으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대출잔액 기준으로 차입한도가 관리됩니다.

다만, 어느 대출의 경우든 제공되는 담보가 차주의 본사보증이나, Stand-by L/C, 예금 등 외화담보일 경우에는 차입한도가 존재해야 되는 바, 차주가 본사의 담보를 거쳐 단기차입금을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 “投注差”가 존재하는 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의6** 외채 규제조치와 관련, 중국 현지은행 또는 한국계은행 현지 지점과 외국은행간 제도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6** 우선 한국내 은행을 포함한 중국지역외의 금융기관과 중국지역내의 금융기관(한국계은행 중국지점 포함)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자(중국지역내 금융기관)로부터의 자금차입과 관련, 상술한 본사 또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제공이

아닌 현지기업의 자체 신용 또는 현지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차입일 경우에는 외채가 아닌 내채이므로 외채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지역외의 금융기관, 즉 한국내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거나, 본사보증 등 대외담보 제공에 의한 중국지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일 경우에는 외채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차입여력(“投注差”)이 있어야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출연장과 관련하여 한국계 은행과 중국계 은행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계 은행들은 재대출시 원금상환을 받지 않고 이자납입과 필요 서류절차만 거쳐 연장을 해주는 반면, 중국계 은행은 반드시 원리금을 먼저 상환한 후 재대출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질의7** 외화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관련 제한내용은 무엇인지?

**답변7** 대출금의 인민폐로의 환전은 수출 Nego 대금(수입자는 수입 대금 결제자금)의 용도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출입은행의 차입금은 당초 차입용도에 의한 설비증설 또는 원자재 구매 등 관련증빙을 구비할 경우 달러화의 인민폐 환전이 가능합니다.

**질의8** 상기의 일련의 외채 규제조치와 관련,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8**

우선 중국정부의 외채관리 강화방식에 따라 본사보증부 등의 대외담보 및 이를 토대로 한 한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의존하던 종전의 차입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한국계 은행들도 대외담보부 대출관행에서 탈피하여 점차 현지기업의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지기업은 담보제공 가능자산을 보다 철저히 관리(예 : 토지사용권의 적법 유효성 확인 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외채강화 조치는 대외담보하의 대출건에 대한 규제조치인바, 중국내에 투자된 계열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投注差”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용취급이 가능한 수준의 견실한 기업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 칭다오대표처 대표 박진오

## 13

## 과실송금 · 외환송금

## 1 투자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 질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외국인투자투자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중국 현지 거주 한국인 1명과 제 개인 명의로 50:50(투자자본금 \$500,000) 공동투자입니다. 조만간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일단 \$160,000(각자 \$80,000납입)을 납입하고, 1년 이내에 \$340,000을 납입할 계획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1) 상기 \$340,000의 자본금을 청도 현지 파트너는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 2) 혹시 결산전에 이익금의 국내송금이나 배당이 가능한지?
- 3) 만약 위 2번이 불가능하다면(물론 결산 전에) 중국 현지 파트너가 국내(한국파트너)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로의 송금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제가 중국투자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투자는 하기로 했지만, 어떻게든 수익이 나면 조기에 회수하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현지파트너와 얘기된 부분이구요.)

## 답변

- 1) 원칙적으로 50만 달러 이하의 경우 1년 내에 납입 완료하여야 하나, 사유가 충분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국(상무국)에 신청,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 2) 합법적인 과실 송금시 필요한 서류로는 완세증명서, 이익금 발생 년도의 회계사무소 심사증명서, 투자금액 완납증명서 등입니다.
- 3) 결산전 이익금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 2 보세구내 기업의 배당금 송금이 가능한지요?

**질의**

보세구내의 기업이 배당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까?

**답변**

수익금 수금과 송금은 보세구, 일반지역 상관 없이 바로 회사 계좌에 입금이 되고, 송금의 경우 회사 개설은행 혹은 외환관리국을 통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3 상표 사용료 송금이 가능한지요?

**질의** 상하이 ○○지역에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하여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코자 합니다. 이 때 생산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징수하여 한국으로 송금받으려 하는데, 이와 관련 송금 제한이 있는지?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1) 상표 허가 등기

<상표 사용허가계약서 등기방법> (1997년 8월 1일)에 의하면 상표 등록인이 타인에게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상표 사용허가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허가계약서 체결일부터 3개월내 허가인은 허가계약서 부분을 상표국에 등기해야 합니다. 허가인이 외국기업일 경우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지정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외환 지불

<외환 결제, 수취 및 지불 관리 규정> (1996년 6월 20일, 중국인민은행 공표)에 따르면 중국 내 기구가 상표를 수입하여 대외에 외화로 지불할 경우, 지불방식과 상응한 유효한 상업증빙과 수입계약서를 소지하고 외환 구좌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한 무형 자산에 대한 외환 수취, 지불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98)匯管函字第092號]에 따르면, 상표권을 수입함에 사용되는 외환에 대한 심사서류에는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와 국가 상표국에서 발급하는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 등기 통지서>가 포함됩니다.

즉, 상표 사용비를 지불할 경우에는 허가계약서와 등기통지서를 소지하여 지불 수속을 해야 합니다.

### 3)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

상기의 절차에 따라 상대방과 상표 사용허가계약서를 체결해 두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사용허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4)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

상표 허가계약서에는 담보조항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물품 또는 대금을 담보로 잡아 이행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중국에서 투자기업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질의

저희 회사는 중국에 진출한지 4년차에 접어드는 투자기업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여, 철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1) 회사형태: 유한회사(한국의 투자자는 법인기업체 1개사와 개인사업체 1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법인에는 개인자격(사업)으로 투자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임)
- 2) 주식의 양도양수(투자자 변경) : 중국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양수가 한국처럼 자유롭게 되는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와 세금은(한국은 증권거래세) 어떻게 되는지?
- 3) 철수
  - 가. 중국에서 영업을 종료할 경우 방법과 관련 절차
  - 나. 중국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할 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청산되지 않은 부채의 처리는?(항간에는 잔여 부채가 있을 경우 해결 시까지 주재원의 출국이 금지된다는 말이 있음)
  - 다. 중국법인을 살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중국법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현재 당사의 사정으로 볼 때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라. 중국법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적법한 사업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주재원 등이 그냥 철수하는 경우 -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주재원(사원)들까지도 다시는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음)

- 4) 기타 저희 회사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귀사의 질의사항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사 질문 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요지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중국 <회사법>에 근거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다른 투자자에게 혹은 투자자 외의 기타 제 3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관련 절차는 양도인이 주주결의서, 이사회 결의서(회사 정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를 작성하고, 양수인과 주식 양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정부 관련 허가부서(회사 설립 시)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 양도시 계약 체결은 인화세(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 양도시에 양도인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가 발생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 중국에서 영업을 종료할 시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종료합니다. 혹은 법인이 엄중히 손실을 보아 기한내 만료채무를 상환하

지 못할 경우 채권인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인의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를 상환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도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과정 중 기업재산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파산 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실행)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재산을 분배 완료하였을 경우 청산조에서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료를 제출하며, 파산절차 종료 후 미상환 채권을 다시 상환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에 의하면 파산기업의 법적대표자가 기업파산에 대하여 주요 책임이 있을 경우 행정처벌에 처합니다.

- 3) 중국법인의 투자자가 개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는 한국법인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법인은 자체 등록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4) 현재 중국내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청산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에 대해 행정처벌(예를 들어 입국금지 등)을 처해야 하지만 아직 행정처벌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단 중국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2)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투자법인을 세운 회사입니다.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새로운 "회사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KOTRA 정보를 통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중 기존의 합자회사 청산절차와 비교해 볼 때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법에 따르면 합자회사는 동사회(이사회)의 100%의 서면동의가 있을 시에만 청산이 가능했는데, 새로운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1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동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을 통해 개인적인 청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한 얘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귀사의 질의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회사법> 제 218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한 법률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회사 권력기구

##### A. 회사 권력기구

기존의 <회사법> 뿐만 아니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

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 38조 9항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과 청산 등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동사회)는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47조 7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의 방안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B. 외국인투자기업 권력(의결)기구

단,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동사회(이사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고권력(의결)기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제30조,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사회는 합자기업의 최고 권력기구이고 합자기업 일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합자기업의 중지, 해산은 동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 <회사법>에서는 1인회사를 허가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필히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은 1인 투자자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1인 투자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가 파견한 이사회의 성원은 투자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기에 외국투자자의 권력기구를 이사회로 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수 규정입니다.

#### 2) 소수지분 보유 주주에 대한 권리 부여

신 <회사법> 제 181조 5항, 제 18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 관리에 엄중한 곤란이 발생했을 경우, 계속 경영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고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회사 주주 표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신규 규정은 소수지분 보유주주의 권익에 대한 보호책입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청산과 관련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있기에 상기 소수지분 보유 주주 보호에 대한 보호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중국 회사법 등 제반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정 사이 모순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정부도 이를 해결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 3 현지 청산기업의 설비 구매는 어떻게?

**질의 1** 우리 회사는 중국 P시 소재 협력사와 함께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요즘 협력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중국 현지의 협력사를 살리려고 하면 현지에 있는 기계장치(설비)만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와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대상 설비 : M
- \* 문의사 한국공장 : A
- \* 문의사 중국공장(독자법인) : AA 장려산업 ⇒ 2003년 03월 설립
- \* 협력사 한국공장 : B
- \* 협력사 중국공장(독자법인) : BB 장려산업 ⇒ 2003년 05월 설립

먼저 B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BB의 운영도 어려워 문의사(A 또는 AA)에게 중국공장의 경영권을 매각코자 하고 있습니다. A는 현지에 투자기업 AA가 있고, BB는 AA에게 물품을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AA는 다시 제품을 가공하여 A에게 수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선 BB를 폐업(또는 청산)후 설비만을 A(또는 AA)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해서 AA와 BB를 합치고자 합니다.(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가 구매하여 AA에게 투자 형태로 함.)

이 경우는 간단히 A가 BB의 설비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오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AA에 현물투자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BB는 폐업 또는 청산함) 또한 BB의 설비의 매입대금은 B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답변1** 설비대금을 BB에 지급하여야 BB가 청산 가능합니다.

**질의2** 관련 절차 및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2**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세인 경우 AA가 BB와 동일한 면세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3** BB의 폐업 또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또는 감세되었던 세금에 대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3**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질의4** 다른 상황 가정 : 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A가 구매 - A는 AA에 현금투자.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답변4** 가능합니다.

**질의5** 그 경우 관련 절차 및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5** 상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세인 경우 AA가 BB와 동일한 면세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6** BB의 폐업 또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또는 감세되었던 세금에 대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6** 역시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종합 보충 답변) 먼저 M설비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법인 AA가 경영애로를 겪는 BB와 직접 설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결제도 서울 B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BB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B가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설비대금을 BB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산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AA에 설비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수입설비가 면세로 도입된 경우 5년 이내의 양도이므로 관세, 증치세(부가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A가 BB와 같은 외국인 기업이고 생산성업종을 경영하며 종목도 동일한 경우에는 면세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한번 더 면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A와 BB의 합병 운운은 BB의 채권자나 종업원들로부터 BB의 채무상환을 요구당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설비만을 양수도하는 것으로 거래 관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청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요?

##### 질의

여러 가지 경영상 사유로 청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청산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청산을 진행해도 되는지 만약 청산 대행을 요청한다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희 투자규모는 70만 달러 중 40만 달러가 들어온 상태인데 청산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과 설비이전이 시급한 상황인데 청산신고 후 언제 쫓 이전이 가능합니까? 이와 더불어 현재 저희가 중국에 상표등록 1건과 실용신안 및 특허 각각 3건씩을 출원중인데 청산 후에 출원인을 한국의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이전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답변

청산을 위해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소집하여 청산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설립시 허가를 받은 심사기관에서 청산수속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청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회사법>(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 184조 : 회사가 회사법 제 181조의 제 1항, 2항, 4항, 5항의 상황으로 청산이 필요할 경우, 청산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5일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

유한책임공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이 되고 주식유한공사의 경우, 동사 혹은 주주대회에서 확정된 인원으로 구성한다. 상기 기한이 지나서도 청산팀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청산팀의 구성인원을 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즉시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 188조 : 청산팀이 회사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 작성, 재산 리스트를 작성한 후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부도를 신고해야 한다. 상기 상황으로 인민법원에서 부도 결정을 내릴 경우, 청산팀은 청산업무를 인민법원에 인수 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청산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원을 필요에 따라 초청하여 진행하며, 인민법원에서 청산업무를 진행할 경우에 청산팀은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산은 보편적으로 180일 정도 소요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0일내에 종료되는 기업도 있는 반면 2년이 넘도록 청산을 종료하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품과 설비는 반드시 청산종료 후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회사를 철수할 경우 심사기관에서는 심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3건의 신청을 종료하시고 새로 한국에서 새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 실용신안, 특허를 이미 획득했을 경우 출원인을 한국회사로 이전할 수 있고 이전비용은 건당 인민폐 3,000~5,000위엔 정도입니다.

## 5 합자법인 청산 후 신규 설립법인에서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당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공장건설 진행중인데 2차 증자를 하려고 할 때, 중국측에서 기존의 합자지분을 40%에서 30%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자지분 증감사항은 원허가를 내주었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유로 한국측에서 청산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청산의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자회사가 청산되게 되면(상대회사에 돈을 지불해서라도) 한국측에서 기존의 법인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업청산 기록이 차후에 현지 법인설립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답변

청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청산 기록은 차후 현지 법인 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청산은 통상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새로운 회사의 설립은 회사청산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칭 등기 관리규정> (1991년 7월 22일 실행) 제 21조 : 회사명칭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아래 회사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흡사할 때 등록기관은 그 명칭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 (1) 회사가 철수당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 (2) 회사가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 (3) 회사가 본 규정사항의 제1, 2항의 상황 외 회사등록을 말소시킨 후 1년미만일 경우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상국서 회사명 중복 확인을 해야 하는데, 회사명이 중복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청산을 하더라도 규정기간동안 그 원 기업명이 공상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원 기업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6 보세구내 무역법인 청산절차는? 매각이 가능한지?

### 질의

중국 보세구내의 무역법인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시간, 청산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무역법인을 중국 국내업체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중국으로 진출한 외자기업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타 기업에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 소요시간을 알고 싶고, 법인 매각과 법인 청산 중 어떤 것이 처리절차가 더 까다롭고,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업 권리기구가 해산결정을 내리고 구체적 청산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 제출
- 2) 외국인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음
- 3) 청산위원회 성립(청산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기업권력기구의 구성원에서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별도 초빙해야 함.)
- 4)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에서 통지 및 공고함
- 5) 청산위원회가 자산, 대외부채 등 정리
- 6) 자산 처리방안과 계획을 작성, 동사회 혹은 집행동사의 승인을 받음
- 7) 자산 처리방안을 집행, 각 비용과 부채를 지불 및 상환함.

- 8) 청산 완료후, 청산보고 제출, 기업 권리기구의 승인을 득한 후  
외자심사기관에 보고함
- 9) 청산위원회가 세무기관, 해관에서 말소 수속 처리
- 10) 청산위원회가 기업 등기기관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하고 영업집  
조를 반납하고 공고함

법적으로는 청산 개시일부터 심사기관에게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산에 소송이 동반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청산 처리비용은 법률 사무소 의뢰 수수료 기준으로 RMB 10만~100만까지 부과되지만, 최저 RMB 10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련 청산 비용도 RMB 10만 이상이 소요됩니다.

중국 국내업체나 외자기업으로의 매각이 모두 가능하며, 자산 혹은 주권이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소요시간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다. 매각절차가 청산 절차에 비해 쉽고, 간단합니다. 매각은 쌍방이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심사기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 7 법인의 소재지 이전 관련 문의입니다.

**질의**

지금 저희 회사가 상해 민항구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區)나 다른 지역(소주, 상숙 등)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면, 이쪽 상해회사를 완전히 철수하고 옮긴 곳에서 새로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회사 이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해회사를 아예 철수하고, 소주, 상숙에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새로 설립하려면 상해에서 회사 설립할 때처럼 소주, 상숙에서 새로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공장내 면세 설비가 문제가 되는데, 만일 설비가 아직 세관 관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관세를 지불해야만 설비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상해 회사를 철수하지 않고 직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상하이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허가기관(상해 외경무위 등)에 가서 이전수속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소주, 상숙이 소재한 강소성 외경무위에서 이전신청을 한 후 발급받은 서류를 상해 공상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률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지 실제로는 매우 힘든 방법입니다.

## 8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이 가능한지요?

### 질의

보통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 신청 후 곧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합병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은 청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 변경 및 말소 등기 수속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산된 법인이 합병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영하는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답변

회사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립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을 통해 1개 회사로 합병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사합병은 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 1) 흡수합병 : 흡수되는 회사는 말소됨
- 2)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가 합병 혹은 분립으로 업종 혹은 경영범위가 변경되면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허가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한 회사의 말소 또는 타 지역 신규회사 설립은 말소 혹은 신규 회사 설립 소재지 허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합병절차 마무리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9 지분 양도와 청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질의

현지 합자법인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분 양도와 청산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관한 일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법 실시조례>,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실행세칙>,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에 근거하여 기사에서 질의하신 합자회사의 지분양도 및 청산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자가 합자기업에서의 투자를 철수할 경우 지분 양도 또는 청산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A : 기존 합자파트너, B : 기존 합자법인으로 구분합니다)

### 1. 지분 양도에 관하여

#### 1) 양수인과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

A사외의 제 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A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A사는 당해 지분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법> 제 20조에 근거하면 유한책임회사는 2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기에 귀사는 보유하고 있는 전부의 지분을 A사에게 양도하면 안 됩니다.

- 2) B사 이사회에서 투자자 지분변경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
- 3) B사에서 원 회사설립 심사비준기관에 지분변경을 신청하고 비준 받아야 합니다.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① 지분변경 신청서
  - ② B사 원 합자계약서, 정관 및 수정계약서
  - ③ B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B사의 투자자 지분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 ⑤ B사 투자자 지분 변경후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 ⑥ A사의 싸인 또는 기타 서면방식의 인가를 받은 양수인과 체결한 지분 양도 계약서
  - ⑦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심사기관에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외국적 법인, 경제조직 또는 자연인일 경우 B사는 심사비준기관 투자자 지분 변경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비준기관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내자업체일 경우 B사는 심사비준기관이 투자자 지분 변경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비준기관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를 반납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 말소 비준일로부터 15일내에 원 등록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준증서 말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원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B사는 외국인투자기업설립비준증서 변경 또는 반납 말소일로부터 30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록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변경후의 B사에서 완성하므로 귀사와 기본상에서 관련되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 방식의 관건은 상기 제(1)항의 절차입니다. 양수인과 지분 양도 계약을 달성함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상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2. 청산에 관하여

### 1) B사의 해산 선고

B사 이사회는 원 심사비준기관에 해산신청서(만약 A사가 합자 기업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사가 경영을 계속할 수 없고 또한 귀사는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귀사에서 단독으로 해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를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 해산 비준일이 B사 청산일입니다.

### 2) 청산

- 일반청산 : 주요 절차는 청산위원회 구성, 자산 대차대조표와 재산 리스트 작성, 재산평가와 계산근거 제출, 청산방안 제정, 채권인에 대한 통지, 청산보고서의 작성 등입니다.

일반청산은 청산개시일로부터 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일까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정황이 있을 경우 청산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산위원회에서 청산기한 만료되기 15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 연장신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연장기한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별청산 : B사가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일 반청산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B사 이사회, A사와 귀사, B사 채권인은 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비준기관에서 특별청산을 비준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조직하에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요 절차는 일반청산과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 3) 등록 말소

청산보고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한 일로부터 10일내에 청산위원회는 세무기관, 세관에 가서 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항 수속이 완료되는 일로부터 10일 내에 청산보고서와 세무기관, 세관에서 발급하는 등록말소증명을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을 말소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전국적인 신문(전국지), 현지 성 또는 시급 신문(지방지)에 기업종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청산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기한은 청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청산과정에서 소송 또는 중재 등 정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청산의 경우,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비용 외 기타 비용은 B사 현재의 경영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귀사에서 현재 제공한 자료로서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3. 기타 방법

본건의 경우, 상기에서 설명드린 지분 양도 및 청산 방법 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합자회사 설립을 위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현재까지 합자회사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어 귀사에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수 및 분쟁해결 절차 부분은 귀사와 중국 파트너가 체결한 합자계약서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자계약서의 경우, 위약 책임조항과 분쟁 해결조항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중국 파트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0 기 투자된 여러 법인을 합병하려는데...

**질의 1** 중국 전역에 00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합하여 기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보통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 신청 후 곧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합병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은 청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 변경 및 말소등기 수속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사가 자문한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문제와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1999]外經貿發第395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04년 수정), 《외상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0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해산 가능:

- ①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 만료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할 시
- ② 주주회의에서 해산 결의
- ③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해산의 경우”

제191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기 (1), (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경우, 15일 내에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은 반드시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을 거치고 또한 등기기관에서 회사 설립,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 협의서에서 명시된 회사 재산 처리 관련 방안 및 채권, 채무 승계 방안과 심사비준기관에서 회사 합병 또는 분할을 비준한다는 문서를 말소등기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주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는 회사 합병 해산 시에 청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 33조 3항에서의 “말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주한다”는 실제적인 청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질의2** 해산된 법인이 합병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영하는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33조 3항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 협의서에서 기재된 회사 재산 처리 관련 방안 및 채권, 채무 승계 방안과 심사비준부서에서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을 비준한다는 문서를 말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주한다.”

상기 규정은 실제적인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이런 유사한 청산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투자기업 청산 방법》(1996년 6월 15일 국무원에서 비준, 1996년 7월 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승 제2호로 공포) 제 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하는 동안 새로운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합병절차 완료 전까지 새로운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의3** 회사 합병시 흡수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일자가 합병 후 회사의 설립일자가 되고, 신설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등기기관에서 영업집조를 발급한 날이 합병 후 회사의 설립일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3**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시, 흡수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흡수측 회사의 설립일자를 합병후 회사의 설립일로 하고, 신설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등기기관에서 설립등기를 심사비준하여 영업집조를 발급한

일자를 신설 합병회사의 설립일자로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의 이해는 정확합니다.

**질의4** 만약 곤산 ○○지역의 법인, 북경 ○○지역의 법인, 광주 ○○지역의 법인을 모두 해산시키고 신설합병을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되는 법인세 및 기타 각종 세제혜택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4**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은 세관, 세무와 외화관리 등 관련 기관에서 공표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한 회사는 심사비준기관, 세관과 세무 등 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야 원 회사가 받고 있던 각종 외국인투자기업 대우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신설한 회사는 원 회사가 받고 있던 각종 외국인투자기업 대우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 《외상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并、分立、股權重組、資產轉讓等重組業務所得稅處理的暫行規定)에는 소득세 문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세한 내용은 이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5** 예를 들어, 북경법인의 이름으로 흡수합병을 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기존 북경00지역의 법인이 받고 있던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5**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상기 3. 2 문제에 대한 의견과 동일합니다.

**질의6** 마지막으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법인 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6**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갖고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인투자지분유한회사간의 합병 또는 분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11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지분양도는 어떻게?

### 질의

안녕하십니까? 1997년도에 우리회사와 주위에 있는 A라는 두 회사가 각각 U\$230,000씩, 주권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총 자본금 U\$460,000로 신고하여 중국에 정식으로 투자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B성 C시에 합자투자법인인 D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C시에 서는 공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에 회사를 같은 성내인 E시로 이전하여 현재는 E사에서 F사라는 새로운 회사명의 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현 상태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 A사의 지분 50%만 G라는 해외회사에 매각하고 우리 회사는 계속 투자법인인 F사의 주주로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더 부연 설명해 보면, G라는 해외회사는 합자투자법인 F사 주권 50%를 매입함과 동시에 이 회사에 U\$115,000를 증자하여 주권 비율을 G사 60%, 우리회사 40%로 만들어서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G사는 A사로부터 50% 주권 이양과 증자 내용을 동시에 중국 E시 정부에 등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G사가 U\$115,000를 증자하는데 일시불로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분할해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증자 U\$115,000를 분할해서 투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50%의 주권이양과 증자를 중국정부에 등록하는 기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모르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현재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G사가 F사 지분을 모두 합쳐 60%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G사는 F사의 주권 중 50%는 A사로부터 매입하고, 10%는 귀사에서 매입하는 형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증자의 문제가 아니라 두 투자자간의 주식양도 문제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자본금 납입을 일시불로 또는 분할 지불할 것인지, 분할 지불시 몇 년 간에 걸쳐 납입해야 하는지는 회사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것은 자본금과 양도금에 대한 구별입니다. G사가 A사로부터 F사의 50% 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A사가 F사가 규정한 출자의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본금과 양도금이라는 개념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F사에 대한 출자의무는 U\$230,000이지만 U\$52,000을 출자한 상황에서 G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전부 양도하려고 하면 출자금 U\$52,000과 기타 채권채무 등 상황에 의하여 양도금이 정해질 것입니다. 양도금은 F사와 G사간의 주식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양도금 지불기한을 계약 쌍방이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U\$52,000의 잔액 U\$178,000은 G사가 주식양도 받은 후 납입해야 할 자본금인데 이는 F사 정관에 규정된 기한내에 출자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 절차는

- ① F사 이사회 결의(정관에 주식양도 의사결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야 함)
- ②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 ③ 주식 양도 기타 서류 작성
- ④ 정부에 제출하는 순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수취비용은 지방마다 틀리지만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보통 2,000위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KOTRA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 12 외국투자기업 지분 인수시 투자처 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얼마전 중국 A시에 현지공장이 있는 한국회사로부터 투자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투자처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한국에서 공증
2.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동사장 여권 한국에서 공증
3.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권한증명서 한국에서 공증(중국 양식)
4. 양수대상 기업(중국 현지공장)의 회계 담당 신분증 복사본 한국에서 공증
5.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회사규정(정관을 말하는 듯) 한국 공증
6. 동사회 결의서 한국 공증

이렇듯 모든 자료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공증을 요구하고 거기다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까지 받아 오라고 하네요.

더욱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얼마전 이와 비슷하게 B시(B시와 A시는 같은 C시라는 지구급시에 소속되어 있는 현급시임)의 기업을 인수한 경험이 있고 거기서는 투자처 변경할 때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데요. 기업의 인수에 따른 변경 절차가 지방마다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지분인수후 투자처 변경에서 위 자료들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2. 그리고 투자처 변경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관련기관'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지지분 인수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상이한 정부부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1. 주식양도 계약
2. 주식양도 신청서
3. 동사회(이사회) 결의
4. 정관 변경조항
5. 양수기업의 합법 개업 증명과 은행자산 신용 증명서, 동사회 구성원 신분증명 및 기타 증빙 서류
6. 양도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부분 및 기타 증빙 서류
7. 기타 필요한 서류

투자지분 인수후 변경등기를 거쳐야 하는데 주요 관련 부서로는 대외경제무역합작국, 공상행정관리국입니다. 동 부서의 변경등기를 거친 후 세무국(국가,지방), 재정국, 기술감독관리국, 외환관리국, 은행, 세관 등 여러 기관에서 상응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기 서류 공증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 2005년도부터 정부 관련 부서에서도 투자자 증빙서류에 대해서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 법인설립을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는 명확히 투자자 사업자등록본을 외국에서 공증, 인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가 사업자등록본에 날인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상황입니다.

A시의 관련 부서에서 귀하께서 나열한 공증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A시 기업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투자지분 인수시 주식양도 계약 및 투자자 합법개업증명(사업자등록본)에 대해 공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1. 주식양도계약의 공증은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가능함. 만약 한국에서 했을 경우 공증의 번역본과 번역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2. 합법개업증명은 양수기업이 중국투자자(중국법인)일 경우 본 기업의 공인을 찍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원본을 제출하여 대조확인하여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기업이 외국투자자(외국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현지 공증부문에서 공증하거나 영사관에서 인증한 사본과 번역자가 서명한 사업자등록증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 KOTRA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15

기 타

## 1 외자기업 보유 통장 활용 범위 및 용도

질의

중국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몇 개의 통장과 각 통장의 활용 범위 및 용도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화예금 계좌는 기본계좌와 전용계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계좌 : 경상거래 외화계좌로서 경상항목의 수입과 지출 및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은 일부의 자금항목에 사용하고, 외화전용 계좌는 기본적으로 자본항목 거래를 위해 사용합니다.

경상항목 외화계좌 : 경상항목의 외화수지와 외환관리국에서 인가를 받은 일부 자본항목의 외화지출을 처리합니다.

외화전용 계좌에는 외화자본금 계좌, 외채계좌(국외차입의 외화차입금 계좌), 외화표시 차입금 계좌(중국 금융기간으로부터의 외화표시 차입금 계좌), 원리금 변제전용 계좌 외에 회사 설립 전에 토지사용권의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한 토지사용권 보증금 계좌의 회사 설립인가부터 자본금 납입까지 납입이 필요한 자금을 위한 임시자본금계좌도 있습니다.

이들 임시계좌의 자금은 후일에 외화자본금 계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본금 계좌의 사용은 외화 수입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외화 현금 출자로 한정되고, 지출은 자본금의 지출로서 경상지출 항목과 외환관리국이 인정한 자본지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 2 상표 검색

질의

중국에서도 상표 관련 정보의 무료 검색이 가능한지?

답변

최근 중국 국가공상국 상표국은 상표 등록정보망을 개통하여 일반인들에 개방함에 따라, 이제 외국인도 포함한 일반인이 중국상표망(中國商標網) 사이트인 <http://sbj.saic.gov.cn>에서 중국내 상표 등록 관련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상표망의 개방에 따라 등록상표(註冊商標)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에서 상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중국정부가 자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브랜드 경제발전의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 등록정보망에서는 등록상표(註冊商標) 외에 현재 신청중인 상표 관련 정보도 검색이 가능하며, 아울러 이 사이트는

-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관련 정보 검색
- 2) 중국내 상표 관련 종합정보 검색
- 3) 상표 심사 상태 관련 정보 검색의 3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칭다오시 공상국의 소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매년 1회 이상 상표 등록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일반인이 검색중 오류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이트 내 "오류정보 feed back"란을 통하여 상표국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3 생가죽 가공무역 금지 관련

중국 정부가 2006. 1. 1부로 생가죽 가공무역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가 쇄도하고 있어 이를 정리해 봅니다.

**질의 1** 생가죽 가공무역이라는 문구에서 생가죽의 의미는 털이 붙어 있는 가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털을 제거한 PEAKLE, WET/BLUE, CRUST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1** 이번 생가죽 가공무역 금지 조치 관련, 생가죽의 의미는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통관편람> 기준 H.S CODE 4101, 4102, 4103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을 지칭합니다. 이 편람상 PEAKLE, WET/BLUE, CRUST 등은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2** 이번 조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6년 1월 1일부터 생가죽 임가공무역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중국공장과와의 임가공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책오픈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만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2** 수책오픈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세관에서 등기(海關備案), 수책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만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체결한 계약서에서 나온 내용에 따라 본 계약서 계약 완료일까지는 가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질의3** 생가죽 가공무역과 반제품 가공무역에서 생가죽의 정확한 의미와 반제품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이지요?

**답변3** 생가죽의 의미는 답변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S CODE 기준 4101, 4102, 4103에 해당하는 품목을 지칭하는 것이며, 반제품의 정확한 의미는 H.S CODE 기준 4104, 4105, 4106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질의4** 중국공장을 이용하여 현재 임가공계약을 진행중인 회사(來料加工)로서 2006년 이전에 이미 계약하여 진행중인 회사는 계속하여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치세를 부담하면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답변4** 2006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계약하여 진행중인 회사는 동 계약건에 한해 계속적으로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증치세를 부담하면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질의5** 생가죽 피혁 가공 계약을 가능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질의 4번에서 의문을 제시했듯이 면세로 계속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답변5** 상술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건은 계약 완료일까지 면세로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이나마 손실 보전을 위해 계약을 가능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하고 세관 수책 오픈까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6** 최종적으로 증치세를 지불하여 수입을 했을 시 환급은 어느 시점에서 해주는지요? (예를 들어 核銷하는 시점인지)

**답변6** 증치세를 지불하여 수입을 했을 경우 증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核銷 완료 후 지역별로 3 - 6개월 후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질의7**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산출근거 및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7**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산출근거는 <중국인민공화국 관세조례>, <중국인민공화국 증치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실행조례> 등입니다.

수입관세는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해 해당 제품의 HS CODE 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7%와 13%짜리로 나뉘는데 대부분 품목이 17%이고, 일부 동식물 제품 및 광물만 증치세가 13%이므로 보통 17%의 증치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세는 HS CODE 2106, 2204-2208, 2402, 2403, 2710, 3302-3305, 3604, 4011-4013, 7101-7105, 7113, 7116 8702-8703, 8711중 부분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데 세율은 13%입니다. 그러나 피혁관련 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中國皮革協會, 商務部 對外貿易局 加工貿易處 등

#### 4 독자 형태 도소매 기업이 청도오시에 몇 개나 있는지?

##### 질의

2004년 12월 11일 부터 외자기업의 도·소매업이 허가되었으나 당시는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외자기업의 도소매업 진출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몇몇 기업들이 도·소매업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도내 도·소매업으로 허가된 외자기업 수를 확인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등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였지만 총 기업 수는 확인 가능하나 합작, 합자, 외자 등의 구분이 나와 있지 않아 부탁드립니다.

##### 답변

문의사항 관련 청도시대외무역경제합작구 외자처에 문의한 결과 독자로 도소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6개사가 있다고 합니다.

## 5 한국 원화의 인민폐 환전이 가능한지요?

### 질의

한국돈을 현지에서 인민폐로 직접 환전을 할 수 있나요? 인민폐를 직접 소지하고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출이 불가능하다면 인민폐를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답변

한국 원화를 인민폐로 환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민폐를 한국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행(上海市分行營業部, 靜安支行, 盧灣支行, 長寧支行, 中銀大廈支行, 浦東分行, 國際機場 등 7개 지점)에서 원화 → 인민폐 환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상은행(虹橋開發區支行, 古北新區支行, 國際機場支行, 莘庄支行, 國順東路支行, 控江支行, 南京西路支行, 浦江支行, 龍柏新村支行 등 9개 지점)에서도 원화 → 인민폐 환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시의 경우 우리나라 합자은행인 청도국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폐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고, 달리는 USD 5,000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USD 5,000 ~ 10,000 일 경우 은행, 세관의 증명과 외환관리국의 허가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인민폐를 직접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고, 반드시 통용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해야 합니다.

## 6 기술지도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저희는 IT관련 업체입니다. 현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의 기술력 또는 생산력에 문제가 있어 한국본사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설비수리 및 기술을 전수, 지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장 및 파견인력에 대한 경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지 중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거래에서 실물이 없는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지도료 명목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 법규 내지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문의하신 문제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간주되어 중국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료 명목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급여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본사 파견인원이 1년 내 중국 거주 누적일수가 183일을 초과할 경우 세무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7 효율적인 채권관리 방법은?

### 질의

중국 현지에서 효율적인 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한국 수출입 은행에 발간한 “중국에서의 채권관리 실무와 사례”에 기재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내 채권관리 7계명

①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라.

되도록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다면 결제기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현금 결제는 처음은 어렵지만 사업 성공의 기본 바탕이 된다.

② 현지 상거래 관행의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부문별, 업종별로 상거래 관행이 다르고 사업환경이 다르므로 내수 진출 계획 수립 전에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

③ 대리점 및 영업사원과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대리점 및 영업사원은 종속 관계가 아닌 사업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수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이들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④ 거래 전 신용 조사를 철저히 하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필수적이다. 중국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회사가 의외로 많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부실채권을 대

량 발생시킨 뒤, 고의 부도 혹은 유명무실한 기업으로 남겨놓은 사례가 많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업력, 영업실적, 채무 과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⑤ 담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라.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국기업과의 거래가 불가피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외상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채권 범위 내에서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담보로는 보증, 저당, 질권 설정 등이 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담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⑥ 소송과 강제집행절차는 채권 회수의 좋은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

소송 절차 진행은 외상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인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좋은 수단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의외로 채권 상환에 대한 협상을 타진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소송통지를 받아도 여전히 배짱을 부리게 된다.

⑦ 법과 관계(관시:關係)를 적절히 활용하라.

현재의 중국사회는 법만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또 그렇다고 관계로만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국 시장 개척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 8 중국인이 한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투자하자고 합니다.

**질의** 중국에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중국인인 그분은 20억(한화)의 자산가이고 중국에 한중 합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합자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부탁을 해왔는데 한국에 있는 저에게 10억원을 송금해 줄테니 그 돈을 중국에 있는 자기에게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제가 부담하는 것은 그냥 한국인이라는 명의뿐입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여 이분을 도울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인 리스크와 세금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런 행위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돈세탁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한국인에게 자기 돈을 주고 다시 투자로 돌려받겠다는 것은 검은 돈을 정상적인 상태로 바꾸려는 시도인 것이 농후합니다. 합자를 하시려면 일단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록1

## 주식양도계약서 서식(중국어)

（轉讓人）与 （受讓人）

股 權 轉 讓 合 同

中國上海

年 月 日

本股權轉讓合同(以下簡稱“本合同”)由下述双双方当事人于年月日在上海簽署：

上海(以下簡稱“甲方”),一家根据中華人民共和國法律成立并存續的有限責任公司, 注册地址位于；

(以下簡稱“乙方”), 系一家根据大韓民國法律正式組建并存續的, 注册地址位于。

鑒于：

- (1) 甲方和乙方于一年一月一日在上海共同投資設立了公司(以下簡稱“合資公司”), 一家根据中國法律正式組建并存續的有限責任公司, 其中甲方持有合資公司90%的股權, 乙方持有合資公司10%的股權；
- (2) 甲方愿意將其所持有的合資公司的%的股權轉讓給乙方, 并且乙方愿意取得該股權；并且

(3) 甲方董事會已經通過同意轉讓股權的決議。

本着平等互利、公平一致的原則，經雙方友好協商，達成以下條款，以茲遵守。

### 第1條定義

在本合同中，如无另外特殊解釋，下列詞語將作如下定義：

1.1 当事人：指簽訂本合同的甲乙双方。

1.2 審批機關：指上海市外國投資工作委員會，或經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授權有權對本合同項下的股權轉讓進行批准的政府機關。

1.3 工商登記機關：指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或經中國國家工商行政管理局授權有權對本合同項下的股權轉讓進行工商變更登記的工商行政管理機關。

1.4 新合資公司：指本合同生效后的合資公司。

1.5 新合資合同：指由甲方和乙方重新制定立的合資公司的合資合同。

1.6 現合資合同：指由甲方和乙方制定的合資公司的合資合同。

1.7 新章程：指由甲方和乙方重新制定立的合資公司章程。

1.8 現章程：指由甲方和乙方制定的合資公司的章程。

1.9 稅費：指各種性質的由稅務或其他機關征收、扣除、預提的各種形式的稅款、收費，並包括任何利息、附加稅費以及與此有關的應付的其他費用。

1.10 本合同：指本股權轉讓合同。

1.11 特定銀行帳戶：指由甲方和乙方共同確定的，由甲方在韓國友利銀行上海分行開立的銀行帳戶（具體條款見第4條）。

1.12 合資公司現有員工：指截止本合同簽署之日，与合資公司保持有效勞動合同關係的中國籍員工。

1.13 本合同生效日：指審批機關對合資公司核發經變更投資人股權的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之日。

## 第2條股權轉讓的份額及價格

2.1 甲方將其擁有的占合資公司水仙能率注冊資本的%50的股權（以下簡稱“本股權”）全部轉讓給乙方。乙方以美元受讓甲方的本股權(下称“股權轉讓金”）。

2.2 本股權轉讓完成后，甲方將持有新合資公司%的股權，乙方將持有新合資公司%的股權。

2.3 股權轉讓金系根据甲乙双方共同指定經上海市國有資產管理机构認可的資產評估机构的評估結果并經過甲乙双方公平協商而确定。

## 第3條股權轉讓金的支付期限与支付方式

3.1 乙方分三期支付股權轉讓金：

第一期股權轉讓金在本合同簽署后天內，由乙方以電匯方式支付到特定銀行帳戶；

第二期股權轉讓金在本合同簽署后天內，由乙方以電匯方式支付到特定銀行帳戶；

第三期股權轉讓金在本合同簽署后天內，由乙方以電匯方式支付到特定銀行帳戶。

3.2 甲方指定的收款人在收到3.1款規定的每一期股權轉讓金后三个工作日內，開具收款憑証給乙方。

#### 第4條特定銀行帳戶

4.1 爲了接受股權轉讓金，甲方和乙方不可撤銷地同意：在本合同簽署前，共同在韓國友利銀行上海分行（以下簡稱“第三方”）開立一个特定銀行帳戶，作爲唯一且僅僅接受股權轉讓金的帳號。

4.2 未經甲方、乙方和第三方協商一致，甲方不得變更或撤銷特定銀行帳號。

#### 第5條合資公司法人的正式交割

以下各款條件均獲滿足之日視爲合資公司法人正式交割完畢之日：

4.1 根据本合同第3條的規定，甲方已收到股權轉讓金；

4.2 本合同已經生效；

4.3 根据本合同第9條的規定，合資公司物業及相關資料（原件）已正式交付乙方。

#### 第6條新合資合同及新章程的制定終止

合資公司水仙能率現合資合同及現章程的效力自本合同生效之日起終止。新合資公司制定的新合資合同及新章程，并自本合同生效之日起完全取代現合資合同及現章程的法律效力。即行終止有關合營合同終止之事宜由双方当事人另行簽訂協議加以規定。

## 第7條權利与義務的繼承

### 7.1 自本合同生效之日起，甲、乙双方

章程中應承擔的義務，也不再繼續享有相關權利。但本協議或即依照新合資公司及新章程享有相關的權利，并承担相應的義務。

7.2 自本合同生效之日起，新合資公司將對合資公司作為一方当事人的合資公司与第三方簽訂的相關業務合同（以下簡稱“原有合同”）中的權利与義務加以繼承。但是，各方当事人另有約定的除外。

## 第8條保證

### 8.1 甲乙双方共同作出以下保證：

8.1.1 各自均具有簽訂并履行本合同所必須的全部權利和法定授權。

8.1.2 各自均將及時提供因辦理本合同第13條規定的批准申請手續而需由各方提供的所有文件，并保證它們的真實性、有效性。

### 8.2 甲方就下列事項作出以下保證：

截至本合同簽署日：

8.2.1 本股權之上并无任何質押、抵押、担保，不存在任何司法強制執行或司法保全措施的情況、不存在任何其他權利瑕疵。

8.2.2 除乙方已經知道的外，合資公司的任何其他財產之上并未設立抵押、質押或任何性質的第三方權利。

8.2.3 合資公司具有開展其營業執照上記載的經營範圍內規定之業務所需的相關資質，許可，執照且前述資質，許可和執照均有效。

8.2.4 甲方向乙方透露和遞交的合資公司相關信息和資料(括但不限于財務, 經營管理, 工程建筑方面的信息和資料)的甲方所知曉的重要內容均為真實有效。

## 第9條物業和相關資料 (原件) 的交付

### 9.1 交付內容

9.1.1 物業：位于上海市之合資公司物業(大門；所有餐廳、客房、辦公室、設備機器房等)的鑰匙。

9.1.2 相關資料 (原件)：詳見附件二。

### 9.2 交付時間

9.2.1 本合同生效后十天內，甲方向乙方授權的代表交付物業以及相關資料 (原件)。

9.2.2 乙方授權代表清点完畢9.1條規定之物業并接受鑰匙、清点完畢相關資料后，自乙方授權代表在簽收單上簽字之時即為甲方已完成物業以及相關資料 (原件) 的交付義務。

9.2.3 乙方授權代表无正当理由而拒絕在簽收單上簽字，則自該代表完成第9.2.2條規定的清点事項之時，即視為甲方已完成9.1條規定的交付義務。

### 9.3 驗收標準

甲方履行9.2條規定的交付的當時該物業的現實狀況即為乙方對該物業的驗收標準。

## 第10條合資公司現有員工的安置

10.1 乙方同意繼續僱用合資公司現有員工。即自本合同生效之日起，新合資公司將繼續與該些員工保持至少一年的不低於合資公司與該些員工之間的勞動合同條件的水仙能率勞動合同關係。但如員工自己提出要求解除勞動合同或員工的勞動合同期限屆滿的不在此限。

10.2 截至本合同生效之日止，如合資公司新簽訂勞動合同，該勞動合同條件不應超過現有的勞動合同條件（中國法律、法規及上海地方性法規規定的除外），并且合資公司應把該情況提前通知乙方。

当事人另行協商確定。

## 第11條手續的辦理

### 11.1 批准本股權轉讓的申請手續

本合同簽署后發生的向審批機關進行的所有批准本股權轉讓的申請手續，將由乙方委托的有資質的機構以水仙能率合資公司的名義辦理。甲方應給予必要的和最大可能的協助。因辦理該項手續而需向審批機關交納的必要費用由合資公司承擔。

### 11.2 工商變更登記申請手續

甲方和乙方應敦促新合資公司在審批機關核發經變更的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后10日內，向工商登記機關提出工商變更登記申請手續（包括合資公司名稱變更登記申請手續）。

### 11.3 相關變更登記申請手續

甲方和乙方應促使新合資公司自取得新合資公司的營業執照后20日內，向

有關政府部門申請辦理所有証照的變更登記手續，以確保變更後的証照能反映新合資公司的性質。

### 第12條董事變更

12.1 乙方受讓股權之後，依法自動的按照獲取的股權份額并依據新合資合同和新章程，委派新的董事與甲方新委派的董事組成新合資公司的董事會，直接有效的負責新合資公司今后的經營活動；

12.2 相應的，甲方委派的全部董事，除甲方重新委派到新合資公司中繼續擔任合資公司董事職務的董事除外，應當全部離職，并不再參與今后的經營活動。

12.3 董事會由3名董事組成，其中2名由乙方委派（其中1名擔任董事長），1名由甲方委派。總經理由乙方提名，董事會任命。總經理負責合資公司日常經營管理的事項。

### 第13條相關費用、稅賦

13.1 因匯款（包括但不限於股權轉讓金）所發生的銀行費用，如發生在中國境內由甲方承擔，發生在中國境外，則由乙方承擔。

13.2 因簽署、履行本合同所發生的所有契稅及其他相關費用，由雙方根據中國法律的規定由法定義務主體予以承擔。

### 第14條保密義務

各方當事人基於本合同所了解到的其他當事人對方的商業秘密均屬於保密

信息。對此，各方當事人均應向其他當事人對方承擔保密義務，未經該其他當事人對方事先書面許可，禁止將保密信息泄露給任何第三人。

## 第15條違約責任

15.1 任何一方當事人因故意或過失而違反本合同的任何條款，導致守約方因此而遭受損失，應視為違約。違約方應賠償守約方因此而遭受的所有直接和間接損失。

15.2 甲方的下述行為構成違約：

- (1) 未按照本合同3.2條開具發票；
- (2) 未按照本合同4.1條規定開立特定銀行帳戶；或者
- (3) 未遵守本合同4.2條規定，擅自變更、撤銷或者掛失特定銀行帳戶；
- (4) 在本合同第8條中所做保證虛假、或不真實；
- (5) 未按照本合同第9條規定，辦理交接手續；
- (6) 在本合同簽署后，未按照本合同第11條規定，辦理審批、登記及相關證書的變更手續；
- (7) 未按照本合同12條規定，辦理董事變更手續。

15.3 乙方的下述行為構成違約

未按照本合同第3.1條的規定，支付股權轉讓金。

## 第16條不可抗力

16.1 本合同履行期間，發生的下述情形為本合同所指的不可抗力事件：

16.1.1 水災、火災、地震、台風、瘟疫、洪澇、干旱等不能預見、不能避

免并不能克服的自然事件；

16.1.2 經各方当事人同意的類似上述事件的其他所不能預見、不能避免并不能克服的自然事件和政治事件。

16.2 当發生不可抗力事件導致本合同任何條款无法履行時，遭遇不可抗力的当事人一方應立即用電傳/電報或其他盡可能的通訊方式通知其他對方当事人。

16.3 遭遇不可抗力的一方当事人應在可能的範圍內，盡力減輕不可抗力事件對履行本合同的影響。

16.4 各方当事人可根据不可抗力事件對本合同履行的影響程度，協商決定是否解除本合同或免除本合同部分條款的履行，或者延期履行本合同。

#### 第17條權利義務的不可轉讓性

本合同項下的各項權利義務應專屬於各方当事人所有，未經各方当事人事先一致同意及審批機關的必要批准，任何一方当事人不得將本合同項下的權利與義務轉讓給任何第三方。

#### 第18條修改和補充

双任何一方当事人對本合同所進行的任何修改和補充，均應事先獲得其他双方当事人的書面一致同意及審批機關的必要批准。該經批准的修改和補充事項將作為本合同的組成部分與本合同具有同等法律效力。

## 第19條完整的協議

19.1 本合同就所述事項構成甲、乙各方之間的完整的協議；若甲、乙各方此前存在與本合同明顯沖突或與本合同所體現的當事人本意不一致的各種形式的協議、商談、承諾以及表述等，則以本合同約定的內容為準；

19.2 本合同是各方協商一致所達成合意，不構成任何意義上的格式合同，其條款亦非格式條款。

## 第20條通知

20.1 本合同項下的任何通知、要求、或其他聯絡，應以書面形式通過掛號信或傳真方式，向本合同文首記載的各方當事人的聯系地址或傳真號送達或發出，除非各方當事人另有書面變更約定。

20.2 上述通知、要求、或其他聯絡于送達各方當事人的收件人之時起正式生效。

20.3 若任何一方當事人的通知地址發生變更，該當事人應事先書面通知他對方。若由于該當事人未履行通知義務致使他方對方當事人無法履行本合同規定的有關義務，則他方對方當事人對此不承擔任何責任。

## 第21條适用法律及爭議的解決

21.1 所有因履行本合同而產生的或與本合同有關的一切爭議，應通過雙方當事人友好協商予以解決。如協商不成，應通過申請仲裁以解決爭議。申請仲裁的，該爭議應提交位于新加坡的新加坡國際商會，按照申請仲裁時該會屆時有效的仲裁程序及仲裁規則進行仲裁，适用的法律為中國法律。

21.2 仲裁過程中，除双方当事人有爭議且正在進行仲裁的部分以外，本合同的其他部分應繼續加以履行。

## 第22條 合同的效力和文本

22.1 本合同自双方当事人的授權代表簽署，并經審批機關審批之日起正式生效。

22.2 本合同用中文和韓文作成，兩種文本具有同等效力。當兩種文字對本合同的解釋發生異議時，應按照反映各方当事人真實意思表示的文本進行解釋和執行。

22.3 本合同中韓文一式陸份，各方当事人均執壹份，其余的提交有關審批機關及登記機關。所有文本均具有同等法律效力。

22.4 本合同所有附件均构成本合同不可分割的一部分，与本合同具有同等法律效力。

(以下无正文)

(本頁為簽字頁)

甲方：

授權代表人：日期：200 年月日

乙方：

授權代表人：日期：200 年月日

**부록2**

**토지출양계약서 서식(한국어)**

GF-2000-2601

계약번호:

국유 토지사용권 출양계약  
(草案)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토 자원부 강제

중화인민공화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 사 용 설 명

1.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은 본문과 별첨<출양토지경계도>를 포함한다.
2. 본 계약의 출양자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할 권리가 있는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 이다.
3. 계약 제 4조 토지용도는 <도시 지적조사 규칙>에 규정한 토지 2급 분류에 따라 기입하고 종합용지에 속할 경우 각 종 구체용도 및 그가 점유하는 비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계약 제 5조 중의 토지조건은 쌍방이 실제 약속한 내용에 따라 선택하고 기입한다. 기존 행정배당 토지의 사용권을 사후에 처리할 경

우 제 3항을 선택하고 미 개발 건설용지인 경우 출양자가 토지를 교부할 시 토지개발정도에 따라 제1항 혹은 제2항을 선택하며 이전과 토지 평탄이 미완성인 경우 제 2항을 선택하고 토지상 이전하여야 할 건물과 기타 지상물 면적 등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조건을 쌍방의 약속에 따라 "7통","3통"등을 기입하며 기반시설의 내용(예를 들면 도로, 전기, 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5. 계약 제 9조 토지사용권 출양금 지급방식의 규정 중 쌍방이 토지 사용권 출양금을 1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을 경우 제 1항을 선택하고 정기분할 지급일 경우 제 2항을 선택한다.

6. 계약 제 20조 중 부동산 개발에 속할 경우 제1항을 선택하고 대규모 토지개발인 경우 제 2항을 선택한다.

7. 계약 제 40조 계약의 효력발생 규정 중 토지 출양방안이 이미 권리가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 1항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토지 출양이 권리가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계약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계약 당사자 쌍방

출양자: 중화인민공화국

양수자: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에 의하여 쌍방은 평등, 자원, 유상, 성실, 신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출양자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출양지의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국가는 그가 헌법과 법률이 수여한 사법 관할권, 행정관리권 및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국가에서 실행하는 권리와 사회공중이익으로 인한 필수적인 권익이 있다. 지하자원, 매장물과 지정공중시설은 모두 토지사용권 출양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 2장 출양토지의 교부와 출양금의 납부

제 3조 출양자가 양수자에게 출양하는 토지는 \_\_\_\_\_에 위치하여 있고 토지번호는 \_\_\_\_\_이며 토지 총면적은 \_\_\_\_\_평방미터이며 그중 출양 토지면적이 \_\_\_\_\_평방미터 이다. 토지 둘레경계 및 경계점 좌표는 별첨 <출양토지 경계도>를 참조한다.

제 4조 본 계약항목하 출양토지의 용도는 \_\_\_\_\_이다.

제 5조 출양자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전으로 출양하는 토지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것을 동의하고 출양자는 토지 교부 시 동 토지가 본 조 제 \_\_\_\_\_항에 규정한 토지조건에 도달하는 것에 동의한다.

- (1) 부지 평탄과 주변 기반시설 \_\_\_\_\_통, 즉 \_\_\_\_\_통한다.
- (2) 주변 기반시설이 \_\_\_\_\_통, 즉 \_\_\_\_\_통한다. 단 부지

가 아직 이전과 평탄을 하지 않았을 시 건물과 기타 지상물 상황은 아래와 같다

(3) 현황토지 조건

제 6조 본 계약하의 토지사용권 출양기한은 50년이고 출양자가 양수자에 토지를 실제 교부한날 부터 계산하며 기존 행정배당 토지가 사용권 수속을 사후에 처리하는 경우 출양기한은 계약 체결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7조 본 계약하 토지의 사용권 출양금액은 매 평방미터 당 인민폐 위안( 위안)이고 총 금액이 인민폐 위안이다.

제 8조 쌍방이 본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양수자는 필히 출양자에게 위안을 지급하여 계약 수행 계약금으로 한다. 계약금은 토지사용권 출양금으로 친다.

제 9조 수양자는 본 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출양자에게 상기 토지 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

본 계약 체결하는 당일에 일차적으로 상기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한다.

하기 시간과 금액에 따라 차례로 나뉘어서 상기 토지수용권 출양금을 지급한다.

제1기 인민폐 위안( 위안), 지급시간: 년 월 일

제2기 인민폐 월 일	위안(	위안), 지급시간:	년
제 기 인민폐 월 일	위안(	위안), 지급시간:	년
제 기 인민폐 월 일	위안(	위안), 지급시간:	년

정기분할로 토지출양금을 지급할 시 양수자는 제2기 및 그 이후 각 분기의 토지 출양금을 지급할 시 은행 동 시기 대출금 금리에 따라 출양자에게 금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 3장 토지개발건설과 이용

제 10조 본 계약 체결 후 일 내 당사자 쌍방은 별첨 <출양토지 경계도>에 따라 각 경계선 좌표의 경계선 말뚝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양자는 토지 계선 말뚝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함부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계선 말뚝이 파괴되거나 옮겼을 시 양수자는 바로 출양자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원 토지경계선에 대한 측정을 신청하고 경계선 말뚝을 원상복구한다.

제 11조 양수측이 본계약하 토지범위내에서 신규건물을 건축 할 시 아래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체건물성질

부속건물성질

건물 용적율

건물높이제한

녹지 비율

기타 토지 이용요구

제 12조 양수자는 본 계약항 토지 범위내 아래와 같은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또한 준공 후 무상으로 정부에게 이전하는 것을 동의한다.

(1)

(2)

(3)

제 13조 양수자는       년    월    일 전 착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때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30일전으로 출양자에 연기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 연기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4조 양수자는 양수 받은 토지 범위내에서 건설 진행시 관련 물, 스팀, 폐수 및 기타 시설은 동 토지 외 주요 파이프 라인, 변전소 연결과 도입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양수자는 정부에서 공중사업의 수요로 각 종 파이프 라인이 양수받은 토지를 진출, 통과, 관통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15조 양수자는 본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전부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한 날 부터 30일 내 본 계약과 토지사용권 출양금 지급증빙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출양자에게 토지등록 처리신청을 하여<국유토지사용증>을 수령하고 출양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출양자는 토지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내 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출양토지사용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하고 <국유토지 사용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16조 양수자는 필히 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그가 양수 받은 토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주변 환경이나 시설에 손해를 주거나 파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가 혹은 타인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 양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7조 출양기한내 양수자는 필히 본 계약에 규정한 토지용도와 토지사용조건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규정한 토지용도와 토지사용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필히 법에 의하여 관련 허가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출양자에게 신청을 제출하여 출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사용권 출양 변경협의 혹은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상응적으로 조정하고 토지 변경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조 정부는 본 계약하 토지의 도시 발전 조정권을 보류하고 있다. 원 토지의 이용규획이 수정되었을 시 동 토지는 이미 존재된 건물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 사용기한 내 동 토지 건물, 부속물의 개축, 보수, 재건 혹은 만기 후 재계약 신청을 제출하였을 시 필히 그때의 유효 규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조 출양자는 양수자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본 계약에 약속한 사용 기한 만기전 회수하지 않으며 특수 상황하에 사회공중 이익 수요에 따라 앞당겨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경우 출양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또한 회수시 지상

건물 기타 부속물의 가치와 나머지 기한의 토지사용권 가격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보상한다.

#### 제4장 토지사용권 양도, 임대, 저당

제 20조 양수자는 본계약의 약속에 따라 전부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고 <국유토지사용증>을 수령하여 출양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후 본 계약하 전부 혹은 부분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할 권리가 있으나, 처음으로 (매출,교환과 증여 포함) 나머지 기한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시 출양자가 아래 제 1항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본 계약 약속에 따라 투자 개발을 진행할 시 개발 투자총액의 25% 이상 완성하였을 경우

(2) 본 계약 약속에 따라 투자 개발을 진행할 시 공업용지 혹은 기타 건설용지조건이 구성되었을 경우

제 21조 토지사용권 양도, 저당은 양도, 저당 쌍방이 서면으로 양도, 저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임대기한은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도 서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양도, 저당 및 임대계약이 국가법률, 법규와 본 계약의 규정을 어겨서는 안된다.

제 22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였을 시 본 계약과 등록문건증 기재한 권리, 의무도 이에 따라 이전되고 양도 후 그 토지사용권의 사용 기

한은 본 계약에 약속한 사용기한에서 기 사용기한을 뺀 나머지 기한이다. 본 계약항하 전부 혹은 부분 토지사용권을 임대한 후 본 계약과 등록문건 중 기재한 권리, 의무는 여전히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 23조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시 지상 건물, 기타 부속물도 이에 따라 양도, 임대, 저당된다.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을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시 토지사용권도 이에 따라 양도, 임대, 저당된다.

제 24조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시 양도, 임대, 저당 쌍방은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 본 계약과 관련 양도, 임대, 저당계약 및 <국유토지 사용증>을 가지고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토지등록을 처리한다.

## 제 5장 기한 만료

제 25조 본 계약에 약속한 사용기한 만기후 사용자가 계속 본 계약하 토지를 사용하려 할 시 최소 만기 1년전에 출양자에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고 사회공중이익 수요에 의해 본 계약하의 토지를 회수하여야 할 경우 외 출양자는 허가해 주어야 한다.

출양주가 재계약을 동의하였을 경우 양수자는 법에 의하여 토지유상 사용수속을 처리하여야 하고 출양자와 다시 토지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토지유상사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6조 토지출양기한 만기후 양수자가 재계약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계약을 신청했지만 본 계약 제25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양수자는 <국유토지 사용증>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출양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수하여야 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말소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27조 토지출양기한 만기후 양수인이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하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속물은 출양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무상으로 회수한다. 양수자는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의 정상 사용을 보증하여야 하고 인적 파괴를 하여서는 안되며 지상 건물, 기타 부속물이 정상 사용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출양자는 양수자로 하여금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을 옮기거나 철거하게 할 수 있고 부지 평탄을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8조 토지출양기한 만기후 양수인이 재계약을 신청한 후 본 계약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신청이 비준 받지 못하였을 경우 토지 사용권은 출양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무상으로 회수시킬 수 있으나,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속물에 대하여 출양자는 회수시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의 잔존가치에 따라 양수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제 6장 불가항력

제 29조 어떤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부분 혹은 전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체 필수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당사자의 수행 지연후 발생한 불가항력은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30조 불가항력에 직면한 일방은 48시간 내 사건 상황을 편지, 전보, 팩스 등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 후

15일내 상대방에게 계약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연기 수행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장 위약책임

제 31조 양수자는 필히 본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제때에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양수자가 제때에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납 한 날부터 매일 지연 지급 금액 항목의 0.3%를 출양자에게 체납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출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양수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출양자는 양수자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2조 양수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출양자는 필히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제때에 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양자가 제때에 출양토지를 제공하지 못하여 양수자가 본 계약하 토지점유가 지연되었을때 1일 지연할 시 경우 출양자는 양수자가 지급한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0.3%를 위약금으로 양수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출양자 토지 교부가 6개월 이상 지연 되었을 경우 양수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출양자는 계약금액의 2배를 환급하여야 하고 또한 기지급한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기타부분도 반환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출양자 위약으로 인한 기타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 양수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개발건설을 진행하여야 하고 계약에 약속한 착공일자가 만 1년 미 착공 개발한 경우 출양자는 양수자로부터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 이하의 토지 閒置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만 2년 미착공 개발한 경우 출양자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 정부, 정부 관련 부서의 행위 혹은 착공 개발에 필수적인 준비업무로 인한 착공 개발의 지연을 제외한다.

제 34조 출양자가 교부한 토지가 계약에 약속한 토지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약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양수자는 출양자로 하여금 계약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수행의 지연으로 양수자에 끼친 직접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 8장 통보와 설명

제 35조 본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허락한 통보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던지 모두 실제 접수한 날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36조 당사자 변경통보, 연락주소 혹은 계좌 개설은행,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후 15일 내 새로운 주소 혹은 계좌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착오를 범한 측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 37조 본 계약 체결시 출양자는 양수자의 본 계약에 대하여 제출한 문제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 제 9장 적용법률 및 분쟁의 해결

제 38조 본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수행 및 분쟁의 해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 39조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한 분쟁은 분쟁 쌍방이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합의가 달성되지 못할 시 본 조 제 2항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 (1) 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한다.
- (2)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한다.

## 제 10장 부칙

제40조 본 계약은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다.

- (1) 본 계약하 토지 출양방안이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시 본 계약은 쌍방이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2) 본 계약하 토지 출양방안이 아직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계약은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41조 본 계약은 1식 통이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양자, 양수자가 각 1통씩 보유한다.

제 42조 본 계약과 별첨은 총 페이지이고 증문으로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 43조 본 계약의 금액, 면적 등 항목은 동시에 대,소문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대,소문자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44조 본 계약은    년    월    일 중화인민공화국    성(자치구, 직할시))    에서 체결하였다.

제 45조 본 계약 미진사항은 쌍방이 약속한 후 계약의 별첨으로 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출양자(인) :

양수자(인) :

주소 :

주소 :

법인대표자(위탁대리인)

법인대표자(위탁대리인)

(사인) :

(사인) :

전화 :

전화 :

팩스 :

팩스 :

전보 :

전보 :

계좌개설은행 :

계좌개설은행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20    년    월    일

## KOTRA 한국 투자기업지원센터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무역관 內

센터	연 락 처
베이징	Tel : (86-10)6410-6162 Fax : (86-10)6505-2310/6090 E-mail : pekktc@kotra.or.kr
상하이	Tel : (86-21)5108-8771~2 Fax : (86-21)6219-6015 E-mail : shanghai@kotra.or.kr
칭다오	Tel : (86-532)8388-7931~4 Fax : (86-532)8388-7935 E-mail : qdktc@qdcdc.com
광저우	Tel : (86-20)8334-0052 Fax : (86-20)8335-1142 E-mail : canton@kotra.or.kr

## Q & A로 본 중국 투자 A to Z

발행인 | 홍 기 화  
편집인 | 한 준 우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752-0463

발행일 | 2006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서초우체국 사서함 101호

전 화 |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낙장,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